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349-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위탁: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광선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엄진영 부연구위원
박유진 연구위원
강민정 연구위원

연구 담당

김 광 선	연구위원	연구 총괄, 제1장, 제4장, 제5장 집필
엄 진 영	부연구위원	제3장 집필
박 유 진	연구원	제2장 집필, 부록 정리
강 민 정	연구원	부록 정리, 보고서 편집

요 약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9개 부문 32개 항목에 대한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지수화 하여 우리 농어촌의 각 지역별, 서비스 부문별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를 평가한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19) 시행에 앞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역시 함께 제시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2011년 시행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제도운영 현황, 그리고 매년 실시해 온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통계를 이용하여 32개 기준 항목별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활용하여 부문별,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비교·평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그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해 온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의 문제와 제도개선 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을 목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또 개편안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통계’(이하 ‘점검통계’)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모두 54개의 점검통계가 필요한데 이 중 15개 통계는 정부의 공표통계를, 24개 통계는 관계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해 구득한 자료를, 그리고 14개 통계는 138개 농어촌 시·군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구득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머지 1개는 해당 내용(도서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관련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목표달성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여 점검통계 구축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부문별 및 지역별 이행실태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이하 ‘이행지수’)를 활용하였다. 이행지수는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수로서, 일부 수정과정을 거쳐 현재는 선형변환(linear scale transformation)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이행지수는 앞서 언급한 ‘점검통계’ 구축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 9개 부문별로 ‘부문이행지수’와 이를 종합한 ‘종합이행지수’로 나누어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및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회를 추진하였다.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개편안에 담기 위해 강원도 화천군과 충청북도 증평군 공무원들의 의견조사 역시 실시하였다. 또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여러 관계부처의 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개최, 서면검토 등을 통해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에 반영하였다. 이밖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운영한 ‘정책자문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개편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3. 주요 연구 결과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9개 부문 32개 항목에 대한 통계 구축 후,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문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부문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교통부문은 대중교통과 여객선 항목은 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인도 설치비율 항목은 감소하였다. 교육부문은 폐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의견수렴, 평생교육 등의 항목에서 개선이 이뤄졌으며,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항목은 개선되었다. 복지부문은 노인, 청소년, 영유아, 다문화가족 항목이 개선되었으며, 응급 부문은 응급서비스 항목과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항목이 열악해 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부문에서는 방법설비와 소방출동 항목은 개선된 반면, 경찰 출동은 다소 열악해졌다. 문화부문의 경우 독서 항목은 하락했고,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항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망 항목은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도부터 2014년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결과를 비교해 보면 32개 항목 중 대부분의 항목에서 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4개 항목에서 이행실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항목은 변화가 없었다. 나머지 6개 항목의 이행실태는 하락하였으나, 하락 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선형변환 방법을 이용하여 9개 부문 20개 항목에 대해 이행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각 부문별, 지역별로 산출하여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9개 부문이행지수 중 교육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정보 통신 부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응급부문, 안전부문은 이행지수가 가장 낮은 부문으로 나타났다. 교육, 보건·의료, 응급 부문의 지수는 군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부문은

군지역에서 서비스 기준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부문은 도농 복합시가 높았는데 그 중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이행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지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이행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이행지수가 높은 곳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 지역들이었고, 하위 30%지역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3년과 2014년 종합이행지수 순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누어 순위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138개 시·군 중 16개 시·군은 분위가 상승하였으며, 하락한 시·군도 16개였고, 나머지 106개 시·군 분위는 동일하였다. 분위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분위 상승 지역이 많았던 곳은 충청남도였고, 반대로 분위하락이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나타났다.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은 그간 다년간에 걸쳐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의 문제와 제도개선 수요 조사 결과, 그리고 2014년도에 실시한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관계부처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기준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선택기준으로 이원화 하는 것이다. 즉 32개 항목에 이르는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국가가 직접 제정·운용·관리하는 17개의 핵심항목으로 축소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동 핵심항목은 반드시 포함하되, 이에 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선택기준을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제정·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각 핵심항목의 달성목표를 장기적인 국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동시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2015-19) 내 달성해야 하는 5년간의 중기목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즉,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소방출동’ 항목이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개편안의 ‘소방출동’

항목은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로 제시하였다. 즉, 개편안의 각 기준 항목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이와 함께 동 항목에 대해 2019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55%’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해당 목표의 달성률이 45.4%에 그치고 있어, 개편안의 5년 중기 목표를 기존의 달성목표 55%로 유지한 것이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부문 구성을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부문 구성과 일치시킨 것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되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 부문으로 구성된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달리 9개 부문으로 구성·운영되어 정책적 연계의 부족과 정책 이해에 대한 혼란 등을 초래하여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개 부문에 맞추어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제도개선 방안, 즉 개편안 시행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정책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여 각 기준 항목을 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기준 항목의 목표 달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업을 범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촌 지자체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기반을 제공하여 각 지자체가 기준 항목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인 선택항목을 포함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목표 달성을 독려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 평가 및 포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정책과 더욱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이 기준 운용에 있어 개별 지자체의 자율성을 크게 증대시

키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적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해야 할 것이다.

차 례

제1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개요

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1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현황 3
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주요 내용 8

제2장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1. 이행실태 점검 개요 및 방법 11
2.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23
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변화 68
4. 소결: 시사점 및 개선 방향 80

제3장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결과

1. 이행지수 평가 개요 85
2.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이행실태 평가 결과 89
3.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의 변화 117
4. 소결: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4

제4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종합평가 및 개편 방향

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종합평가 127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개편 방향 139

제5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및 제도 운영 방안

1.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143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방안 149

부록

부록 1.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방안 및 통계	163
부록 2.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표	168
부록 3.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계부처 협조자료 목록	174
부록 4.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177
부록 5.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별 이행실태 점검 결과	190
부록 6.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별 이행실태의 변화(2013-2014년)	195
참고 문헌	197

표 차 례

제1장

- 표 1- 1.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부문·항목·세부내용
(2013. 9. 10. 농식품부 장관 고시) 6
- 표 1-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연차별 추진 방법 10

제2장

- 표 2- 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13
- 표 2-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14
- 표 2- 3.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내용 및 방법 20
- 표 2- 4. 최저주거기준 이행실태(2010년 기준) 23
- 표 2- 5.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25
- 표 2- 6.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실태 26
- 표 2- 7. 마을공동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행실태 27
- 표 2- 8.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이행실태 27
- 표 2- 9. 상수도 보급 이행실태 28
- 표 2-10.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 이행실태 30
- 표 2-11. 하수도 보급 이행실태 31
- 표 2-12. 대중교통 이행실태 32
- 표 2-13. 인도 구분 이행실태 34
- 표 2-14. 농어촌 학교(초교) 육성 지원 이행실태 36
- 표 2-15.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수단 제공 이행실태 37
- 표 2-16. 시·군별 우수고등학교 이행실태 38
- 표 2-17. 폐교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이행실태 39
- 표 2-1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이행실태 40

표 2-19.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실태	41
표 2-20. 평생교육 시설 이행실태	42
표 2-21. 주요 과목 1차 진료서비스 이행실태	43
표 2-22. 주요 과목별 이행실태	44
표 2-23. 순회방문 진료 이행실태	45
표 2-24. 의약품 구입 가능 이행실태	46
표 2-25.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이행실태	48
표 2-2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이행실태	49
표 2-27. 방과후 돌봄시설 운영 이행실태	50
표 2-28. 어린이집 운영 이행실태	51
표 2-2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서비스 이행실태	52
표 2-30. 구급차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54
표 2-31. 119 EMS구급헬기 운영 현황	55
표 2-32. 의료장비를 구비한 산림청 헬기 현황	55
표 2-33. 해양경찰서 EMS 장비 장착 합정 및 헬기 현황	56
표 2-34. 방범용 CCTV 설치 이행실태	58
표 2-35. 각 시·도별 농어촌 지역 평균출동시간 실태	60
표 2-36. 소방 출동 이행실태	61
표 2-37. 도서관 도서 열람 및 대출 이행실태	63
표 2-38.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공연 프로그램 개최 이행실태	65
표 2-39.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이행실태	66
표 2-40.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이행실태(행정리 기준)	68
표 2-41.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의 변화	73
표 2-42. 시·도별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달성률 비교	78

제3장

표 3- 1.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86
표 3- 2. 부문이행지수의 시·군 평균 및 표준편차	91

표 3- 3. 주거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92
표 3- 4. 시·도별 주거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93
표 3- 5. 교통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94
표 3- 6. 시·도별 교통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95
표 3- 7. 교육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97
표 3- 8. 시·도별 교육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99
표 3- 9. 보건·의료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100
표 3-10. 복지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101
표 3-11. 시·도별 복지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102
표 3-12. 응급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103
표 3-13. 시·도별 응급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104
표 3-14. 안전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105
표 3-15. 시·도별 안전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106
표 3-16. 문화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108
표 3-17. 시·도별 문화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109
표 3-18. 정보통신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109
표 3-19. 시·도별 정보통신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110
표 3-20. 지역별 2014년 종합이행지수	111
표 3-21. 시·도별 종합이행지수 순위 분포	112
표 3-22. 2013-2014년 종합이행지수의 시·군 분포 변화	113
표 3-23. 군과 도농통합시의 2013-2014년 종합이행지수 분포 변화	114
표 3-24. 시·군 종합이행지수 변화의 시·도별 분포	115
표 3-25.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이행지수 변화	120
표 3-26. 2013-2014년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비교	122

제4장

표 4- 1. 연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문제점 분석 및 조사 내용	127
표 4- 2.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129

표 4- 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	130
표 4- 4. 농어촌 주민들의 과거 3년 전과 비교한 기준항목별 개선 체감도 평가	133
표 4- 5. 농어촌 주민이 꼽은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상위 5개)	134
표 4- 6.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	137

제5장

표 5- 1. 국가 최소 기준으로서 7개 부문 17개 핵심항목 구성안	144
표 5- 2.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핵심항목의 이행실태 점검방법	145
표 5- 3. 농어촌서비스기준 지자체 자율 선택항목 예시	147
표 5- 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핵심항목과 삶의 질 향상 계획 관련 사업 연계방안	151

그림 차례

제3장

그림 3- 1. 주거 및 교통 부문이행지수 분포	96
그림 3- 2.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이행지수 분포	100
그림 3- 3. 복지 및 응급 부문이행지수 분포	104
그림 3- 4. 안전 및 문화 부문이행지수 분포	107
그림 3- 5. 정보통신 부문이행지수 분포	111
그림 3- 6. 2013-2014년 종합이행지수 분포	114
그림 3- 7. 2013-2014년 종합이행지수 변화	116

제 1 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개요

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활력 저하와 공공서비스 공급 및 삶의 질의 도·농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음.
 - 이와 더불어 농어촌의 여건 변화와 특수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채 일률적 투자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되어 왔음.
 - 공급자 관점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체감 저하.
-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증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체감 증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필요성 증대.
 - 서비스 소비자인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 제시.
 - 서비스 공급자인 공공부문의 정책달성 목표 설정 및 성과판단의 준거 마련.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준거로 삼을 만한 정책 목표 기준 제시.

- 선진국들 역시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주요 정책의제로 선정.
 -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확립한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조건 확립’이라는 일반 원칙하에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정책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영국은 2000년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여 (2006년까지) 운용.
 - OECD 역시 2008년 농어촌발전포럼을 통해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10가지 주요 이슈 발굴.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 영국의 농어촌은 1980년대와 90년대 광우병 창궐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쇠퇴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범정부적 인식이 증가하였음.
- 그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2000년 「농어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를 발간하여 농어촌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하여 공표.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어떤 지역에서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 즉,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할 주요 서비스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을 의미.
- 처음에는 14개 부문 36개 기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적절한 모니터링 수단의 부족과 너무 많은 기준항목의 일률적 적용 한계 등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 핵심 기준인 8개 부문 11개 기준항목으로 개편.
- CRC(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에서 서비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제 농어촌 지역에 성과라 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평가 후 주기적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 경과보고서」(Rural Services Standard Progress Report)를 발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제시.

<독일의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조건 확립>

- 독일은 1949년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Basic Law)의 공표 시 법률조항에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조건 확립'(establishment of uniform living condition)을 명시. 이는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일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한 것을 의미.
-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조건 원칙하에 각 주(Land)에서 지역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3단계(기초·중간·상위) 또는 4단계(소규모·하위·중위·상위)의 중심지별로 주요 공공서비스 시설의 배치기준 제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현황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
 - 우리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국가의 정책 목표로 제시.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0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11년 1월부터 시행.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이상 유지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운영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을 수립하

고 시행할 때에도 각 부처의 장과 지자체장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책 추진의 토대로 활용하고 기준이행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음. 충남에서는 ‘3농 혁신 정책’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충북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내 119 소방서가 없는 2개 군에 소방서를 설치.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해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운영.
- 동 위원회는 농어촌서비스기준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및 농어촌 주민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달성 정도의 평가 등에 대해 자문 제공.
 - 2012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
- 2013년도부터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8개 부문 32개 항목을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하여 운용(표 1-1).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 및 본격적인 시행 결과 현실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기준을 수정·보완.
 - 최근 농어촌 지역 범죄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안전’ 부문 및 ‘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응급’ 부문의 ‘도난방지’, ‘경찰서비스’, ‘소방서비스’ 등 항목을 ‘안전’ 부문으로 이관 및 항목명 변경.
 - 교육부문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항목과 보건의료 부문의 ‘순회방문’ 항목은 세부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안전부문으로 이관된 ‘도난

방지' 항목은 '방법설비'로 항목명 및 세부내용이 일부 변경됨.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별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에 2013년 9월 9일자로 개정.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을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이 2013년 9월 10일자로 고시.

- 현행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5년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각 항목별 목표치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추진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라 할 수 있음.

-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 달성 연도 등을 포함한) 운용 주기 역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인 것으로 간주.

- 제2기 삶의 질 사업예산은 총 34조 5천 4백억 원이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목표달성(기준이행)을 위한 별도의 정책사업과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삶의 질 향상 계획' 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내용을 함께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사업과 예산이 삶의 질 향상정책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32개 항목과 관련된 소관 부처의 사업예산 규모는 2013년 3조 4천 2백억 원 정도로, 2012년도 대비 11.6% 증가.

표 1-1.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부문·항목·세부내용(2013. 9. 10. 농식품부 장관 고시)

부문	항목	세부내용
1. 주거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나.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라.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
	마.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2. 교통	가.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나.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다.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나.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 방과후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마.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4. 보건 의료	가.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나.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부문	항목	세부내용
5. 복지	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도달할 수 있다.
	마.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응급	가.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나.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7. 안전	가.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나. 방범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다.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라.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8. 문화	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다.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9. 정보 통신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주요 내용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해 연도부터 매년 각 기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연차별 공통추진업무와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로 나누어 시행.
- 연차별 공통추진업무는 점검통계와 이행지수를 활용한 정량적 방법의 이행실태 점검으로 매년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통계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공표하는 공식통계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내부자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별 이행실태와 기초자치단체별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
 - 또 점검통계에 의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이행지수로 변환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그리고 지역별 이행실태를 비교·평가.
-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심층연구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연차별 조사로 추진(표 1-2).
 - 2011년도의 경우에는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반영 정도,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시·도계획(충남)과 시·군·구계획(화천·장흥)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반영 정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사업예산 분석 등을 수행.
 - 2012년도의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심층연구로서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에 대한 심화연구,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와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 등을 수행. 이 외에도 농어촌서

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를 발굴.

- 2013년도의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문화 부문에 대한 부문별 심층연구를 수행함. 농어촌 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 실태와 향후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음. 이 외에도 특별추진업무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함.
- 2014년도에는 새롭게 수립·시행되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더불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표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연차별 추진 방법

연도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2011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① 기본계획 분석 ② 2011년 시행계획 분석 ③ 시도계획(충남), 시·군계획(화천군·장흥군) 심층분석 (4) 사례지역 심층조사 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 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 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조사
2012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이행지수 ② 핵심 이행지수	(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 (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가능성 조사 ② 농어촌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 (5)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총괄팀’의 별도 자료집 발간
2013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이행지수	(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문화 부문 심층연구 (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문가 평가 조사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 조사 (5)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 장기 운영방향 제시
2014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이행지수	(3)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① 개편안의 핵심항목 및 선택항목 구성 (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 방안

제 2 장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1. 이행실태 점검 개요 및 방법

1.1. 이행실태 점검 개념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그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해오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는 농어촌 시·군별로 각 항목에 대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종합하여 점검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는 각 항목별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각 서비스기준 내용에 따라 목표치가 달성되어야 하는 공간 단위 또한 다양함.
 - 각 서비스기준 항목별로 시·군, 읍·면, 행정리 등 다양하며, 이에 따라 각 시·군별 총 인구 및 가구, 읍 또는 면지역 인구 및 가구, 읍·면 수, 행정리 수 등을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함.
 - 교육 부문에서 ‘고등학교’ 항목은 각 시·군에서 육성하는 우수 고교가 1개교 이상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본 항목의 달성률은 총 138개

시·군(A) 대비 목표 달성 시·군(B)의 비율($B/A \times 100$)로 계산됨.

- 주거부문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항목에 대해서는 시·군별 ‘면지역’ 가구 수(A)와 면지역 상수도 보급 가구 수(B) 자료를 토대로 달성률($B/A \times 100$)을 점검함.
-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은 전년도인 2013년 기준으로 138개 도농복합시 및 군, 1,404개¹ 읍·면을 대상으로,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138개 농어촌 시·군, 1,402개 읍·면, 36,314개 행정리를 대상(지자체 행정조사 시)으로 실시하였음.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동지역을 제외하고 점검하였음.
- 현재 농어촌 시·군은 충남 연기군이 2012년 7월 1일 부로 세종특별시에 편입됨에 따라 138개 시·군임.
 - 충남 당진군은 2012년 1월 1일 부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었음.

1.2.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구축

-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9개 부문에 걸쳐 32개 서비스기준 항목으로 구성되며, 32개 서비스기준은 다시 45개의 세부기준으로 구성됨.
- 32개 서비스기준의 각 항목은 1~3개의 세부기준으로 구성됨.
 - 예를 들어 주거 부문 상수도 항목의 경우,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하고, 지자체는 원수 수질 검사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기준은 ① ‘면지역 상수도보급률 75% 이상’과 ②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라는 2개의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²

1)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할 경우 2013년 기준 총 읍·면 수는 1,414개이나, 2013년 이행실태 점검에서 기준으로 삼은 2012년 기준 읍·면지역과의 일관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읍·면(10곳)지역을 제외하였음. 따라서 2013년도 138개 시·군의 총 읍·면수는 1,404개임.

○ 9개 부문, 32개 서비스기준의 45개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54개의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구득 가능한 공식통계 1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앙행정기관 협조와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구축함(표 2-1).

- 단, 이 중에서 교통 부문의 1개 세부기준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서, 본 조사에서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간주함.

• 교통 부문: 도서지역 거주민의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삶의 질 향상 특별법」, 「해운법」).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함.

- 총 25개의 내부자료를 중앙행정기관들로부터 협조 받음.

표 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단위: 개

9개 부문	서비스 기준	세부 기준	통계 확충 범위	구득 가능 통계	통계 보완		기타
					중앙행정기관 협조	지자체 행정조사	
주거	5	8	9	2	5	2	-
교통	3	5	5	1	1	2	1*
교육	6	7	7	0	4	3	-
보건의료	3	3	5	1	1	3	-
복지	5	6	10	8	1	1	-
응급	2	3	4	0	4	0	-
안전	4	5	6	0	5	1	-
문화	3	6	6	2	2	2	-
정보통신	1	2	2	0	2	0	-
계	32	45	54	14	25	14	

주: *는 법률에 의한 의무로서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 항목을 의미함.

2) 참고로 주거 부문 상수도 항목의 세부기준 중 ‘기초지자체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의 경우 「수도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서 이미 달성된 것으로 간주하였음. 그러나 작년도(2013년) 이행실태 점검부터 실제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 협조를 받아 그 실태를 파악함.

- 구득 가능한 통계와 중앙행정기관 협조를 통해서도 얻지 못한 일부 통계 자료는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서 구축하였음(표 2-2).
 - 행정리별 방법용 CCTV 현황에 대한 자료는 행정조사 결과로 대체하여 활용함.
 - 경찰 출동 소요시간 자료는 건별 자료가 아닌 각 경찰서별 평균 출동시간만이 구득 가능함.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협조 받은 응급서비스 항목의 응급출동 자료의 경우 30분 이내 출동 건수 자료가 협조되어 보다 정확한 이행실태 점검이 가능함.
 - 경찰 순찰 항목은 행정리별 5대 강력범죄 현황과 행정리별 1일 순찰계획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각각 자료의 공간 단위가 이행실태 점검 단위와 불일치하거나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행실태 점검이 불완전함.
- 점검통계의 구축을 위해 통계의 기준년도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로 설정함. 이에 따라 통계 기준년도는 2013년이지만 아직 공표되지 못한 통계의 경우 2012년도 통계, 가장 최근의 현황 통계가 구득 가능할 경우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함.
 - 지자체 행정조사 자료의 경우 조사가 2014년 1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통계 기준년도는 2014년으로 간주함.

표 2-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여부
주거	주택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2010	○ (통계청협조)
	난방	시·군별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2013	○ (한국도시가스협회)
		시·군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결과	2013	○ (산림청협조)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여부
		시·군별 그린홈100만호사업(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보급 가구 수 현황	2013	○ (산자부협조)
	마을 공동 시설	마을회관/경로당운영비지원현황	2014	○ (지자체조사)
		마을회관/경로당상설프로그램현황		○ (지자체조사)
	상수도	환경부 상수도통계: 상수도현황	2012	○ (공식통계)
		시·군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 검사 여부 및 적합여부	2013	○ (환경부협조)
	하수도	환경부 하수도통계: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현황	2012	○ (공식통계)
교통	대중 교통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대중교통 운행 횟수별 마을 수	2010	○ (공식통계)
		시·군별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해당 프로그램 명칭	2014	○ (지자체조사)
	여객선	여객선 운행 노선 현황 - 도서지역(시·군)별 본도(읍·면) 현황 및 운항 현황	2013	○ (해수부협조)
	인도 (人道)	주변마을에서 읍·면소재지로 접근하는 국도, 지방도, 면도, 이도 등 주요 차량통행도로 수 위 차량도로 중 소재지 밖의 도로에서 부분적이라도 인도가 설치된 도로 수	2014	○ (지자체조사)
교육	유치원· 초등· 중학교	읍·면별 학교 현황(학교명, 주소(읍·면), 학생 수, 교사 수) *초·중·고교 구분	2014	○ (교육부협조)
		읍·면별 학교 통학버스 운영 대수 (학교명, 주소(읍·면), 통학버스 수)	2014	○ (교육부협조)
	고등 학교	시·군내 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 지원, 명문고 및 특화고 육성 지원, 자율형 공립고교 육성 지원, 인재(영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등 현황	2014	○ (지자체조사)
	폐교	시·군별 초·중·고 중 '13년에 폐교된 학교별 주민 의견 수렴 현황(의견수렴 방식 표기)	2013	○ (교육부협조)
	방과후 학교	시·군별 초·중·고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및 총 학생 수(초·중·고교 구분) (교과과목, 특기적성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구분)	2014	○ (교육부협조)
	의견 수렴	시·군별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현황	2014	○ (지자체조사)
	평생 교육	각 시·군 읍·면별 평생교육기관 현황(비형식기관) - 학교 부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 구분	2014	○ (교육부협조)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여부
보건 의료	진료 서비스	일반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 방사선병리과, 산부인과 등 1차 진료 현황	2013	○ (복지부협조)
		시·군별 분만가능 산부인과 및 물리치료실 현황	2014	○ (지자체조사)
	순회 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의료취약마을) 수	2014	○ (지자체조사)
		보건직원 순회방문진료 월1회 이상인 의료취약마을 수	2014	○ (지자체조사)
	의약품 구입	전국사업체조사: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점, 공공의료 기관 현황	2012	○ (공식통계)
복지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2013	○ (공식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현황(1, 2, 3등급)	2013	○ (공식통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현황(노인복지시설현황)	2013	○ (공식통계)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C)서비스 수혜자 현황	2014	○ (지자체조사)
	청소년	청소년수련시설현황(여성가족부)	2013	○ (공식통계)
	아동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 전국 지역아동센터 현황	2013	○ (공식통계)
		각 시·군 읍·면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3	○ (교육부협조)
	영유아	주민등록인구: 만 5세 이하 영유아 현황	2013	○ (공식통계)
		읍·면별 보육시설현황(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2013	○ (공식통계)
	다문화 가족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다누리)	2013	○ (공식통계)
응급	응급 서비스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또는 행정리 별 평균 소요시간)	2013	○ (소방청협조)
	도서· 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선박 및 헬기 현황	2014	○ (해경청협조)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헬기 현황	2014	○ (산림청협조)
		시·도별 EMS구급헬기운영 현황	2014	○ (소방청협조)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여부
안전	경찰순찰	5대 강력범죄 발생 행정리(최근 5년간) * 5대 강력범죄: 살인(미수 포함),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2013	△ (경찰청협조)
		행정리별 일일 순찰계획	2013	△ (경찰청협조)
	방법설비	행정리별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2014	○ (지자체조사)
		시·군별 포구/항만 현황 및 포구/항만별 방법용 CCTV	2013	○ (해경청협조)
	경찰출동	CODE 1 상황 출동 시 CODE 1 평균소요 시간(시·군별) * CODE 1: 범죄로부터 인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한 신고	2013	○ (경찰청협조)
	소방출동	각 건별 화재현장 도착소요시간 자료(시·군별)	2014	○ (안전처협조)
문화	독서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문고) 현황	2014	○ (공식통계)
		시·군별 이동도서관 운영 등 대안적 도서대출, 반납 방안 운영 여부 및 프로그램 명	2014	○ (지자체조사)
	문화 시설 및 프로 그램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2013	○ (공식통계)
		시·군 지방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관람 가능한 문화행사프로그램 수	2013	○ (문광부협조)
		시·군별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수	2013	○ (문광부협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실시한 읍·면수	2013	○ (지자체조사)
정보 통신	초고속망	시·군별 초고속망 구축 현황(구축된 행정리)	2014	○ (미래부협조)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행정리 현황	2014	○ (미래부협조)

1.3. 이행실태 점검방법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은 32개 각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점검방법은 기본적으로 각 항목별 세부기준(들)의 내용에 근거하여 실시함. 세부항목이 단일항목인지 복수항목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점검함.³⁾
- 첫째, 서비스기준 항목의 세부기준이 단일기준으로 구성된 경우 그 자체에 대한 이행실태가 해당 항목의 이행실태가 됨.
 - 예를 들어, 주거 부문의 이행실태에서 하수도 항목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는 단일의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이행실태는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시·군별 총 인구 수) × 100’으로 점검함.
- 둘째, 서비스기준 항목의 세부기준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서비스기준 항목 점검방법은 다시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됨.
 - ① 복수의 세부기준 중 그 중 하나의 세부기준이 중심 세부기준이고, 나머지 세부기준이 중심 세부기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면, 중심 세부기준 달성여부를 점검함.
 - 예를 들어, 주거 부문의 난방 항목의 경우,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에서 ㉠은 본 서비스기준의 중심 세부기준이고, ㉡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기준이므로, 중심 세부기준 ㉠의 이행실태를 주거 부문 난방 항목의 이행실태로 점검함.
 - ② 복수의 세부기준이 모두 중심 세부기준일 경우, 언급된 모든 세부기

3) 2012년까지 이행실태 점검은 모든 세부기준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고시된 32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2013년부터는 32개 각 항목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함.

준이 충족되었는지를 점검함.

- 예를 들어, 복지 부문의 다문화가족 항목은 ㉠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와 ㉡ ‘교통 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의 두 가지 세부기준으로 구성되며, 두 기준 모두 해당 항목의 중심 세부기준임. 따라서 이 두 가지 세부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살핌.
- 이와 같은 방법으로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 방법을 설정한 결과는 <표 2-3>과 같음.

표 2-3.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내용 및 방법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비고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 으로 한다.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시·군별 총 가구 수) × 100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50% 수준 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지역 전체 가구 수) × 100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도시가스 미보급에 대한 보완 사항
	마을 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 한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수 /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한 개소 이상 있는 행정리 수) × 100	운영비 지원과 상설프로그램 지원 모두 달성되어야 함. 다만, 상설 프로그램 지원 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 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수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 인구 수) × 100	지자체 수질 검사 및 관리하는 상수도 미보급에 대한 보완 사항
	하수도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 으로 한다.	(시·군별 공공하수처리인구 수 / 시·군별 총 인구 수) × 100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은 대중교통 부족에 대한 보완 사항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도서지역과 본도 간 노선별 연간 평균 운항 횟수	여객선 운임 지원은 보완 사항
	인도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 하도록 노력한다.	(읍·면 소재지로의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중 일부 구간이라도 차도와 구분된 구간이 있는 도로 수 / 읍·면 소재지로의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수) × 100	
교육	유치원 / 초중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 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초등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2014년 점검 시 농어촌 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있는 것이 필수조건.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은 보완 사항
			(통학 수단 제공 초등학교 수 / 총 초등학교 수) × 100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비고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각 시·군에서 육성하는 우수 고교 유무 점검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폐교 수 / 총 폐교 수) × 100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총 학생 수) × 100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여부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비형식 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보건료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주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여부 점검	주요 과목: 내과, 한방과, 치과,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이 이루어진 의료 접근성 낮은 행정리 수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총 행정리 수) × 100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의약품 구입 가능 시설이 1개 이상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수} × 100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시·군별 청소년 수련관·수련원·문화의집 운영 여부 점검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3명 이상인 읍·면 수) × 100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방문서비스 실시 여부 점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과 방문서비스 모두 제공 시 달성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비고
응급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도착소요시간 30분 이내 응급출동 건 수 / 총 응급출동 건 수) × 100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청, 해경, 산림청별 응급의료장비 구축 선박 및 헬기 운영 여부	모든 사항 구축 시 달성 간주
안전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범죄취약마을 1일 1회 순찰 여부 확인	
	방법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법용 CCTV를 설치 한다.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마을별 CCTV 설치가 중심내용이며, 향·포구 CCTV는 보완 사항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CODE 1 신고시 도착소요시간 10분 이내 건 수 / 총 CODE 1 신고 건 수) × 100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한다.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문화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도서 대출/반납 시설이 중심내용이고, 대안적인 방법은 보완 사항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문화시설 유무와 (시설에 상관없이) 모든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개최 여부 동시 점검	문화시설과 관람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 할 수 있다.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개최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정보통신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 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 으로 한다.	(광대역통합망 구축 마을 수 / 총 마을 수) × 100	초고속망과 광대역통합망 모두 중심내용이지만 광대역통합망 구축은 초고속망 구축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점검함.

주: 서비스기준 내용 중 강조된 내용은 32개 항목이 되는 중심내용을 의미함.

2.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2.1. 주거 부문 이행실태

2.1.1.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 주거 부문 주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시·군별 총 가구 수) × 100을 통해 산출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138개 농어촌 시·군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638.0만 가구 중 약 563.6만 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가구 대비 88.3%임.
 - 지역별로 나누면, 군지역은 84.0%, 도농복합시는 89.8% 달성률을 보임.
- 그러나 서비스기준(9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38개 시·군 중 38개로, 서비스기준 달성 시·군 비율은 27.5%에 그침.
 - 군지역은 11곳(13.1%)이고, 도농복합시는 27곳(50.0%)이었음.

표 2-4. 최저주거기준 이행실태(2010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2.1	60.6	84.0	11 / 84	13.1	-
도농복합시	96.5	75.3	89.8	27 / 54	50.0	-
전체 농어촌 시·군	96.5	60.6	88.3	38 / 138	27.5	

2.1.2.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 주거 부문 난방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은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지역 전체 가구 수) × 100을 통해 계산됨.
-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도시가스 미보급에 대한 보완 세부기준임.
- 읍지역이 없는 3개 시·군(웅진군, 계룡시, 거제시)을 제외한 135개 농어촌 시·군의 읍지역 가구 수는 약 179.9만 가구이며, 이 중 91.5만 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50.8%의 달성률을 보였음.
 - 군지역은 38.9%, 도농복합시는 62.0%의 달성률을 보여,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간에 도시가스 보급률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난방 항목의 서비스 기준 목표치(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를 달성한 지역은 전체 135개 시·군 중 36개 시·군이며, 26.6%를 차지함.
 - 36개 지역 중, 군지역은 13곳(15.6%)이, 도농복합시는 23곳(44.2%)이 이에 해당함.
 - 특히 군지역의 경우 서비스기준 달성지역은 15.6%에 그치고 있음.
 - 농어촌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50%가 되지 않은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함.

표 2-5.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0.2	0.0	38.9	13 / 83	15.6	1
도농복합시	100.0	0.0	62.0	23 / 52	44.2	2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50.8	36 / 135	26.6	3

주: 비고란의 값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수’로, 읍지역이 없는 계룡시, 거제시, 옹진군을 의미함.

- 2004년부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보급이 이뤄지고 있음.
 - 해당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그린홈100만호사업’과 산림청의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들 수 있음.
- 난방 항목의 세부기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혜가구(보급가구) 수를 조사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가구 수 / (읍·면지역 총 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가구 수)] × 100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파악하였음.
- 그 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읍·면지역에서 그린홈 사업으로 110,952세대,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으로 15,808세대 등 총 126,760세대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시설보급이 이루어졌음.
 - 2013년 기준, 읍·면지역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 2,842,377호 중 126,760호에 보급이 이루어져 전체 달성률은 약 4.5%에 그쳤음. 세부적으로 군 지역의 보급률이 2.9%, 도농복합시 지역이 6.5%로 나타났음.
 - 사실상 보급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며 향후 난방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보급의 경제적 타당성이 적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표 2-6.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1.3	0.5	2.9	-	-	-
도농복합시	27.4	1.2	6.5	-	-	-
전체 농어촌 시·군	27.4	0.5	4.5	-	-	-

2.1.3.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경로당 및 마을 회관이 있는 행정리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 하는 행정리의 수에 근거하여 산출함.
- 세부적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수 /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한 개소 이상 있는 행정리 수) × 100으로 산출됨.
- 전체 농어촌 지역의 달성률은 44.2%임. 지역별로는 군지역은 46.4%, 도농복합시는 41.2%로 나타남.
- 전체 농어촌 지역에서 모든 행정리 경로당 및 마을 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총 29개 시·군이며, 군지역은 19곳, 도농복합시는 10곳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비율로는 각각 22.6%, 18.5%, 그리고 21.0%임.

표 2-7. 마을공동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0.0	46.4	19 / 84	22.6	-
도농복합시	100.0	0.0	41.2	10 / 54	18.5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44.2	29 / 138	21.0	-

-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관리비 지원 행정리 수 /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한 개소 이상 있는 행정리 수) × 100을 적용함.
- 전체 농어촌 지역의 달성률은 96.6%로 나타나 유지관리비 지원 비율은 프로그램 지원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 별로 보면, 군지역은 97.7%, 도농복합시는 95.2%로 나타남.
- 전체 농어촌 지역에서 모든 행정리 경로당 및 마을 회관이 유지관리비를 지원받는 곳은 총 103개 시·군(74.6%)이며, 군지역은 65곳, 도농복합시는 38곳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2-8.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30.0	97.7	65 / 84	77.4	-
도농복합시	100.0	49.5	95.2	38 / 54	70.4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30.0	96.6	103 / 138	74.6	-

2.1.4.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

- 주거 부문 상수도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수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 인구 수) × 100으로 점검함.
- 지자체 수질 검사 및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에 대한 보완 세부기준임.
- 전체 농어촌 지역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2.9%로 서비스 기준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군지역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55.4%이고 도농복합시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0.0%로 조사되었음. 상대적으로 도농복합시의 면지역이 서비스 달성 기준(75%)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곳은 37개 시·군이며 전체 비율은 26.8%에 지나지 않음.
 - 지역으로 나뉘보면 군지역은 16곳(19.0%), 도농복합시는 21곳(38.8%)만이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

표 2-9. 상수도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9.7	10.7	55.4	16 / 84	19.0	-
도농복합시	100.0	13.9	70.0	21 / 54	38.8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10.7	62.9	37 / 138	26.8	-

- 지자체에서는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한 보급과 더불어 상당 부분 마을상수도 등을 통한 상수도 보급을 함. 마을상수도와 같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상수도 원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함.
 - 「수도법」 제29조 제1항,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이하 생략).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 법적으로 명시된 수질 검사 및 관리가 실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로부터 협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점검한 결과, 2013년 말 기준 전국의 총 18,239개의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중, 16,983개 시설(93.1%)에 대하여 최소 1번 이상 수질 검사 및 관리가 이루어졌음.
 - 시·군 단위로 살펴보면, 등록된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가 없는 3개 시·군⁴⁾을 제외하고 135개 시·군 중 24개 시·군(17.8%)에서 등록된 모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수질검사 및 관리가 이루어졌음.
 - 즉, 대부분의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든 시·군이 모든 시설에 대해 수질검사·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임.
 - 2012년에 약 97.2%의 시설에 대해 수질검사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107개 시·군(77.5%)은 모든 소규모 급수시설이 수질검사 및 관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수질검사 및 관리 빈도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음.

4) 천안시, 정읍시, 임실군.

표 2-10.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45.5	94.6	13 / 83	15.7	1
도농복합시	100.0	40.0	90.4	11 / 52	21.2	2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40.0	93.1	24 / 135	17.8	3

주: 비고란의 값은 등록된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가 없는 지역임.

2.1.5.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 주거 부문 하수도 항목은 (시·군별 공공하수처리인구 수 / 시·군별 총인구 수) × 100으로 산출함.
- 하수도통계연보를 통해 이행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 138개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79.4%로 서비스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도농복합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85.1%로 해당 서비스기준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군지역은 동 비율이 62.0%로 여전히 기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동 기준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을 살펴보면, 전체 138개 시·군 중 59개 시·군(42.7%)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79개 시·군은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도농복합시 중 동 기준을 달성한 곳이 40곳(74.0%)인데 비해 군지역은 19곳(22.6%)만이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간에 하수도보급률은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2-11. 하수도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0.0	1.3	62.0	19 / 84	22.6	-
도농복합시	97.3	52.3	85.1	40 / 54	74.0	-
전체 농어촌 시·군	97.3	1.3	79.4	59 / 138	42.7	

2.2. 교통 부문 이행실태

2.2.1.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교통 부문 대중교통 항목의 이행실태는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을 통해 계산됨.
-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은 대중교통 부족에 대한 보완 세부기준임.
- 교통 부문 대중교통 항목의 통계는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기준으로 함. 2010년 기준으로 138개 시·군의 36,295개 행정리 중 32,820개 행정리에서 위 기준을 달성하고 있어, 달성률은 90.4%였음.
 - 지역으로 나뉘보면 군지역의 달성률은 88.7%, 도농복합시는 92.8%였음.
- 충남 계룡시만 유일하게 모든 행정리에서 위 기준을 만족함.

표 2-12. 대중교통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8.7	69.1	88.7	0 / 84	0.0	-
도농복합시	100.0	73.7	92.8	1 / 54	1.9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69.1	90.4	1 / 138	0.7	-

- 138개 농어촌 시·군 대중교통 항목의 달성률은 90.4%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실제 농촌 현실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닿지 않는 곳이 여전히 존재함.
 - 특히 오지 마을의 노인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음.
 - 이러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대중교통 취약지 및 취약자를 대상으로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이 필요함.
-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시·군별로 대중교통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138개 시·군 중 68개 시·군(49.6%)에서 실시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공영버스, 순환버스, 마을버스(미니버스 포함), 콜택시 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군이 84곳 중 35곳(61.1%), 도농복합시가 54곳 중 33곳(41.7%)임.

2.2.2.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 교통 부문 여객선 항목은 도서지역과 본도 간 노선별 연간 평균 운항 횟수로 이행실태를 점검함.
 - 여객선 운임 지원은 보완 사항으로 중심세부기준을 뒷받침하는 항목임.
 - 행정기관(읍·면사무소)이 위치해 있는 본도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지역은 138개 농어촌 시·군 중 군이 8곳, 도농복합시가 2곳으로 총 10개 시·군이 며, 본도의 수는 총 34개임.⁵⁾
 - 34개의 본도 중 1일 1회 이상 왕복 여객선이 운항되는 곳은 34개로, 본 기준의 달성률은 100%임.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도서지역 거주민은 여객선 운임비 중 일부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보완 세부기준인 여객선 운임 지원은 해당하는 모든 시·군에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 35조 2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내항 여객운송사업이란, 국내항 간에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또는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 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함.

5) 2013년 이행실태 점검 시 본도의 수는 총 36개였으나, 2014년 이행실태 점검 시 34개로 감소함. 인천 강화군 교동면,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은 해운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 운항’)에 의한 여객선 운항이 없으며 전남 신안군 자은면은 안좌도-팔금도-암태도-자은도 도로 연결로 여객선 운항이 없음.

2.2.3. 인도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교통 부문 인도항목의 이행실태는 (읍·면 소재지로의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중 일부 구간이라도 차도와 구분된 인도 구간이 있는 도로 수 / 읍·면 소재지로의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수) × 100으로 점검됨.
- 각 읍·면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중 인도가 부분적(위험 구간, 사고 다발 구간 등)이라도 설치된 도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농어촌 시·군 달성률은 12.5%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군이 11.2%, 도농복합시가 13.9%로 두 지역 모두 저조한 수준임.
-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지역은 4개 시·군(2.9%)뿐이었으며, 4곳(7.4%) 모두 도농복합시임. 군지역의 경우,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지역은 한 곳도 없음.

표 2-13. 인도 구분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87.5	0.0	11.2	0 / 81	0	3
도농복합시	100.0	0.0	13.9	4 / 54	7.4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12.5	4 / 135	2.9	3

주: 비고란의 숫자는 행정조사 시 응답하지 않은 지역의 수임. 달성 시·군 비율 산정 시 응답하지 않은 시·군은 제외하고 계산함.

- 이행실태 점검 결과, 인도항목의 경우 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 간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농어촌 시·군

안에 있는 도로라고 할지라도 해당 도로의 위계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짐.

- 가령,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도 등 성격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도로와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관리하는 도로가 혼재되어 있어 각 지자체가 관내의 모든 도로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존재함. 따라서 본 항목의 조사결과의 해석에는 다소 주의를 요함.
- 서비스기준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향후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도로들에 인도를 설치하는 노력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야 하는 부분임.

2.3. 교육 부문 이행실태

2.3.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교육 부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세부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은 (초등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을 통해 이뤄짐.
- 2014년 점검 시 농어촌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학교가 있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은 보완 사항임.
-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학교가 유지되어야 함.⁶ 이에 본 서비스기준 달성 목표 기준을 학생 규모에

6) 2012년까지 본 기준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기준이었으나, 2013년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 육성’으로 수정되었음.

상관없이 농어촌 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읍·면별로 1개교 이상 유지되는 것을 달성 목표로 함.

- 전체 농어촌 138개 시·군의 1,402개 읍·면 중에서 초등학교가 1개교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곳은 1,376개 읍·면으로 달성률이 98.1%에 달함.
 - 군지역 달성률은 97.4%이고 도농복합시는 99.2%이며, 지역적 차이는 거의 없음.
-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25개 시·군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율은 90.5%였음.
 - 지역별로는 군지역은 88%, 도농복합시는 94.4%이었음.
- 그러나 전체 1,402개 읍·면지역 중, 학생 수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있는 읍·면은 925개 읍·면(66.0%)에 달했으며, 이는 4곳을 제외한 134개 시·군에 걸쳐있음. 따라서 비록 위 서비스기준 달성률이 높다하더라도 소규모 학교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표 2-14. 농어촌 학교(초교) 육성 지원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54.5	97.4	74 / 84	88.0	-
도농복합시	100.0	84.6	99.2	51 / 54	94.4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54.5	98.1	125 / 138	90.5	-

- 농어촌 지역의 경우 1개 읍·면의 면적이 도시의 동지역에 비해 넓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많아 어린 학생들이 도보로 통학하기 힘들어 별도의 통학 대안이 필요함. 즉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 학교 교육에 있어 필수적 사항이라 할 수 있음.

표 2-15.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수단 제공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18.8	69.4	7 / 84	8.3	-
도농복합시	100.0	0.0	52.8	3 / 54	5.6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61.8	10 / 138	7.2	-

- 읍·면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2,698개교 중 1,668개교에서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음(61.8%).
 -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군지역의 경우 군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69.4%가 통학수단을 제공하며, 도농복합시는 52.8%의 초등학교가 통학수단을 제공함.
 - 오히려 군지역에서 많은 학교가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이유는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지역이 대중교통 취약지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더 길기 때문임.

2.3.2.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 교육 부문 고등학교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은 각 시·군에서 육성하는 우수 고교 유무 점검을 통해 이뤄짐.
- 농어촌 각 시·군별로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있는 지역은 전체 111개 지역에 달했으며, 전체 시·군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80.4%이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은 84곳 중 67개 지역(79.7%)이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였음. 도농복합시는 54곳 중 44개 지역(81.4%)이 이에 해당함. 비록 도농복합시의 비율이 높긴 했지만, 지역 간 큰 차이는 없음.

표 2-16. 시·군별 우수고등학교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67 / 84	79.7	-
도농복합시	44 / 54	81.4	-
전체 농어촌 시·군	111 / 138	80.4	-

-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 전국 138개 시·군에서 우수고교 지원 및 육성 정책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고교는 총 481개교로 나타났다.
 - 군지역에서 213개교, 도농복합시 지역에서 268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농어촌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숙형 고교 육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재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가 추진하는 우수고교 지원 정책이 증가하고 있음.
 - 단, 도농복합시 중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들의 경우 학생 수가 많은 고교들이 많고 이미 관내에 활성화된 고교들이 많아 우수고교 정책을 지자체가 따로 펼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2.3.3.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교육 부문 폐교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은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폐교 수 / 폐교 수) × 100을 통해 이뤄짐.

- 농어촌 138개 시·군에서 2013년에 폐교된 학교의 수는 31개 시·군에 걸쳐 총 49개교이었으며, 49개교 모두 폐교 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
- 지역별로 군지역은 19개 지역에 분포한 30개 학교, 도농복합시 경우 12개 지역에 걸친 19개 학교가 폐교될 때, 의견 수렴을 거쳤음.

표 2-17. 폐교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100.0	100.0	19 / 19	100.0	65
도농복합시	100.0	100.0	100.0	12 / 12	100.0	42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100.0	100.0	31 / 31	100.0	107

주: 비고란의 값은 '해당 없음'으로, 폐교된 학교가 없는 지역을 의미함.

2.3.4. 방과후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교육 부문 방과후학교 항목의 이행실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총 학생 수) × 100을 통해 산출됨.
- 138개 농어촌 시·군 초·중·고교 학생 236.9만 명 중 교과목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184.0만 명으로 나타났음. 전체 참여율은 77.6%에 이르며, 동 서비스기준을 달성함.
 - 군지역의 참여비율은 86.3%, 도농복합시는 75.5%로 나타남.
 - 군과 도농복합시 모두 달성목표를 상회했지만, 도농복합시가 군보다 낮

은 달성률을 보이는데, 이는 도농복합시의 경우 학원 등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군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임.

- 한편, 전체 138개 시·군 중 124개 시·군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89.8%), 14개 시·군(군지역: 2곳, 도농복합시: 12곳)은 여전히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표 2-1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9.7	59.3	86.3	82 / 84	97.6	-
도농복합시	94.9	56.3	75.5	42 / 54	77.7	-
전체 농어촌 시·군	99.7	56.3	77.6	124 / 138	89.8	-

2.3.5. 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 교육 부문 의견수렴 항목의 이행실태는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여부를 통해 점검됨.
- 13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103개 시·군에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달성률은 74.6%임.
 - 지역으로 구분하면 군지역 62곳에 설치되어, 달성률은 73.8%이며, 도농복합시는 41곳으로 달성률은 75.9%임.

표 2-19.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62 / 84	73.8	-
도농복합시	41 / 54	75.9	-
전체 농어촌 시·군	103 / 138	74.6	-

- 본 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설치된 위원회가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를 추가로 조사하였음.
-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된 103개 시·군에 대하여 실제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군지역 6곳, 도농복합시 5곳을 제외한 92개 시·군 지역에서는 한번 이상 개최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2.3.6.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 교육 부문 평생교육 항목은 (비형식 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을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함.
- 평생교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준형식과 비형식으로 구분되는데, 농어촌 주민에게는 학교 및 대학교 시설 등의 준형식보다 학교 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비형식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따라서 위 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읍·면별 비형식 평생교육 시설 현황을 조사하였음.

- 전국 1,404개 읍·면(2013년 기준) 중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수는 296개이며, 전체 읍·면 대비 21.1%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지역은 153개 읍·면(18.0%)에서, 도농복합시는 143개 읍·면(25.9%)에서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모든 읍·면에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 설치·운영되어 달성률 100%를 보인 곳은 경기도의 남양주시와 용인시임.

표 2-20. 평생교육 시설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66.7	0.0	18.0	0 / 84	0.0	-
도농복합시	100.0	0.0	25.9	2 / 54	3.7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21.1	2 / 138	1.4	-

- 교육부 협조를 통해 구득한 자료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음.
- 점검 결과, 총 985개 읍·면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치센터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 달성률은 70.3%으로 증가함.
 - 지역별로는 군지역이 66.0%, 도농복합시는 76.8%의 달성률을 보임.

2.4. 보건 의료 부문 이행실태

2.4.1.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 가능하다.

- 진료 서비스 항목은 각 시·군내에서 주요 과목의 1차 진료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실태를 판단함.
- 이를 위해 시·군별 내과, 산부인과, 치과 등 과목의 병의원, 한방병의원, 물리치료실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5개 과목에 대한 1차 진료가 모두 가능해야 해당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 본 항목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목별 병의원 현황 자료를 협조 받아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전국의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주요 과목의 1차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106개 시·군으로 달성률은 76.8%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지역 중에는 53곳(63.10%), 도농복합시 중에는 53곳(98.1%)에서 이 기준을 달성하고 있음.

표 2-21. 주요 과목 1차 진료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53 / 84	63.1	-
도농복합시	53 / 54	98.1	-
전체 농어촌 시·군	106 / 138	76.8	-

- 5개 주요 과목별 실태를 살펴보면, 내과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개소 이상 입지하고 있음.
- 그러나 32개의 시·군(23.2%)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은 67개 지역(48.5%)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에 이룸.
 - 따라서 주요 과목 가운데 특히 산부인과 진료에 있어서 많은 지역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35개(25.4%)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2. 주요 과목별 이행실태

단위: 개, %

구분	내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물리치료실	산부인과	분만 가능
진료 가능 시·군 수	136/138	138/138	138/138	137/138	106/138	71/138
달성률	98.6	100.0	100.0	99.3	76.8	51.4

주: 산부인과 분만 가능 여부는 공식통계가 없어 행정조사를 통해 조사함.

2.4.2. 순회방문

의료·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 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 순회방문 항목은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이 이루어진 의료접근성 낮은 행정리 수 / 의료접근성이 낮은 총 행정리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음.
- 행정조사 결과, 전국 행정리 중 대중교통이 하루 3회 이상 운행되지 않고 의료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곳은 2,111개 마을이며, 이 중 월 1회 이상 순

회방문이 이루어지는 곳은 702개 마을(33.3%)로 나타남.

- 군은 1,439개 마을 중 446개 마을(31.0%), 도농복합시는 672개 마을 중 256개 마을(38.1%)에서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이 이루어졌음.
- 오지마을이 있는 시·군은 138개 시·군 중 71개 시·군이었으며, 이 중 13개 시·군(18.3%)만이 모든 오지마을에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을 실시하고 있었음.
 - 13개 시·군 중 군이 10곳, 도농복합시가 3곳이었음.

표 2-23. 순회방문 진료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사군 비율	
군	100.0	0.0	31.0	10 / 48	20.8	36
도농복합시	100.0	0.0	38.1	3 / 23	13.0	31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33.3	13 / 71	18.3	67

주: 비고의 수치는 순회방문이 필요한 오지마을이 없다고 응답한 지역을 의미함.

2.4.3.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 의약품 구입 항목은 (의약품 구입가능 시설이 1개 이상 있는 읍·면의 수 / 총 읍·면 수) × 100 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농어촌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읍·면별로 있는가를 살펴보았음. 이때 관련 시설의 의약품소매시설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였음.
 - 왜냐하면 농어촌지역, 특히 면지역의 경우 의약품 소매시설이 없는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관련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임.

- 전체 1,406개 읍·면(2012년) 중 1,391개 읍·면(98.9%)이 동 기준을 달성함.
 - 군지역의 읍·면은 99.1%,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98.7%의 달성률을 기록함.
 - 강원 철원군, 전남 남원시,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충남 계룡시, 강원 원주시, 강원 철원군, 경기 파주시, 경기 연천군 총 9개 시·군의 일부 읍·면에는 의약품 소매시설이 없음.

표 2-24. 의약품 구입 가능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54.5	99.1	80 / 84	95.2	-
도농복합시	100.0	66.7	98.7	49 / 54	90.7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54.5	98.9	129 / 138	93.5	-

2.5. 복지 부문 이행실태

2.5.1.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노인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총 인원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위 식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

비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라 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기관(시설)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그 종류로는 방문요양서비스, 주간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이 있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위와 같은 정의에 따라 2013년, 2014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를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간주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혜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를 수혜자로 간주하여 그 비율을 살펴봄.
- 분석 결과, 138개 시·군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총 31.8만여 명에 달하였고, 이중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23.5만여 명으로, 달성률은 74.1%에 이룸.
- 지역별로는 군이 73.4%, 도농복합시가 74.5%로 비슷한 수준임.
- 2013년과 비교 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수는 29.7만 명에서 31.8만 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수혜를 받는 노인의 비율은 65.9%에서 74.1%로 늘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서비스수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도움이 필요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노인들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2010년 2월 신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 비율을 약 100% 수준까지 높인 시·군(5개)도 나타났음(충남 공주시, 전남 구례군, 강원 양양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표 2-25.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49.0	73.4	4 / 84	4.8	-
도농복합시	100.0	59.7	74.5	1 / 54	1.9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49.0	74.1	5 / 138	3.6	-

2.5.2.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 청소년 항목은 각 시·군내에 청소년 수련관·수련원·문화의집 운영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실태를 판단하였음.
- 138개 농어촌 시·군 중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지역은 137개 지역으로 나타나, 달성률은 99.3%였음.
 - 군지역에서는 83개 지역에 동 시설이 분포해 98.8%의 달성률, 도농복합시에서는 모든 지역에 해당 시설이 분포해 100%의 달성률을 보임.
 - 2013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시·군이 총 11개 지역이었으나 2014년에는 1개로 감소하였음.
 - 지역별 평균 센터 수를 보면 군지역은 약 3.3개, 도농복합시가 5.4개로 도농복합시가 약간 많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동안 농어촌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보다 많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2-2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83 / 84	98.8	-
도농복합시	54 / 54	100.0	-
전체 농어촌 시·군	137 / 138	99.3	-

2.5.3.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 아동 항목은 읍·면별로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 이행실태를 점검함.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이 매년 발간하는 공식통계,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부로부터 협조 받은 자료를 활용하였음.
-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은 주관하는 부처와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어촌지역 아동의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본 항목의 점검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설이 하나 이상 설치된 읍·면은 해당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함.

표 2-27. 방과후 돌봄시설 운영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54.5	96.2	66 / 84	78.6	-
도농복합시	100.0	50.0	97.8	47 / 54	87.0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50.0	96.9	113 / 138	81.9	-

- 2013년 기준 전국 1,404개 읍·면 중, 동 기준을 이미 달성하고 있는 읍·면은 1,360개(96.9%)로 현재 대부분의 읍·면에서 방과후 돌봄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군지역은 819개 읍·면(96.2%),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541개 읍·면(97.8%)에서 방과후 돌봄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방과후 돌봄시설이 모든 읍·면에 1개소 이상이 설립되어 있어 본 항목을 100% 달성한 시·군은 113개 지역으로, 동 기준의 달성 시·군 비율은 81.9%임.
 - 군지역의 달성 시·군 비율은 78.6%(66개 지역)이며, 도농복합시의 달성 시·군 비율은 87.0%(47개 지역)임.

2.5.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도달할 수 있다.

- 영유아 항목은 읍·면 단위별로 (어린이집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3명 이상인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2013년도에 1,404개 읍·면 가운데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3명 이상 거주하는 읍·면의 수는 총 1,395개였음. 이 중 실제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991개 읍·면으로, 본 기준의 달성률은 약 71.0%로 나타남.
 - 지역별로 군지역은 845개 읍·면 중 545개 지역에 어린이집이 마련되어 약 64.5%의 달성률을 나타냈으며, 도농복합시에서는 보육시설이 설치될 필요가 있는 550개 읍·면 중 446개 지역에 설치되어 81.1%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도농복합시의 보육시설 여건이 군지역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준을 달성한 시·군은 총 35개 시·군(25.4%)이었으며, 이 중 군이 16곳(19.0%), 도농복합시가 19곳(35.2%)에서 달성하였음.

표 2-28. 어린이집 운영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15.4	64.5	16 / 84	19.0	-
도농복합시	100.0	42.9	81.1	19 / 54	35.2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15.4	71.0	35 / 138	25.4	-

2.5.5.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다문화가족 항목은 시·군 단위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여부 및 방문서비스 실시 여부를 조사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다문화가족 항목의 서비스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와 방문교육 제공이 모두 만족되어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방문교육에 대한 예산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예산에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행실태 점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유무를 파악하면 가능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38개 농어촌 시·군 중 2개 시·군(인천 옹진군, 전남 구례군)을 제외한 136개 시·군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어 달성률이 98.6%로 나타남.
 - 군지역의 달성률은 97.6%(82개 지역)이며, 도농복합시 지역의 달성률은 100%(54개 지역)임.

표 2-2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82 / 84	97.6	-
도농복합시	54 / 54	100.0	-
전체 농어촌 시·군	136 / 138	98.6	-

- 방문서비스만을 따로 놓고 보면, 다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천 옹진군과 전남 구례군은 인근 지역 센터에 위탁하거나 지자체가 간접적으로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전남 구례군은 인근 곡성군 다문화센터에서 방문교육을 제공하며, 인천 옹진군의 경우 여건 상 개별 가정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각 읍·면사무소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6. 응급 부문 이행실태

2.6.1.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 응급서비스 항목은 시·군 단위별로 (도착소요시간 30분 이내 건 수/ 총 응급 출동 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138개 농어촌 시·군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총 약 88.1만여 건의 응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30분 이내에 도착한 경우는 63.3만여 건으로, 달성률은 71.8%임.⁷
 - 지역별로는 군이 72.8%, 도농복합시가 71.4%로 군지역이 비교적 달성률이 높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음.
 - 반면 모든 신고에 대하여 30분 이내로 도착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역이 60~85% 구간 안의 달성률을 보임.
 - 지난 해 전체 달성률이 73.4%였던 것을 감안하면 응급출동의 신속성은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30분 내 출동비율 최솟값은 작년도(61.3%)보다 낮아진 59.5%이나, 최댓값은 작년도(82.9%)보다 높아진 84.5%였음. 즉, 작년보다 응급출동 서비스가 개선된 지역이 있는 반면, 열악해진 지역들도 있음을 알 수 있음.
-
- 7) 지난 해 점검 때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응급신고 건수와 도착 건수를 사용하였으나, 올해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의 접수 건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12월 한 달간의 응급신고 건수와 도착 건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데이터를 포함시킬 경우 소방출동 항목의 달성률은 다소 개선될 수도 있음.

표 2-30. 구급차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기준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84.5	59.5	72.8	0 / 84	0.0	-
도농복합시	82.9	61.0	71.4	0 / 54	0.0	-
전체 농어촌 시·군	84.5	59.5	71.8	0 / 138	0.0	-

2.6.2.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소방청, 해경청, 산림청별 응급의료장비 구축 선박 및 헬기운영 여부를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모든 사항 구축 시 목표 달성으로 간주함.
- 낙도·벽지에 헬기, 선박 등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는 다양한 기관에서 대응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의 EMS 헬기, 해양경찰청의 선박 및 헬기, 산림청의 헬기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각 기관의 헬기 구비 현황을 조사하였음.
 - 해양경찰청의 장비에 대해서는 헬기 이외에도 응급의료장비를 설치한 선박 현황도 동시에 살펴봄.
- 소방방재청의 EMS(Emergency Medical Service) 전용헬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14개 소방항공대에서 총 10대의 EMS구급헬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에서는 2대 이상 헬기를 보유한 항공대는 구급헬기를 지정해, EMS장비가 상시 탑재되어 있으며, 1대를 보유한 항공대는 이동식 EMS 장비를 이용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작년도 15개 소방항공대가 총 27개의 EMS 헬기를 운영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금년이 작년도에 비해 응급출동의 신속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표 2-31. 119 EMS구급헬기 운영 현황

단위: 대

총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북
10	2	1	1	1	1	1	1	1	1

- 산림청은 시·도별로 1대 이상씩 헬기를 운용하여, 총 18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 벽지에 대한 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있음.

- 단, 산림청 인명구조 헬기는 환자 이송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급의료 장비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는 것은 아님.

표 2-32. 의료장비를 구비한 산림청 헬기 현황

단위: 대

계	본부 (원주)	서울	강원 강릉	충북 진천	충남 청양	전북 익산	전남 영암	경북 안동	경남 양산	경남 합양
18	1	2	2	2	2	2	2	1	2	2

-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마다 함정 및 헬기를 구비하고 있고, 필요 시 응급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낙도 및 벽지에 대한 환자 이송을 지원함.

- 이행실태 점검 대상인 2014년도 해양경찰청의 EMS 전용 헬기 및 함정은 해양경찰청의 공문을 통하여 2013년도의 현황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에도 응급의료장비가 상시 설치된 139대의 함정과 8대의 헬기가 운용되고 있으며, 낙도 및 벽지의 응급환자 발생 상황에 대처하고 있음을 확인함.⁸

표 2-33. 해양경찰서 EMS 장비 장착 합정 및 헬기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인천	학교	동해지방청				서해지방청				남해지방청				제주지방청		
				속초	동해	포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합정	139	17	1	3	8	9	9	15	8	10	5	10	6	3	12	9	10	4
헬기	8	2	0	0	2	0	0	2	0	0	0	0	1	0	0	0	1	0

2.7. 안전 부문 이행실태

2.7.1.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본 기준은 2013년 개정된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새롭게 신설된 기준으로 올해 2014년도에도 점검대상이 되는 항목임.
 - 농어촌 지역 치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도록 신설되었음.
 - 범죄취약마을 1일 1회 순찰여부 확인을 통해 기준 이행실태를 확인함.
 - 본 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협조를 통하여 1) 행정리 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과, 2) 각 지구대 및 경찰서별 일일 순찰계획이 행정리(마을) 단위로 파악되어야 함.
 - 범죄취약 지역 마을은 범죄 발생 건수, 강력범죄 발생 여부 등 치안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최근 1년간 1회 이상 강력범죄가 발생한 행정리 및 최근 5년간 3회 이상 강력범죄가 발생한 행정리인 것으로 간주함.
- 8) 2012년 이행실태 시 점검 시 EMS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합정 및 항공기는 각각 294대, 23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 이행실태 점검 시 EMS 장비가 상시 구축되어 있는 합정 및 항공기는 각각 139대, 8대로 나타남.

• 5대 강력범죄: 살인(미수 포함),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현재 구축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공표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점검이 어려움. 다만, 경찰청의 공문을 통해서 현재 모든 행정리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2.7.2. 방법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

- 방법설비 항목은 행정리(마을) 단위별로 (방법용 CCTV가 설치된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본 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행정리 별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받아 활용하였음.
- 2014년도 기준 전체 36,314개 행정리 중 11,871개 행정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총 달성률은 32.7%로 나타났음. 2013년도의 30.0%에 비해 설치된 행정리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마을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안전에 취약하다고도 볼 수 있음.
 - 군지역은 28.9%, 도농복합시는 38.1%로 도농복합시에 속한 행정리의 설치율이 다소 높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CCTV 설치율은 저조한 상황임.
- 모든 마을에 CCTV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37개 시·군 중 7개 시·군으로, 5.1%에 불과함.
- 그러나 본 행정조사 결과는 각 지자체 별로 담당자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있어도 CCTV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향후 보다 정확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경찰청의 정확한 데이터 구축과 협조가 필요함.

표 2-34. 방법용 CCTV 설치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0	28.9	4 / 83	4.8	1
도농복합시	100.0	6.06	38.1	3 / 54	5.6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	32.7	7 / 137	5.1	1*

* 전남 완도군은 CCTV 구축률 파악이 어려움.

○ 행정리 별로 설치된 CCTV 현황과 함께 향·포구 별로 설치된 방법용 CCTV 현황을 해양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점검한 결과, 지난해와 동일하게 48개 시·군의 2,172개 향·포구 가운데 166개(7.6%)의 향·포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모든 향·포구에 방법용 CCTV가 설치된 곳은 경기 화성시가 유일하며, 반면 모든 향·포구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7곳(군지역 4곳, 도농복합시 3곳⁹⁾에 이름.
-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공문에 따르면 지난 해 동안 해양경찰청의 향·포구 방법용 CCTV 설치에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정체상태였으며 유지·보수만 진행된 상태임. 즉, 지난해와 금년의 이행실태는 동일함.
- 향·포구 지역 방법설비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는 만큼 향후 이 지역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설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9)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무안군, 함평군, 경기도 평택시 등 7곳.

2.7.3.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 경찰 출동 항목의 점검을 위해서는 (CODE 1¹⁰ 신고 시 도착소요 시간 10분 이내 건 수 / 총 CODE 1 신고 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 그러나 전체 138개 농어촌 시·군의 CODE 1 출동시간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시·군 단위 경찰서별 ‘평균출동시간’ 자료가 유일함.
- 2013년도에 평균출동시간은 강원 평창경찰서의 평균출동시간이 10분을 다소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10분 미만이었으므로, 약 137개의 시·군에서 해당 서비스기준은 달성된 것이라 볼 수 있음(99.3%).
 - 평창군을 관할하는 평창경찰서의 경우에는 작년도 평균출동시간이 10분 02초로 나타났음.
 - 138개 농어촌지역을 관할하는 140개 경찰서 가운데 11개소를 제외하고 129개 경찰서(92.1%)의 평균출동시간은 7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음.

10) 112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치의 긴급성에 따라 현장 출동 여부가 결정됨. 그 분류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을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검거가 필요한 신고는 긴급출동(CODE 1), 경찰의 현장조치는 필요하나 단순 폭행사건 및 교통사고 등의 신고는 일반출동(CODE 2), 생활소음과 불법 주·정차, 노점 단속 등 단순불편 신고와 같이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신고는 비출동(CODE 3)에 해당함.

표 2-35. 각 시·도별 농어촌 지역 평균출동시간 실태

단위: 개

	5분 이내	7분 이내	10분 이내	10분 초과	합계
부산청	0	1	0	0	1
인천청	1	1	0	0	2
대구청	0	1	0	0	1
강원청	0	6	7	1	14
경기청	7	10	0	0	17
충남청	14	0	0	0	14
충북청	6	3	0	0	9
전남청	2	18	0	0	20
전북청	4	6	3	0	13
경남청	13	10	0	0	23
경북청	24	0	0	0	24
제주청	2	0	0	0	2
합계	73	56	10	1	140

*138개 농어촌 지역을 관할하는 140개 경찰서들의 평균출동시간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평균출동시간이 10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각 개별 건수별로는 10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기에 주의가 요구됨.
 - 대부분의 경찰서가 평균적으로 7분 이내에 현장 출동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령 7분 이상이면서 10분 이내로 평균출동시간이 나타난 경찰서 관할지역의 경우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출동건도 존재할 수 있음.
- 보다 정확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각 출동 건 별 도착소요시간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인 읍·면 지역으로의 출동 건수 자료가 필요함. 경찰청과 이에 대한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2.7.4.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 소방 출동 항목은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음.
- 201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8개 시·군에서 총 20,597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출발시점으로부터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건은 그 중 9,344건으로, 약 45.4%의 달성률을 나타냄.
 - 지난해 달성률인 42.8%에 비해 약 2.6% 상승하였으나 본 항목의 목표치인 55%는 달성하지 못하였음.
 - 군지역은 총 7,643건의 출동 건 중 3,416건이 5분 이내 출동한 건수로서 달성률은 44.7%이며, 도농복합시 지역은 총 12,954건 중 5,928건이 5분 이내 출동 건수로서 약 45.8%의 달성률을 보임.
- 55%의 목표치를 달성한 시·군들을 살펴보면 군지역이 21곳, 도농복합시 지역이 21곳으로 총 42개 시·군이 목표치 55%를 달성하였음.
 - 지난해에는 138개 농어촌 시·군 중 29곳(약 21%)이 목표치를 달성하였는데 반해 올해에는 30.4%의 시·군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2-36. 소방 출동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73.2	7.4	44.7	21 / 84	25.0	-
도농복합시	84.8	17.6	45.8	21 / 54	38.9	-
전체 농어촌 시·군	84.8	7.4	45.4	42 / 138	30.4	-

-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한 소방서가 관할하는 면적이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도 좋지 않아 도시지역 및 동지역에 비해 출동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138개 시·군 중 ‘동’ 지역을 제외하고 ‘읍·면’ 지역으로 출동한 건수들만을 추출하여 살펴보면, 총 15,267건의 화재 출동 건 중 5분 이내 출동 건은 5,906건으로 나타나, 달성률은 45.5%에서 38.7%로 하락함.
 - 이에 따라 목표치인 55%이상을 달성한 시·군수는 30개(군지역 21곳, 도농복합시 9곳)로 감소하며, 달성 시·군 비율도 30.4%에서 21.7%로 감소하게 됨.
 -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소방서 및 장비, 소방인력들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크며 출동 지연으로 인한 더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차 이외에도 별도의 대안적인 출동 조치 대책이 요구됨.

2.8. 문화 부문 이행실태

2.8.1. 독서

읍·면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 독서 항목은 읍·면 단위별로 (공공도서관 혹은 작은도서관 운영 읍·면 수/총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2014년도 기준 전국 1,402개 읍·면 중 630개 읍·면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 달성률이 44.9%로 나타났음.

- 군지역은 850개 읍·면 중 359개 읍·면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달성률은 42.2%이며, 도농복합시는 552개 읍·면 중 271개 읍·면에 설치되어 49.1%의 달성률을 보였음.
- 관내 모든 읍·면에 도서관 시설이 있는 시·군은 6곳(4.3%)이었으며, 이 중 군지역은 1곳(1.2%), 도농복합시는 5곳(9.3%)임.
 - 6개 시·군은 충북 증평군, 제주 서귀포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양주시, 충남 당진시, 경남 김해시 등임.

표 2-37. 도서관 도서 열람 및 대출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9.1	42.2	1 / 84	1.2	-
도농복합시	100.0	10.0	49.1	5 / 54	9.3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9.1	44.9	6 / 138	4.3	-

- 이와 같이 농어촌에는 도서관이 없는 읍·면(특히 면) 지역이 상당히 많음. 지자체는 이러한 지역의 도서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안적인 도서 대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자체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
- 행정조사를 통하여 시·군별로 도서관이 없는 지역 주민에게 도서를 대여해 주고 반납을 받을 수 있는 대안적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138개 시·군 중 110개 시·군(72.5%)에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¹¹⁾, 우편을 이용한 대출·반납, 제3자를 이용한 대출·반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11) 순회문고란,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 공공시설에 다량의 도서를 일정기간 동안 비치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의미함.

2.8.2.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제공하는 시·군 단위별 1) 문화예술회관과 2) 지방문화원의 시설 현황, 공연 및 전시 개최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음.
 - 본 항목의 점검 공식은 ‘시설 조건과 문화 프로그램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각 시·군 별 문예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시설의 유무와 그 시설들에서 월 1회 이상 공연 및 전시가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함.¹²⁾
- 그 결과, 138개 시·군 중 문화시설이 있고, 해당 시설에서 각종 문화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관람 가능한 곳은 127개 시·군으로, 92.0%의 달성률을 보였음.
 - 지역별로는 군(90.5%)에 비해 도농복합시가 94.4%로 나타나 문화 부문 서비스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작년도(2013년)에 군지역의 달성률이 77.4%, 도농복합시의 달성률이 81.9%였던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시·군에서 문화 프로그램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12) 지방문화원 공연 및 전시는 월 1회 이상, 문예회관 전문공연은 분기별 1회 이상이 달성 목표임. 그러나 본 항목의 이행실태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크므로 지방문화원과 문예회관의 1년 간 공연 및 전시 횟수를 모두 더하여 12개월로 나눔으로써 총합의 평균이 월 1회 이상인지를 검토하였음.

표 2-38.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공연 프로그램 개최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76 / 84	90.5	-
도농복합시	51 / 54	94.4	-
전체 농어촌 시·군	127 / 138	92.0	-

2.8.3.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항목은 읍·면 단위별로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개최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2014년에 각 읍·면별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이 연 2회 이상 이루어진 읍·면을 조사한 결과, 총 1,402개 읍·면 중 523개 읍·면에서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어, 본 항목의 달성률은 37.3%로 나타났음.
 - 군은 33.5%, 도농복합시는 43.1%로 도농복합시에서 약간 높았으며, 작년도 달성률보다 각각 4.3%, 1.5%씩 높아졌음.
- 모든 읍·면에서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목표치인 100%를 달성한 지역은 전체 138개 시·군 중 17개 시·군(12.3%)으로 나타났음.
 - 군지역에서는 8곳(9.5%), 도농복합시에서는 9곳(16.7%)로 나타났음.

표 2-39.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0.0	33.5	8 / 84	9.5	-
도농복합시	100.0	0.0	43.1	9 / 54	16.7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37.3	17 / 138	12.3	-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은 문화 및 여가시설이 매우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수요가 매우 높은 부분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오고 있는 항목임.
- 2011년 달성률이 14.0%였던 데 반해, 현재는 37.3%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현재 달성률이 여전히 저조한 만큼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문화 프로그램 유치 노력이 필요함.
 - 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펼쳐야 할 필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 있는 반면, 문화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임.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항목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과 연동시켜 문화시설 및 문화서비스가 열악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보다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2.9. 정보통신 부문 이행실태

2.9.1.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 초고속망 항목은 초고속망 접속과 광대역 통합망이라는 2개의 세부기준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세부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점검해야 함.
 - 그러나 초고속망은 올해 기준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¹³ 광대역통합망은 초고속망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광대역 통합망이 구축된 지역의 비율로 본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이 가능함.
- 광대역 통합망 세부기준은 행정리 단위별로 (광대역 통합망이 구축된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광대역 통합망이 구축된 마을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준으로 구축 대상이 되는 총 36,045개 행정리 중 27,867개 행정리로 달성률이 77.3%에 달하여, 목표치인 80%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2013년의 달성률인 73.4%보다 약 6.6% 포인트가 증가하여 광대역통합망 구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 지역별로는 군지역의 달성률은 75.0%로 나타나 목표치에는 근접하였으나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도농복합시 지역들의 달성률이 80.6%로 나타나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행정리 기준 구축률 80%의 기준을 달성한 시·군은 44개 군(52.4%)과 39개 도농복합시(72.2%)로, 총 138개 중 83개 시·군(60.1%)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지역을 놓고 볼 때 행정리 기준 구축률이 77.3%에 이르고 있음에도 80% 이상 구축률을 달성한 시·군의 비율이 60.1%라는 것은 시·군마다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에 다소간 불균형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향후 개선되

13) 초고속망 구축의 경우 이미 전국 모든 곳이 달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2008년 기준 전국 초고속망 구축률이 99.7%로 발표되었으며, 이후 관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더 이상 초고속망 구축률을 조사 및 발표하지 않고 있음.

어야 할 부분임.

- 한편, 세대 수를 기준으로 구축률을 살펴보면, 전체의 90.3%에 해당하는 세대에 광대역 통합망이 구축되어 있어 해당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음.
 - 세대수를 기준으로 시·군 내 구축률이 80%를 넘는 시·군은 111개 시·군(군지역 67개 지역, 도농복합시 44개 지역)으로 나타나, 달성 시·군 비율은 80.4%에 이름.

표 2-40.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이행실태(행정리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29.7	75.0	44 / 84	52.4	-
도농복합시	100.0	36.2	80.6	39 / 54	72.2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29.8	77.3	83 / 138	60.1	-

주: 세대 수 기준의 경우 달성률은 90.3%, 달성 시·군 비율은 80.4%에 달함.

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변화

-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한 이래 지난 4년 간 얼마나 많은 개선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재의 9개 부문, 32개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표 2-41).
 - 각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달성률을 중심으로 하며 해당 기준의 특성상 달성률 계산이 부적합할 경우 달성 시·군 비율로 대신하였음.

- 주거 부문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2011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
 -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1년 36.2%에서 2014년 50.8%로 개선되었음.
 - 상수도 보급률은 2011년 51.5%에서 2012년 56.1%, 2013년 59.0%, 그리고 2014년 62.9%로, 하수도 보급률 역시 2011년 73.2%에서 2012년 74.1%, 2013년 77.6%, 그리고 2014년 79.4%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 단,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용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및 관리를 하는 비율은 2013년 97.2%에서 2014년 93.1%로 다소 감소하였음.
 -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행정리 비율도 2011년 26.5%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44.2%로 향상되었음.

- 교통 부문의 경우 대중교통과 여객선 항목은 2011년에 비해 2014년도에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인도 설치비율 항목은 달성률이 감소하였음.
 - 15분 거리의 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비율은 2011년 82.4%에서 2014년 90.4%로 향상되었음.
 - 2011년에는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자료를, 2012년부터는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 여객선 항목은 2011년 97.4%에서 2013년 94.4%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100.0%로 달성률이 증가하였음.
 - 인도 항목의 경우 달성률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으나, 읍·면소재지로 이어지는 도로의 개수라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도로 위계 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혼재되어 있는 이유로 지자체별로 조사값의 변화가 크다는 한계가 있음.

- 교육 부문에서는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교육발전위원회), 평생교육 등 항목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폐교와 방과후학교 항목의 경우 4개년에 걸쳐 꾸준히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의견수렴(교육발전위원회) 항목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향상됨. 의견수렴은 2011년 60.7%에서 66.7%, 68.1% 그리고 2014년에 74.6%로 향상되었음.
 - 평생교육시설 항목은 2011년도의 18.9%에 비해 2014년에는 운영 비율이 21.1%로 증가하였음. 다만,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달성률이 거의 유사하고 달성률 증가세가 더더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 유치원/초·중교 항목의 경우 기존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에서 읍·면별 학교 유지로 그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음. 따라서 2013년, 2014년 비교만 가능함. 점검 결과, 대부분의 읍·면에 초등학교가 존재하나(98.1%),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소폭 하락함.
 - 유치원/초·중교 항목은 본 기준과 세부기준 모두 하락한 부문으로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초등학교의 비율도 62.2%에서 61.8%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등학교 항목은 2011년, 2012년, 2013년에 교육부에서 선정한 우수고등학교의 수를 점검하였고, 2014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우수고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점검하여 우수고교 육성사업이 이루어지는 고교의 수를 점검하였음. 전년도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교육부 지정 우수고교 수보다는 지자체에서 자체 육성하는 고교 비율은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항목은 개선되었고, 의약품 구입 항목은 거의 개선이 없었음.
- 진료서비스의 경우 산부인과를 포함해 중요과목의 1차 진료가 가능한 시·군이 늘어나 목표달성률이 2013년 70.3%에서 2014년 76.8%로 증가함.

- 순회방문의 경우 월 1회 방문이 이뤄지는 의료취약 마을 수가 2013년 27.8%에서 2014년 33.3%로 증가하여 소폭 개선됨.
 - 의약품 구입 항목의 경우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극히 일부 읍·면의 의약품 판매점이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복지 부문은 노인, 청소년, 영유아, 다문화가족 항목이 개선되었음.
- 노인 항목의 경우 점검방법이 바뀌어 2013년, 2014년도의 비교만 가능한데, 2013년(65.9%)에 비해 2014년(74.1%)에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비율이 상당히 증가함.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신청자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노인들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년도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항목의 이행실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 청소년 항목의 경우 2014년 달성 시·군 비율이 99.3%로 매우 높아졌으며, 다문화가족센터 서비스 제공 시·군 비율도 98.6%로 크게 높아졌음.
 - 아동 항목의 경우 미미한 변동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하였음.
- 응급 부문을 보면, 응급서비스 항목과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항목이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응급서비스 항목의 달성률은 2011~2012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3년, 2014년 점검 결과 73.4%, 71.8%로 크게 하락함.
 - 30분 내 응급현장 출동은 지난 4년 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열악해진 항목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받게 될 응급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는 달성률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각 지역을

관할하는 구조본부 별로 구급헬기의 수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곳이 있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었음.

- 안전 부문은 방법설비 항목은 개선된 반면, 경찰 출동과 소방 출동은 소폭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 방법설비 항목은 CCTV 설치 행정리 수가 증가하며 2011년 11.0%에서 20.2%, 30.0%, 그리고 2014년에는 32.7%로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
 - 그러나 항·포구 CCTV의 경우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만 이루어짐.
 - 소방 출동의 경우 2011년 51.4%에서 2012년 52.4%로 약간 개선되었다가 2013년에 42.8%로 하락하였음. 그러나 2014년에 다시 45.4%로 향상되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목표치 달성 시·군수도 13곳 증가함.
 - 그러나 여전히 201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경찰 출동 항목의 경우 3년 간 100.0%로 동일했으나, 2014년에는 강원도의 일부 시·군에서 출동시간이 증가하며 달성 시·군 비율이 99.3%로 약간 하락하였음.
 - 다만, 경찰 출동의 경우 경찰서별 평균시간이 아니라, 건별 자료가 협조된다면 다소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됨.
 - 경찰 순찰 항목의 경우 점검통계에 한계가 있어 점검할 수 없었음.
- 문화 부문의 경우 독서 항목은 하락하였고,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항목은 개선되었음.
 - 읍·면에서 도서를 열람,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 여건은 2011년 52.2%에서 43.2%, 43.6%로 다소 낮아지다가 2014년에 44.9%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에 비교하면 소폭 하락하였음.
 - 반면에 문화시설이 있으며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관람할 수 있는 곳은 2011년 75.7%에서 2014년도에 92.0%로 향상되었음.

- 특히,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연 2회 이상 개최한 읍·면 수가 보다 많아지면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항목은 14.0%에서 37.3%로 향상되었음.
- 초고속망 항목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모든 곳에서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함. 2011~2012년까지는 구축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2013년, 2014년의 두 시점 간 비교가 가능함.
 - 2014년에는 2013년의 달성률 73.4%에 비해 77.3%로 개선되었음.
- 위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2011년 대비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향상 여부를 살펴보면, 향상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수는 21개, 정체인 것은 2개, 하락한 것은 9개로 나타남.¹⁴

표 2-41.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의 변화

단위: %

부분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2011	2012	2013	2014	'11~'14 비교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80.1	88.3	88.3	88.3	↗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36.2	44.7	47.9	50.8	↗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6.5	28.4	40.4	44.2	↗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51.5	56.1	59.0	62.9	↗
	하수도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73.2	74.1	77.6	79.4	↗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82.4	90.4	90.4	90.4	↗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97.4	97.4	94.4	100.0	↗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2011	2012	2013	2014	'11~'14 비교
	인도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19.0	14.0	11.4	12.5	↘
교육	유치원 /초·중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	98.4	98.1	↘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85.7	86.3	86.2	80.4 ¹⁵	↘*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97.8	95.7	98.2	100.0	↗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2.4	82.8	80.0	77.6	↗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60.7	66.7	68.1	74.6	↗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18.9	19.8	21.1	21.1	↗
보건 의료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79.4	78.3	70.3	76.8	↗*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4.4	6.7	27.8	33.3	↗*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99.6	99.6	99.5	98.9	↘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7.3	27.1	65.9	74.1	↗*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89.3	91.4	92.0	99.3	↗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97.9	98.0	97.9	96.9	↘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도달할 수 있다.	69.9	67.9	70.3	71.0	↗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8.6	90.6	94.2	98.6	↗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2011	2012	2013	2014	'11~'14 비교
응급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 처치를 한다.	99.8	99.5	73.4	71.8	↘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100.0	100.0	100.0	100.0	— ¹⁶
안전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	100.0	100.0	—
	방범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11.0	20.2	30.0	32.7	↗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100.0	100.0	100.0	99.3	↘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한다.	51.4	52.3	42.8	45.4	↘
문화	독서	읍·면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52.2	43.2	43.6	44.9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75.7	87.1	81.9	92.0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14.0	30.2	34.7	37.3	↗
정보통신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61.5	61.2	73.4 ¹⁷	77.3	↗*	

주: 1)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정체된 경우 —, 하락한 경우 ↘로 나타냄.

2) 2013년에 처음 신설된 기준이거나, 점검 통계나 방법이 변경되어 2013년과 2014년 간의 비교만 가능한 경우, ↘*, ↗*, —*로 별표를 첨가해 표시함.

14) 점검방법이 변경되어 2013년과의 비교만 가능한 경우(* 표시)에는 2013년과 비교해 향상되거나 정체, 하락한 경우도 포함하여 집계하였음.

15) 각 시·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우수고등학교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우수 고등학교수를 점검하였음. 그러나 2010년~2013년도에는 교육부가 지정한 농어촌 우수 고교를 점검에 사용하였으므로 2014년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16) 도서벽지응급서비스, 경찰순찰 등 2개 항목은 2010년부터 모두 100%로 동일하지만, 보유 장비 및 인력 확충 등 지속적인 노력에 의한 질적인 서비스 향상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부분의 점검이 이루어진 후 개선 여부 판단 가능.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시·군별 이행실태를 종합하여 도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2-42>와 같음. 시·도별로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의 서비스기준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전라남도와 강원도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남도와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가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은 각각 12개, 10개, 10개, 17개이었음. 제주도는 특히 교육부문 항목들에서 달성률이 높았으며 경기도는 주거 부문, 충청남도는 교육과 복지 부문, 경상북도는 교육과 보건의료 부문에서 달성률이 높았음.
-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거 부문에서는 경기도의 달성률이 두드러지게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도가 주거 부문에서 이행실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난방 항목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았음.
 -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가 읍 지역까지 보급되지는 못한 실정임.
 - 전라남도는 하수도보급률도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교육 부문의 경우 충청남도와 제주도가 달성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치원·초·중교 항목과 폐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의견수렴 등 항목에서 두 시·도의 달성률이 높았음.
-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경상북도와 제주도가, 복지 부문에서는 충청남도와 제주도의 여건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순회방문 항목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17) 초고속망 항목은 2011~2012년에는 구축률을 확인할 수 없어 가입률로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나, 2013년, 2014년에는 구축률 자료를 구축하여 점검한 결과임.

- 교통,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등의 부문에서는 기준 달성률의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음.
 - 단, 방법설비 항목에서는 전라남도가, 소방출동 항목에서는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들이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2-42. 시·도별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달성률 비교

단위: %

분야	항목	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1. 주거	주택	90% 이상	93.6	87.3	88.1	90.0	88.8	87.9	82.6	87.0	86.7
	난방	50% 이상	74.9	16.6	48.8	45.0	31.3	32.0	47.6	40.7	0.0
	마을공동시설	100% 이상	32.5	58.3	64.9	47.0	34.1	34.4	44.7	63.6	88.4
	상수도	75% 이상	75.6	55.4	54.3	51.6	73.9	52.2	57.9	67.5	100.0
	하수도	71% 이상	84.8	82.5	75.2	70.3	75.9	69.3	75.9	85.7	89.2
2. 교통	대중교통	100% 이상	95.8	88.7	89.7	92.7	93.2	89.6	85.2	88.0	93.0
	여객선	100% 이상	-	-	-	-	100.0	100.0	-	100.0	100.0
	인도	100% 이상	22.9	23.3	7.3	17.6	5.4	9.7	11.4	8.6	20.0
3. 교육	유치원/초·중교	100% 이상	95.0	95.0	100.0	100.0	99.4	98.7	99.5	96.6	100.0
	고등학교	100% 이상	24.1	24.5	7.3	17.6	5.4	9.9	11.4	8.9	20.0
	폐교	100% 이상	100.0								
	방과후학교	70% 이상	65.2	67.7	85.7	80.8	77.5	81.7	84.8	85.0	90.3
	의견수렴	100% 이상	73.3	66.7	72.7	100.0	46.2	85.7	50.0	100.0	100.0
	평생교육	100% 이상	45.4	24.4	22.5	21.7	13.2	15.3	16.2	17.6	41.7
4. 보건의료	진료서비스	100% 이상	100.0	66.7	90.9	86.7	61.5	71.4	77.8	60.9	100.0
	순회방문	100% 이상	67.0	0.0	50.0	60.7	44.1	9.5	27.5	100.0	-
	의약품구입	100% 이상	97.2	94.1	99.0	98.8	99.4	100.0	100.0	100.0	100.0

분야	항목	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5. 복지	노인	100% 이상	77.4	81.4	73.9	77.4	70.1	72.1	71.4	70.8	79.9
	청소년	100%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95.2	100.0	100.0	100.0
	아동	100% 이상	95.0	92.4	98.0	100.0	98.7	98.3	97.5	94.5	100.0
	영유아	100% 이상	94.2	82.5	71.6	79.5	61.0	67.2	57.7	64.7	100.0
	다문화가족	100%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95.2	100.0	100.0	100.0
6. 응급	응급서비스	100% 이상	70.5	76.4	69.4	71.3	72.0	73.0	70.6	75.3	65.8
7. 안전	방범설비	100% 이상	40.1	34.6	36.6	38.5	40.8	17.6	23.8	41.8	45.3
	경찰 출동	100% 이상	100.0	93.3	100.0						
	소방 출동	55% 이상	27.4	48.0	58.5	62.6	63.9	54.0	42.1	34.1	69.1
8. 문화	독서	100% 이상	67.9	41.2	45.1	44.7	36.5	42.4	46.4	36.6	83.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100% 이상	93.3	100.0	100.0	100.0	84.6	90.5	88.9	95.7	50.0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100% 이상	69.3	44.5	41.2	37.3	28.9	36.7	19.9	31.9	100.0
9. 정보통신	초고속망	80% 이상	98.0	87.5	70.5	83.1	51.6	67.9	88.8	79.2	94.8

주 1) 음영으로 된 값은 해당 항목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을 의미함.

2) 응급 부문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그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안전 부문 경찰순찰 항목은 이행실태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움. 이에 본 시·도별 이행실태에서는 제외되었음.

3) 현재 ‘-’ 처리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나타냄.

4. 소결: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본 2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각 부문별 서비스기준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농어촌서비스 기준 만족 여부를 각 항목별로 138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2014년 분석에서도 이전 분석과 비슷하게 농어촌서비스 기준 충족은 대부분 도농복합시인 지역들이 군지역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대도시 인근 지역들이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2011년도에 비해 2014년도까지 꾸준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부문별로 전년도 및 과거 실태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거부문은 모든 항목에서 그동안 꾸준한 개선이 이루어졌음. 주택 항목은 시·도 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난방 항목 및 상수도 부문은 시·도 간 격차가 크므로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
 - 교통 부문의 경우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 확보와 관련해서는 매우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개선도 미미하여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반면, 준공공교통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 교육 부문은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평생교육, 폐교시 의견수렴 등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유치원·초·중교 항목과 고등학교 항목, 방과후학교 항목을 보면 농어촌 학교 육성과 우수고교 육성 노력은 오히려 그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학교교육과정에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 보건의료 부문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읍·면수는 소폭 적어졌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읍·면에서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며,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항목은 전년도에 비해 보다 개선되었음.
 - 복지 부문 이행실태는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서비스수준 개선이 관찰됨. 특히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됨.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노인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돌봄서비스를 받기 때문임.
 - 응급 부문의 경우 다른 부문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부문으로 상당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응급서비스 부문은 물론이고 도서·벽지 응급 이송서비스는 개선이 거의 없거나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안전 부문은 방법설비의 서비스기준 달성률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소방출동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출동시간이 단축되어 달성률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1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 부문의 경우, 독서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서 개선이 되었으나, 지역적인 문화 향유 기회 사이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이행실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목표치를 달성한 지역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서비스기준 제도 시행 및 이행실태 점검과정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세부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서비스기준을 점검할 적합한 통계 데이터를 찾기 어렵거나, 점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세부기준을 보다 명확히 다듬을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인도 항목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존재하는 도로들의 위계와 각 위계별 도로를 관리하는 부처들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서비스기준 점검이 진행되어 농어촌 도로의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뿐만 아니라, ‘읍·면소재지에 접근하는 도로의 개수’라는 정의는 실제 일선 공무원들에게 매우 모호하게 인식되고 있고, 짧은 데이터 수집 기간 동안 모든 농어촌 도로의 인도 설치 여부를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도로의 개수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점검과정에 난관이 있었음.
 - 평생교육 항목의 경우, 평생교육 기관을 정의하는 기준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평생교육 관련 자료의 일관성 및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부기준에 명확히 반영하거나 혹은 자료 요청 과정에서 이 점을 미리 주지시켜야 함.
 - 준공공교통 항목 역시, 서비스기준에서 상정하는 준공공교통 정책과 달리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 지원 및 교통요금 보조 정책을 준공공교통 지원 정책이라고 여기고 있음.
 - 요금지원 등의 재정지원의 형태와 준공공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 중 어느 것이 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수월하고 효과적인 정책 인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세부기준 및 측정요소를 보다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음.
 - 이렇듯 세부기준의 모호성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및 통계 관련자들에게 서비스기준 점검 데이터 전체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 보다 명료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매 년마다 새롭게 측정할 수 있어 달성노력 및 이행실태의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변경하거나 대안적 점검 형태를 모색해야 함.

- 통계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농림어업총조사의 대중교통 운행 횟수별 마을 수 자료는 5년 단위로 발표되는 통계로서 매년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을 측정하는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데이터로서는 부적합함.
 -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데이터들의 기준연도가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등으로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정확히 2014년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가리킨다고 말하기 어려워짐.
 - 주택 항목의 경우 1년 안에 단기적인 주택구조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 존재하나, 대중교통 운행 횟수의 경우 개선 혹은 하락 등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 등의 대안적 점검 방식을 모색하거나 세부기준을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각 정부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지자체별로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과정을 협조하는 담당자가 교체되어,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구득이 어려워짐.
- 사전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자료들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담당자가 각 항목별 세부기준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에 매우 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함.
 - 특히, 행정조사의 경우 각 지자체 별로 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거나 요청한 대로 자료 구득되지 않은 경우가 생겨나 점검과정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자료 자체의 신뢰도를 저해할 위험도 존재함.
 - 따라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1-2회에 걸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요와 의의, 점검수단 및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홍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원활한 협조를 구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제 3 장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결과

1. 이행지수 평가 개요

1.1. 이행지수 변수 구성

-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RSS Implementation Index)’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9개 부문별 통계조사결과 값을 기반으로 이를 표준화하여 각 부문이행지수를 산출한 후, 9개 부문이행지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이행지수를 산출함.
- 이행지수를 통한 평가방식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2년도까지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와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이행지수’, 그리고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이행지수’로 구분하여 평가하다가 2013년도부터는 부문이행지수 및 종합이행지수만을 다루는 것으로 변경함.
 - 2011년과 2012년에 평가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는 시·군의 종합적인 서비스기준 충족정도를 평가하는 이행지수이며,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이행지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할 10개의 핵심기준만으로 산출된 이행지수를 의미함.

- 2013년도 평가부터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각 부문별 기준이 국가 최소 서비스 기준으로 선정된 기준임을 고려하여, 핵심 기준을 재선정하여 평가하지 않음. 이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이행지수’는 2013년 평가부터 포함되지 않음.
-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이행지수 및 종합이행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구성 변수는 <표 3-1>과 같음.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출을 위해 20개 항목, 22개 평가 변수를 이용함. 일부 통계자료는 지수를 산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세부기준을 지니고 있어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제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은 총 12개임.
 - 일부 시·군에만 적용되는 항목(여객선, 폐교,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항목)은 이행지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 이분 형태 값을 가지는 항목(고등학교, 의견수렴,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청소년, 다문화가족,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항목)은 연속적인 값을 가지지 않으므로 지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 그 외에 제외된 항목은 경찰 순찰, 경찰 출동 항목임. 경찰 순찰은 통계의 한계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외하였고, 경찰 출동 항목은 집계 방법 등의 문제로 제외하였음.

표 3-1.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부문	항목	평가 변수	기준 충족값
주거	주택	최소 주거 기준 이상 주택 비율	90%
	난방	읍 지역 도시 가스 보급률	50%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행정리 비율	100%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100%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부문	항목	평가 변수	기준 충족값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71%
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100%
	인도(人道)	인도 설치 도로 비율	100%
교육	유치원/초·중교	초등학교 입지 읍·면 비율	100%
		통학수단 제공 초등학교 비율	100%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설치 읍·면 비율	100%
보건 의료	의약품 구입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	100%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100%
	아동	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 읍·면 비율	100%
	영유아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읍·면 비율	100%
응급	응급 서비스	시·군별 30분 내 현장 도착 건수 비율	100%
안전	도난 방지	CCTV설치 행정리 비율	100%
	소방 서비스	시·군별 5분 내 현장 도착 가능 건수 비율	55%
문화	독서	도서 대출·열람 가능 읍·면 비율	100%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수혜 읍·면 비율	100%
정보통신	초고속망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80%

1.2. 지수 산출 방법

-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출에서는 표준화 점수법을 응용한 지수 산출방법을 사용하였지만,¹⁸ 2013년부터는 이행지수 산출을 달리하여 서

18) 2013년부터 표준화 점수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임. 첫째, 표준화점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수화 대상인 점검통계에 의한 이행

비스 기준별 충족값을 기준으로 한 선형변환(Linear Scale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지수를 산출함.

- 기존의 선형 변환은 각 서비스기준 항목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각 시·군의 항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서비스 기준의 충족값(표 3-1 참조)을 기준으로 한 선형변환 방법으로 각 시·군의 항목별 이행지수를 산출함.

- 산출된 이행지수 값의 범위는 $0 \leq \text{이행지수} \leq 1$ 또는 이행지수 > 1 임.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시·군의 이행지수는 1, 기준을 초과달성한 시·군은 1 이상, 충족하지 못한 시·군은 0-1 사이 값을 가짐. 이를 통해 각 시·군별 서비스기준 충족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hat{x}_{ij} = \frac{x_{ij} - x_{j,\min}}{S_j - x_{j,\min}}$$

\hat{x}_{ij} = i지역 j지표의 선형변환지수

x_{ij} = i지역 j지표값

S_j = j지표의 서비스기준 충족값

$x_{j,\min}$ = j요인의 최소값

- 부문이행지수 및 종합이행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위의 식을 이용하여 각 시·군별로 20개 항목의 이행지수를 각각 산출한 후, 이를 9개 부문별로 산술평균하여 부문이행지수를 구함. 종합이행지수는 산출된 9개 부문이행지수를 산술평균하여 구함.

실태 점검결과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함. 둘째, 지수화 대상인 각 기준 항목의 표준화 범위가 동일해야 함.

- 참고로, 각 부문이행지수 및 종합이행지수 산출 시 2011년과 2012년에는 전문가, 시·군 정책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각 항목에 가중치를 두고 이행지수를 산출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이를 변경하여 가중치를 두지 않고 산술평균하였음.
 - 2013년도부터 가중치를 두지 않은 이유는 첫째, 전문가, 시·군 정책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부문별, 항목별 가중치가 특정 기준 항목의 부문이행지수나 종합이행지수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쳐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둘째, 매년 가중치 변경으로 인한 이행실태 점검 이해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었음. 따라서 2013년도부터는 가중치 부여 없이 이행지수를 산정함.

2.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이행실태 평가 결과

- 이행지수를 통한 이행실태 평가를 위해 2014년도 기준으로 9개 부문 20항목 22개 지표를 이용하였으며, 부문 내 항목들의 평균으로 각 부문의 이행지수를 산출하였음.
- 농어촌 시·군에서 9개 부문이행지수 중 정보통신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 부문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가장 큰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서비스기준 충족률은 높지만 지역 간 격차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함. 이행지수가 가장 낮은 부문은 응급 부문, 안전 부문이었음(표 3-2).
- 교육, 보건·의료, 응급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지수는 군에 비해 도농복합시가 높게 나타났음(표 3-2).

- 군보다 도농복합시의 이행지수 평균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도농복합시가 종합적인 서비스기준 충족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
 - 교육, 보건·의료, 응급 부문은 군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이행지수가 높게 나타남. 보건·의료, 응급 부문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작아 군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서비스충족률의 차이가 크다고 말할 순 없지만, 교육 부문의 경우 군지역은 이미 서비스기준을 초과달성하였으나, 도농복합시는 충족하지 못함. 이러한 결과는 공공서비스 공급측면만을 고려한 수치이기 때문으로 사료됨. 예를 들어 통학수단 제공 초등학교 비율의 경우, 도농복합시는 군지역에 비해 통학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초등학교 비율이 낮고,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급측면에서는 도농복합시가 군지역보다 서비스충족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주거, 교통, 복지, 안전, 문화지수,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도농복합시의 이행지수가 군지역보다 높게 나옴. 위의 부문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에 상당한 인프라 투자가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함.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고, 군지역에 비해 도시화로 인해 인프라가 더 구축되어 있는 도농복합시의 서비스기준 충족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부문별로 이행지수의 공간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나누어 시·도별 분포와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였음.

표 3-2. 부문이행지수의 시·군 평균 및 표준편차

분야	군	도농복합시	농어촌 시·군
주거	0.69(0.17)	0.85(0.18)	0.76(0.19)
교통	0.42(0.17)	0.51(0.20)	0.46(0.19)
교육	1.03(0.16)	0.85(0.21)	0.96(0.21)
보건의료	0.98(0.12)	0.97(0.13)	0.97(0.12)
복지	0.67(0.14)	0.75(0.10)	0.70(0.13)
응급	0.34(0.12)	0.31(0.11)	0.33(0.12)
안전	0.33(0.25)	0.37(0.27)	0.35(0.26)
문화지수	0.37(0.20)	0.46(0.27)	0.40(0.24)
정보통신	0.98(0.32)	1.08(0.33)	1.02(0.33)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2.1. 주거 부문이행지수 분석 결과

- 주거 부문의 이행지수는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도시가스 보급률, 마을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비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등 6개 평가 지표에 근거해서 산출됨.
- 항목별 이행지수 평균을 보면 군에서는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0.97)의 지수가 가장 높고 도농복합시에서는 하수도 보급률(1.14)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이행지수 결과 값이 1을 초과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낮아, 많은 도농복합시가 하수도 보급률 항목에서 서비스 충족 기준값을 초과 달성했음을 유추할 수 있음(표 3-3).
- 이행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항목은 군에서는 도시가스 보급률, 도농복합시에서는 마을 공동시설의 프로그램 지원행정리 비율임. 표준편차가 가장 큰 지수는 군과 도농복합시 모두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었음. 즉,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역 간 차이가 큰 항목임을 알 수 있음.

표 3-3. 주거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주거 부문이행지수		0.69(0.17)	0.85(0.18)	0.76(0.19)
주택	최저주거기준이상 가구수비율	0.74(0.27)	0.95(0.17)	0.82(0.25)
난방	도시가스 보급률	0.44(0.53)	0.75(0.74)	0.56(0.63)
마을 공동시설	유지관리비지원 행정리 비율	0.97(0.12)	0.94(0.15)	0.96(0.13)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0.50(0.39)	0.47(0.34)	0.49(0.37)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0.69(0.33)	0.87(0.35)	0.76(0.35)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0.83(0.25)	1.14(0.18)	0.95(0.27)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각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 시·군이 상위 30% 내에 속한 비율이 높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보임(표 3-4).
- 이행지수가 높은 시·군은 경기도와 경상남도, 제주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와 반대로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이행지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높은 순서로) 김해시, 계룡시, 양주시, 광양시, 경산시, 사천시, 달성군, 증평군, 용인시, 거제시로, 2곳의 군과 8개의 도농복합시로 구성되어 있음.
 - 이행지수가 가장 낮은 10개 지역은 군위군, 합천군, 청송군, 성주군, 의성군, 청양군, 영양군, 청도군, 함평군, 화천군 등으로 모두 군이며 경상북도 지역(6곳)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주거 부문이행지수가 낮은 10개 지역의 공통적인 특성은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이행지수가 모두 0으로 나왔으며, 마을공동시설 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이행지수가 0에 가깝게 나왔다는 것임. 반면, 마을공동시설 유

지 관리비 지원 행정리 비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을공동시설 관련 이행지수에서 시설지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기준은 거의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마을공동시설과 관련하여 이행지수가 낮은 지역은 시설 유지 지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이행지수의 경우 주거 부문이행지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임. 주거 부문이행지수가 높은 10개 지역은 모두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항목에서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시·도별 주거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1	0	0	1
대구광역시	1	0	0	1
인천광역시	0	1	1	2
울산광역시	1	0	0	1
경기도	14	1	0	15
강원도	0	13	2	15
충청북도	4	5	2	11
충청남도	5	5	5	15
전라북도	1	9	3	13
전라남도	2	10	9	21
경상북도	4	6	13	23
경상남도	6	5	7	18
제주도	2	0	0	2
합계	41	55	42	138

2.2. 교통 부문이행지수 분석 결과

- 교통 부문의 지수는 대중교통 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과 인도 설치 도로 비율로 이루어져 있음(표 3-5).
- 교통부문 세부항목 중 대중교통 이행지수 평균은 0.68인 것에 비해 인도 설치 도로 비율 이행지수 평균은 0.23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 설치 이행지수로 인해 전반적으로 교통부문이행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도 설치에 대한 각 지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표 3-5. 교통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교통 부문이행지수		0.42(0.17)	0.51(0.20)	0.46(0.19)
대중교통	대중교통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0.63(0.23)	0.75(0.18)	0.68(0.22)
인도	인도 설치 도로 비율	0.21(0.21)	0.26(0.30)	0.23(0.25)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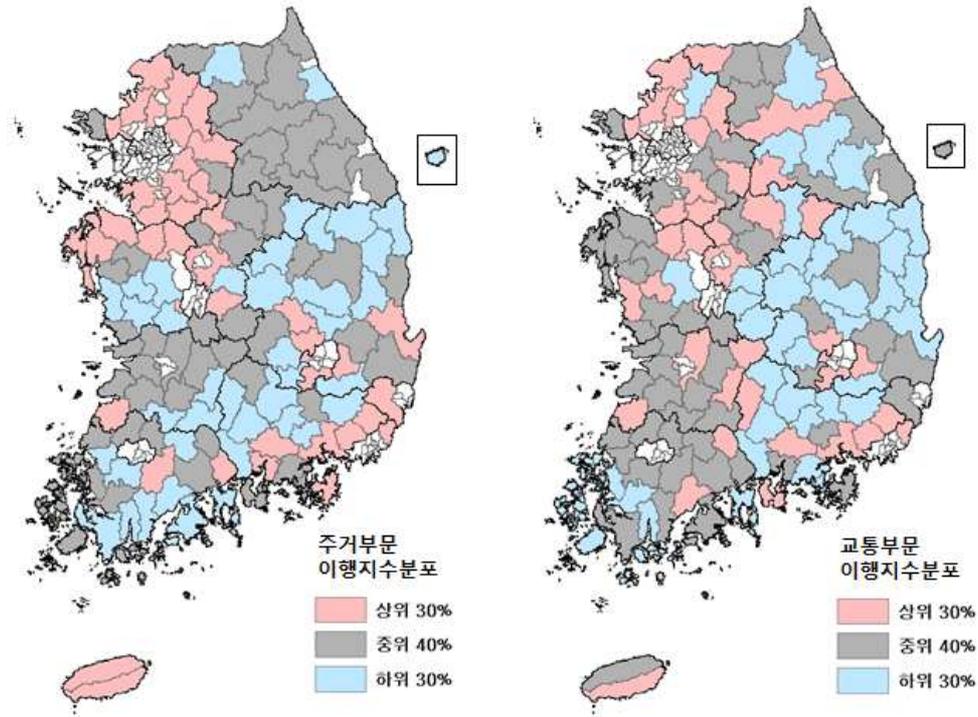
- 교통 부문이행지수를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서 다시 살펴보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시·군들은 상위에 속해 있는 비율이 높고 산간지역이 많은 경상북도 시·군 및 해안·도서지역들은 하위 분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표 3-6, 그림 3-1).
 - 교통 부문에서 상위에 속한 시·군은 (높은 순서로) 계룡시, 파주시, 양주시, 진주시, 여주군, 태안군, 남양주시, 아산시, 천안시 등으로 경기도 또는 각 도의 중심 도시들임.

- 반면 하위에 속한 시·군은 신안군, 성주군, 여수시, 완도군, 평창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합천군, 의성군 등으로 도서 및 산간지역이 많음.
- 교통 부문의 경우 이행지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교통부문의 두 항목 (대중교통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인도 설치 도로 비율) 모두에서 차이가 크게 남.
 - 교통 부문이행지수가 가장 높은 10개 지역의 대중교통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항목의 지수 평균은 0.90, 인도 설치 도로 비율 항목의 지수 평균은 0.86인 반면, 교통부문이행지수가 가장 낮은 10개 지역의 지수 평균은 각각 0.20과 0.07로 나타났음.
 - 이행지수가 낮은 지역 대부분은 도서 및 산간지역으로 지형적 여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상위권 지역과도 이행지수 격차가 매우 커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6. 시·도별 교통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1	0	0	1
대구광역시	1	0	0	1
인천광역시	0	1	1	2
울산광역시	0	1	0	1
경기도	10	4	1	15
강원도	4	7	4	15
충청북도	4	3	4	11
충청남도	6	8	1	15
전라북도	4	9	0	13
전라남도	2	12	7	21
경상북도	2	6	15	23
경상남도	6	3	9	18
제주도	1	1	0	2
합계	41	55	42	138

그림 3-1. 주거 및 교통 부문이행지수 분포



2.3. 교육 부문이행지수 분석 결과

- 교육 부문이행지수는 3개의 항목 - 유치원·초·중학교, 방과후학교, 평생 교육 항목 - 으로 이루어져 있음. 교육 부문이행지수는 전체 평균 0.96으로 나타나 서비스기준 충족기준에 거의 도달했음을 보여줌.
- 각 항목별 이행 지수를 분석해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행지수 평균이 가장 크고 평생 교육기관 설치 항목의 이행지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표 3-7).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의 지수는 군과 도농통합시에서 모두 1이상을 나타내 기준값을 충족한 시·군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초등학교 입학 읍·면 비율 이행지수 평균도 군과 도농복합시 모두 1에 가까운 값으로 나와 다른 항목에 비해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시·군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통학수단 제공 초등학교 비율은 전체 시·군에서는 0.65로 나타났으며, 군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높은 지수값을 보였음. 이는 도농복합시보다 군지역의 등하교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 많은 학교가 통학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 항목은 교육 부문에서 가장 낮은 이행지수를 나타내는데, 군지역은 0.20, 도농복합시는 0.28로 나타났음. 산출된 수치에는 읍·면별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학교 부설, 평생학습관 등의 비형식시설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산출되었음.

표 3-7. 교육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교육 부문이행지수		1.03(0.16)	0.85(0.21)	0.96(0.21)
유치원/초·중교	초등학교 입학 읍·면 비율	0.95(0.17)	0.99(0.06)	0.96(0.14)
	통학수단 제공 초등학교 비율	0.72(0.22)	0.55(0.25)	0.65(0.24)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2.28(0.51)	1.56(0.78)	2.00(0.72)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설치 읍·면 비율	0.20(0.14)	0.28(0.21)	0.23(0.18)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내 시·군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위에 속해 있는 비율이 높고, 경기도와 강원도 내 시·군이 하위에 속한 비율이 높았음(표 3-8, 그림 3-2).
 - 교육 부문이행지수가 높은 지역은 괴산군, 음성군, 의령군, 임실군, 장성군,

산청군, 공주시, 군위군, 진안군, 예산군, 청원군 등으로 대부분 군지역이었음.

- 이행지수가 낮은 지역은 춘천시, 포천시, 화성시, 양양군, 연천군, 평택시, 이천시, 원주시, 철원군, 군산시 등으로 도농복합시가 7곳, 군지역이 3곳으로 나타났음.
- 도농복합시의 교육 부분이행지수가 군보다 낮은 것은 통학수단 제공 초등학교 비율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등이 군에 비해 낮기 때문임.
- 도농복합시의 통학수단 제공 초등학교 비율 항목 이행지수가 낮은 이유는 군지역에 비해 통학거리가 짧기 때문에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행지수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에서 군지역보다 도농복합시에서 낮은 이행지수를 보이는 이유는, 도농복합시에서 학원 등 민간부문서비스가 공공서비스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서비스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교육 부문의 서비스기준 충족률을 구성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른 부문에 비해 지형적 여건 및 지역경제 규모 등의 영향력을 덜 받음. 따라서 각 지역의 서비스기준 향상 노력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문임.

표 3-8. 시·도별 교육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1	0	0	1
대구광역시	0	1	0	1
인천광역시	2	0	0	2
울산광역시	0	0	1	1
경기도	1	1	13	15
강원도	3	2	10	15
충청북도	6	4	1	11
충청남도	6	4	5	15
전라북도	0	7	6	13
전라남도	8	11	2	21
경상북도	6	16	1	23
경상남도	7	8	3	18
제주도	1	1	0	2
합계	41	55	42	138

2.4. 보건·의료 부문이행지수 분석 결과

- 보건·의료 부문의 이행지수는 자동차로 20분 내 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로 이루어져 있음.
- 의약품 구입 부문의 이행지수를 보면 평균이 0.97로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표준편차도 0.12로 상대적으로 낮아, 서비스 기준이 대부분 지역에서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9, 그림 3-2).
 -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기준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철원군, 계룡시, 파주시, 고성군, 원주시, 연천군, 공주시, 청원군, 남원시 등 9개의 시·군은 이행지수 값이 1에 미치지 못하여, 서비스 기준이 충족되고 있지 않음. 특히 철원군은 지수가 0으로 나타나 서비스 개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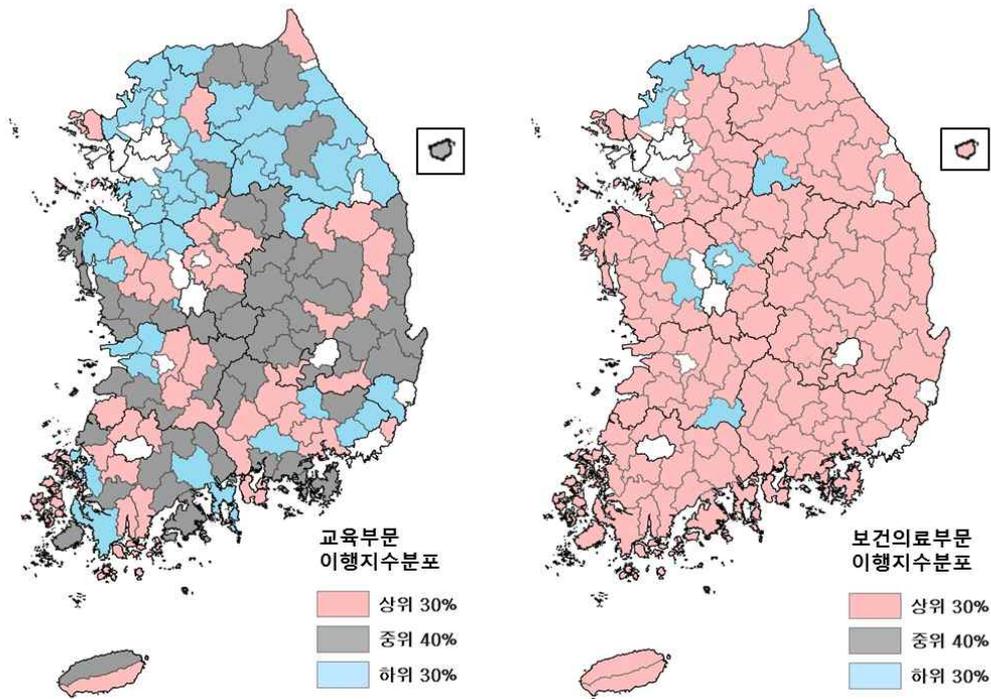
시급하며, 계룡시(0.27)와 파주시(0.49)도 이행지수 값이 1에 미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낮은 이행지수를 보임.

표 3-9. 보건·의료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보건·의료 부문이행지수		0.98(0.12)	0.97(0.13)	0.97(0.12)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 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	0.98(0.12)	0.97(0.13)	0.97(0.12)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그림 3-2.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이행지수 분포



2.5. 복지 부문이행지수 분석 결과

- 복지 부문은 3가지 항목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수혜자 비율, 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 읍·면 비율, 어린이집 설치 읍·면 비율 - 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3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이행지수를 산출함.
- 항목별 이행지수 결과를 보면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 읍·면 비율이 0.94로 가장 높은 지수 값을 나타냈음(표 3-10).
 - 3가지 항목 중, 노인 부문의 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또한 표준편차 값도 작아 군과 도농복합시 전체적으로 노인 부문의 서비스기준 충족률이 낮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3-10. 복지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복지 부문이행지수		0.67(0.14)	0.75(0.10)	0.70(0.1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0.48(0.22)	0.50(0.16)	0.49(0.20)
아동	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 읍·면 비율	0.93(0.17)	0.95(0.16)	0.94(0.16)
영유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읍·면 비율	0.61(0.27)	0.80(0.20)	0.69(0.26)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복지 부문이행지수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위에 속한 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3-11, 그림 3-3).
 - 상위에 속한 시·군은 공주시, 황성군, 나주시, 인제군, 아산시, 제주시, 강릉시, 화성시, 음성군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도농복합시임.
 - 반면, 하위에 속한 시·군은 곡성군, 철원군, 옹진군, 울릉군, 보은군, 창원시, 의령군, 고성군, 예천군, 군위군 등으로 창원시를 제외하고 모두 군지역임.

○ 이행지수가 낮은 지역 대부분은 특히 노인 항목에서 낮은 이행지수 값을 나타냈으며, 아동 항목과 영유아 항목도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 일부 지역의 경우 각 항목별로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다른 몇몇 지역에서는 서비스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남.

- 노인 항목의 이행지수가 낮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적시에 공급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역적 편차가 컸지만, 아동 항목과 영유아 항목도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항목들은 방과후돌봄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이 우선 전제되어야 함. 영유아와 아동이 거의 없는 농어촌 지역이나 시설투자가 용이하지 못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일수록 이행지수가 낮은 경향을 보임.

표 3-11. 시·도별 복지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0	1	0	1
대구광역시	1	0	0	1
인천광역시	0	1	1	2
울산광역시	0	1	0	1
경기도	11	3	1	15
강원도	10	2	3	15
충청북도	5	3	3	11
충청남도	6	8	1	15
전라북도	1	6	6	13
전라남도	4	8	9	21
경상북도	1	11	11	23
경상남도	0	11	7	18
제주도	2	0	0	2
합계	41	55	42	138

2.6. 응급 부문이행지수 분석 결과

- 응급 부문이행지수는 시·군별 30분 내 현장 도착 가능 건수 비율을 통해 산출됨.
- 응급 부문이행지수를 보면 군(0.34)이 도농복합시(0.31)보다 다소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음. 그러나 전체 시·군 평균은 0.33으로 많은 시·군이 서비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도 0.12로 낮아 대부분의 시·군이 응급 부문 서비스 충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음(표 3-12).

표 3-12. 응급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응급 이행지수		0.34(0.12)	0.31(0.12)	0.33(0.12)
응급	시·군별 30분 내 현장 도착 가능 건수 비율	0.34(0.12)	0.31(0.12)	0.33(0.12)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응급 부문이행지수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강원도,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위 30%에 속한 시·군이 많았으며,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기도는 하위 30%에 속한 시·군이 상대적으로 많았음(표 3-13, 그림 3-3).
 - 상위에 속한 시·군은 연천군, 제주시, 김포시, 서귀포시, 영양군, 칠곡군, 고성군, 봉화군, 의성군 등으로 제주도, 경상북도 지역이 많았음.
 - 반면, 하위에 속한 시·군은 태안군, 기장군, 울릉군, 거제시, 무주군, 화성시, 보은군, 양평군, 남원시, 밀양시 등으로 여러 시·도가 혼재되어 나타났음.

그림 3-3. 복지 및 응급 부문이행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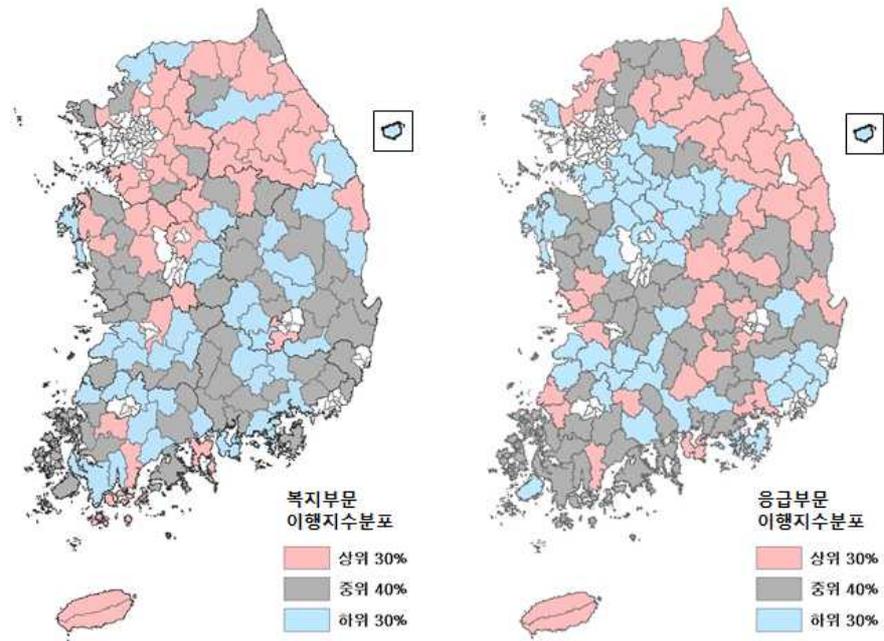


표 3-13. 시·도별 응급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0	0	1	1
대구광역시	1	0	0	1
인천광역시	0	1	1	2
울산광역시	0	0	1	1
경기도	4	4	7	15
강원도	11	4	0	15
충청북도	1	2	8	11
충청남도	2	9	4	15
전라북도	2	3	8	13
전라남도	4	14	3	21
경상북도	10	11	2	23
경상남도	4	8	6	18
제주도	2	0	0	2
합계	41	56	41	138

2.7. 안전 부문이행지수 분석 결과

- 안전 부문이행지수는 2개 항목 - CCTV설치 행정리 비율, 시·군별 5분내 화재 현장 도착 가능 건수 비율 - 로 계산됨.
- CCTV 설치 행정리 비율 평균 지수에서 전체 시·군은 0.35, 군은 0.33, 도농복합시는 0.37을 보였음. CCTV 설치 행정리 비율 이행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서비스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지역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표 3-14).
- 소방 항목은 도난방지 항목에 비해 군, 도농복합시 모두 이행지수 값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표준편차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가 있음을 나타냄.

표 3-14. 안전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안전 부문이행지수		0.55(0.17)	0.61(0.24)	0.58(0.20)
도난방지	CCTV설치 행정리 비율	0.33(0.25)	0.37(0.27)	0.35(0.26)
소방	5분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0.77(0.30)	0.86(0.39)	0.80(0.34)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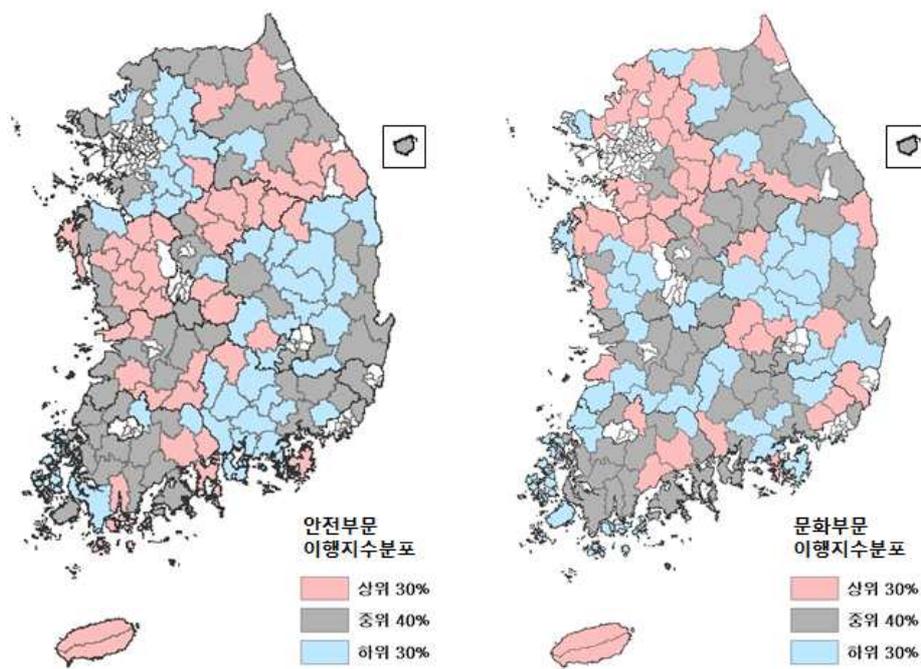
- 안전 부문이행지수를 시·도별 지역으로 살펴보면,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상위 30%에 속한 시·군 숫자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는 하위 30%에 속한 시·군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3-15, 그림 3-4).
 - 상위 시·군은 순위에 따라 광양시, 영동군, 남원시, 아산시, 정읍시, 증평군, 제천시, 군산시, 천안시, 순천시, 논산시 등으로 영동군, 증평군을 제외하고 모두 도농복합시였음. 특히 광양시, 영동군, 남원시, 아산시, 정읍시의 경우 안전 부문 서비스 이행기준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하위에 속한 시·군은 순위에 따라 하동군, 남양주시, 영천시, 용인시, 김천시, 가평군, 청도군, 안성시, 남해군, 의령군 등으로 경기도 지역 4곳, 경상남도 3곳, 경상북도 3곳으로 나타났음.
- 안전 부문이행지수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소방 항목의 이행지수 값임. 안전 부문이행지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소방 항목이행지수 값이 서비스기준을 초과 달성한 데 반해, 하위 10개 지역은 0.22~0.46의 낮은 값을 나타냄.

표 3-15. 시·도별 안전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0	1	0	1
대구광역시	0	1	0	1
인천광역시	0	2	0	2
울산광역시	0	1	0	1
경기도	1	4	10	15
강원도	5	9	1	15
충청북도	8	2	1	11
충청남도	10	4	1	15
전라북도	6	7	0	13
전라남도	5	12	4	21
경상북도	2	8	13	23
경상남도	2	4	12	18
제주도	2	0	0	2
합계	41	55	42	138

그림 3-4. 안전 및 문화 부문이행지수 분포



2.8. 문화 부문이행지수 분석 결과

- 문화 부문이행지수의 세부 항목은 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음. 독서(도서대출·열람 가능 읍·면 비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수혜 읍·면 비율)을 통해 이행지수를 산출함.
- 항목별 이행지수를 보면 독서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이 각각 0.42과 0.39로, 두 이행지수 값을 통해 아직 서비스가 부족한 시·군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표 3-16).
 - 독서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이행지수의 표준편차가 모두 크게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16. 문화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문화 부문이행지수		0.37(0.20)	0.46(0.27)	0.40(0.24)
독서	도서 대출·열람 가능 읍·면 비율	0.38(0.23)	0.48(0.29)	0.42(0.26)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수혜 행정리 비율	0.35(0.29)	0.45(0.37)	0.39(0.32)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문화 부문이행지수의 시·군 분포를 보면 경기도의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상위 30%에 속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상도의 시·군은 하위 30%에 속한 지역이 많았음(표 3-17).

- 문화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큰 지역들은 양주시, 증평군, 서귀포시, 남양주시, 천안시, 제주시, 성주군, 울주군, 가평군, 음성군 등으로 군과 도농복합시가 혼재되어 있음.
- 이행지수 1을 만족시킨 지역은 서귀포시, 증평군, 양주시 3곳이었음. 이행지수가 낮은 지역은 공주시, 안동시, 상주시, 청양군, 영주시, 거창군, 강릉시, 순창군, 의성군, 고성군 등으로 경상도의 시·군(6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행지수가 높은 상위 10위 지역들은 두 항목에서 모두 높은 지수 값(0.82~1.00)을 보인 반면, 이행지수 하위 10위권 지역들은 두 항목 모두 낮은 지수 값(0.01~0.10)을 보여 문화를 향유하는데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음.

표 3-17. 시·도별 문화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0	1	0	1
대구광역시	0	1	0	1
인천광역시	0	0	2	2
울산광역시	1	0	0	1
경기도	13	2	0	15
강원도	4	7	4	15
충청북도	2	8	1	11
충청남도	5	4	6	15
전라북도	1	7	5	13
전라남도	3	12	6	21
경상북도	6	6	11	23
경상남도	4	7	7	18
제주도	2	0	0	2
합계	41	55	42	138

2.9. 정보통신 부문이행지수 분석 결과

- 정보통신 부문의 이행지수는 광대역통합망 구축율을 통해 산출됨. 정보통신 부문이행지수를 전체 시·군으로 살펴보면, 1.02로 이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지역적으로 보면 군은 0.98, 도농복합시는 1.08로 두 지역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음. 그러나 지수의 표준편차가 0.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지역별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음(표 3-18).

표 3-18. 정보통신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정보통신 부문이행지수		0.98(0.32)	1.08(0.33)	1.02(0.33)
초고속망	광대역 통합망 구축율	0.98(0.32)	1.08(0.33)	1.02(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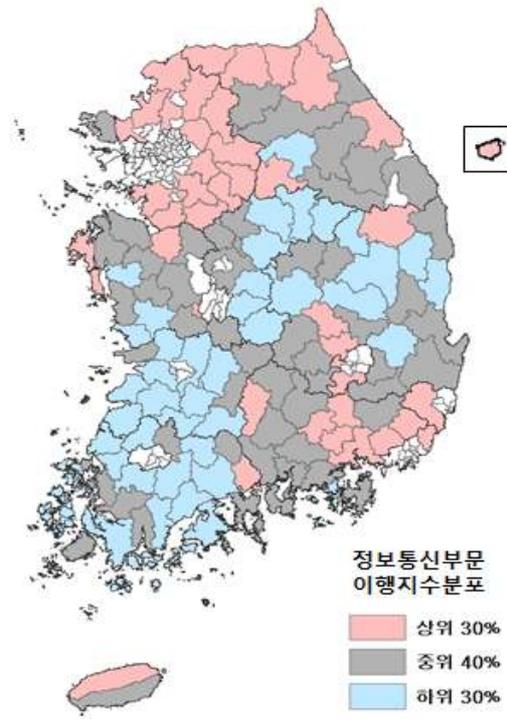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정보통신 부문의 이행지수를 보면 경기도 15개 시·군은 모두 상위 30%에 속해 있고 그 다음으로 강원도 내 7 곳이 상위 30% 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반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내 대부분의 시·군은 하위 30%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표 3-19, 그림 3-5).
- 138개 시·군의 60.1%인 83개 읍·면지역의 광대역 통합망 구축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시·군 대비 69.5%인 96개 시·군은 광대역 통합망 구축율이 90%이상을 나타냈음.
 - 정보통신 서비스 이행지수가 낮은 지역들은 남원시, 고흥군, 순창군, 나주시, 김제시, 고창군 등으로 전라남·북도의 시·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표 3-19. 시·도별 정보통신 부문이행지수 시·군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1	0	0	1
대구광역시	1	0	0	1
인천광역시	0	2	0	2
울산광역시	1	0	0	1
경기도	15	0	0	15
강원도	7	7	1	15
충청북도	0	4	7	11
충청남도	3	9	3	15
전라북도	0	3	10	13
전라남도	1	7	13	21
경상북도	4	12	7	23
경상남도	7	10	1	18
제주도	1	1	0	2
합계	41	55	42	138

그림 3-5. 정보통신 부문이행지수 분포



2.10. 2014년 종합이행지수 분석 결과

-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 산출 결과, 전체 시·군의 이행지수 값은 0.69이며 군지역이 0.67, 도농복합시는 0.71로, 도농복합시의 종합이행지수가 군지역보다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음(표 3-20).

표 3-20. 지역별 2014년 종합이행지수

	군지역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종합이행지수 (표준편차)	0.67(0.07)	0.71(0.08)	0.69(0.08)

- 2014년 종합지수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경기도 15개 시·군 중 13개가 상위 30%에 속하는 데 반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는 시·군 절반이 하위 30%속해 지역 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표 3-21).
- 종합이행지수가 높은 상위 10위권 지역은 순서대로 서귀포시, 양주시, 제주시, 증평군, 아산시, 천안시, 달성군, 칠곡군, 여주시, 광양시 등으로 경기도 2곳, 제주도 2곳, 충청북도 1곳, 충청남도 2곳, 대구광역시 1곳, 경상북도 1곳, 전라남도 1곳이었음.
- 반면 이행지수가 낮은 하위 10개 지역은 합천군, 군위군, 곡성군, 김제시, 고흥군, 순창군, 보은군, 신안군, 의성군, 철원군 등으로 전라도 지역의 군지역이 많았음.

표 3-21. 시·도별 종합이행지수 순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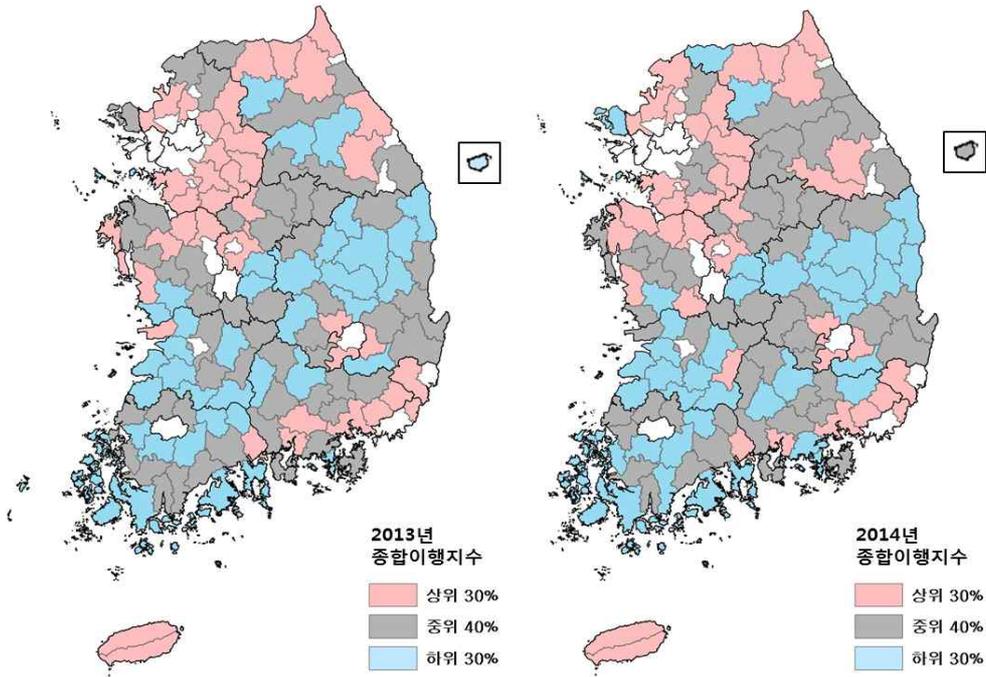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1	0	0	1
대구광역시	1	0	0	1
인천광역시	0	1	1	2
울산광역시	1	0	0	1
경기도	13	2	0	15
강원도	6	6	3	15
충청북도	3	6	2	11
충청남도	5	8	2	15
전라북도	1	4	8	13
전라남도	1	9	11	21
경상북도	2	9	12	23
경상남도	5	10	3	18
제주도	2	0	0	2
합계	41	55	42	138

- 2013-2014년 종합이행지수의 순위 변화를 보면 2013년 상위 30% 41개 시·군 중 34개, 중위 40% 55개 시·군 중 39개, 하위 30% 42개 시·군 중 33개 시·군이 2014년에도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군이 2013년과 비교할 때, 이행지수의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이행지수 분위가 상승한(중위→상위, 하위→중·상위) 시·군은 16개, 하락한(상위→중·하위, 중위→하위) 시·군은 16개임(표 3-22).
 - 분위가 상승한 시·군은 연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계룡시, 서천군, 장수군, 구례군, 함평군, 김천시, 영주시, 울릉군, 함양군임.
 - 세부적으로 하위→중위 지역은 횡성군, 평창군, 서천군, 구례군, 함평군, 김천시, 영주시, 울릉군, 함양군으로 총 9곳임. 중위→상위지역은 연천군, 영월군,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계룡시, 장수군으로 총 7곳임.
 - 분위가 하락한 시·군은 16개(강화군, 용인시, 광주시, 강릉시, 철원군, 예산군, 태안군, 군산시, 임실군, 장흥군, 무안군, 영덕군, 진주시, 밀양시, 고성군, 산청군)임.
 - 세부적으로 중위→하위 지역은 총 9곳(강화군, 철원군, 임실군, 장흥군, 무안군, 영덕군, 밀양시, 고성군, 산청군)이며, 상위→중위 지역은 총 7곳(용인시, 광주시, 강릉시, 예산군, 태안군, 군산시, 진주시)임.

표 3-22. 2013-2014년 종합이행지수의 시·군 분포 변화

		2014년 종합이행지수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2013년 종합이행지수	상위 30%	34	7	0	41
	중위 40%	7	39	9	55
	하위 30%	0	9	33	42
	합계	41	55	42	138

그림 3-6. 2013-2014년 종합이행지수 분포



○ 84개 군 중 10개(11.9%)는 종합이행지수의 순위 분위가 하락하고 10개 군 (11.9%)은 상승하였으며, 도농복합시는 6개(11.6%)가 상승하고 6개(13.9%)가 하락하였음. 전체 138개 시·군 중 76.8%인 106개 시·군은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였음(표 3-23).

표 3-23. 군과 도농통합시의 2013-2014년 종합이행지수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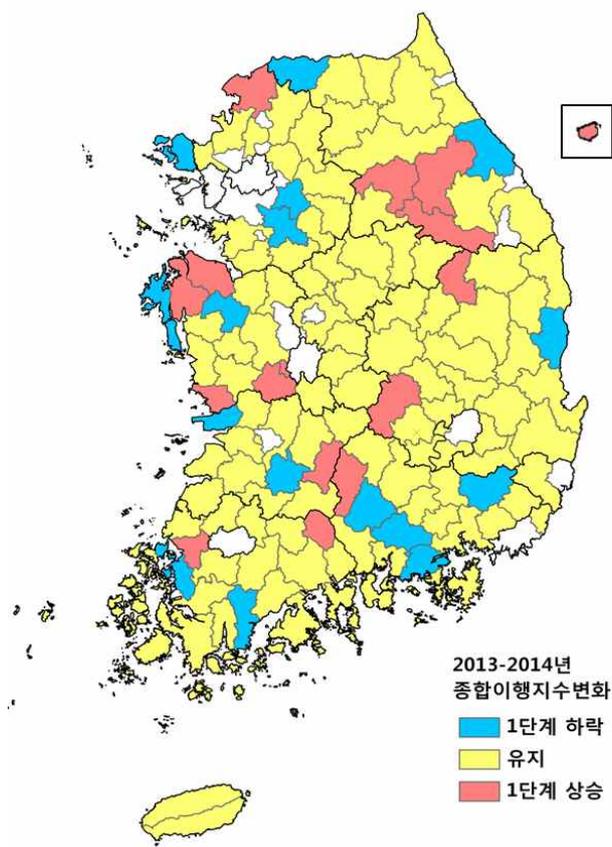
시·도	2013-2014년 종합이행지수 변화별 시·군 수					합계
	분위 하락			분위 상승		
	하위←상위	중위←상위 하위←중위	유지	중위→상위 하위→중위	하위→상위	
군지역	0	10	64	10	0	84
도농복합시	0	6	42	6	0	54
전체 농어촌 시·군	0	16	106	16	0	138

- 시·군별 종합이행지수 분포 변화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2013년 대비 분위 상승 지역이 많은 시·군은 충청남도가 5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강원도(3개), 경상북도(3개), 전라남도(2개)가 뒤를 이었음. 반면 분위 하락 시·군이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4개), 경기도(2개), 강원도(2개), 충청남도(2개), 전라북도(2개), 전라남도(2개) 순서로 나타났음(표 3-24, 그림 3-7).

표 3-24. 시·군 종합이행지수 변화의 시·도별 분포

시·도	2013-2014년 종합이행지수 변화별 시·군 수					합계
	분위 하락		유지	분위 상승		
	하위←상위	중위←상위 하위←중위		중위→상위 하위→중위	하위→상위	
부산광역시	0	0	1	0	0	1
대구광역시	0	0	1	0	0	1
인천광역시	0	1	1	0	0	2
울산광역시	0	0	1	0	0	1
경기도	0	2	12	1	0	15
강원도	0	2	10	3	0	15
충청북도	0	0	11	0	0	11
충청남도	0	2	8	5	0	15
전라북도	0	2	10	1	0	13
전라남도	0	2	17	2	0	21
경상북도	0	1	19	3	0	23
경상남도	0	4	13	1	0	18
제주도	0	0	2	0	0	2
합계	0	16	106	16	0	138

그림 3-7. 2013-2014년 종합이행지수 변화



3.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의 변화

- 2013년부터 이행지수는 이전과 달리 선형변환 방법을 이용하여 표준화하였음. 선형변환을 통해 산출된 이행지수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음.
 - 이행지수 1은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을 의미하며, 1이상은 초과달성, 0부터 1미만은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나타냄.
- 2013년 이행지수와 2014년 이행지수를 농어촌 전체 지역에서 비교해 보면, 보건·의료 부문의 의약품 구입 항목, 복지 부문의 아동항목, 문화 부문의 독서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서비스기준 이행지수가 상승하였으나, 이행지수 값의 변화 폭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표 3-25).
 - 비록 보건·의료 부문의 의약품 구입 항목, 복지 부문의 아동항목은 2013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013년과 2014년 모두 서비스기준 충족 값이 1에 가깝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6개 세부항목은 전년도 대비 이행지수에 변화가 없었으며, 3개의 세부항목은 이행지수가 감소하였고, 이를 제외한 세부항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기준을 초과 달성한 항목으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2013년, 2014년)과 광대역통합망 구축(2014년) 항목이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시·군별 이행실태를 종합하여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표 3-26>과 같음.
 -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종합이행지수 평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도의 경우 2013년, 2014년 종합이행지수 평균에서 1위 지역이었으며, 경기도가 그 뒤를 이음(2013년, 2014년).
 - 2013년 종합 이행 지수가 가장 낮았던 지역은 전라북도로 평균 0.60이었

으며, 2014년에도 전라북도가 0.63으로 가장 낮은 종합이행지수 수치를 나타냈음.

- 2014년 기준으로 시·도별 종합이행지수를 살펴보면, 제주도(0.89)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경기도(0.75)로 이어졌음. 반면, 전라북도(0.63), 전라남도(0.65), 경상북도(0.65), 경상남도(0.67)는 상대적으로 서비스기준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도는 상수도 보급(1.39), 하수도 보급(1.27), 초등학교 입지 읍·면 비율(1.0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2.59),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1.00), 방과후돌봄시설 설치 읍·면 비율(1.00), 영유아 보육 시설 설치 읍·면 비율(1.00), 5분내 소방 현장 도착 가능 건수 비율(1.29),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1.00), 광대역통합망 구축률(1.29) 항목에서 서비스기준을 충족 또는 초과달성하였음. 반면에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0.00), 인도설치 도로비율(0.26), 통학수단 제공 초등학교 비율(0.31)에서 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낮았음.
- 경기도는 최저주거기준(1.08),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1.34), 상수도 보급(1.01), 하수도 보급(1.13), 광대역통합망 구축률(1.36) 항목에서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응급서비스 항목(0.31)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수준을 나타냈음.
- 전라북도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2.03), 5분 내 소방 현장 도착 가능 건수 비율(1.06)에서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음. 나머지 항목의 편차는 크게 나타나는데, 평생교육 항목(0.14)과 인도설치 항목(0.21)에서 낮은 서비스기준 이행수준을 보였음.
- 전라남도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2.23) 항목과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1.00) 항목에서만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음. 나머지 항목 중 가장 낮은 서비스기준 달성도를 나타낸 항목은 인도설치 도로 비율(0.12) 항목이었음.
- 경상북도도 전라남·북도 지역과 동일하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2.33) 항목에서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음. 그 외에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1.00) 항목, 광대역 통합망구축률(1.02) 항목에서만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음.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항목 중, 이행지수 평균이 가장 낮은 항목은 전라남도과 마찬가지로 인도설치 도로 비율(0.16)이었음.

- 경상남도에서 서비스기준을 만족하는 항목은 하수도 보급(1.01),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2.22),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1.00),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1.18)이었음. 그 이외의 항목에서는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인도설치 도로 비율(0.23)의 서비스여건이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각 부문이행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서비스기준 충족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주거 부문은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와 제주도의 서비스기준 충족도가 양호하게 나왔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냈음.
 - 교통 부문의 경우 대중교통 항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비스기준 이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좋았으나, 인도설치 항목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음.
 - 교육 부문은 통학수단 항목, 평생교육 항목에서는 지역적 차이를 보였으나, 초등학교 입지 비율 항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항목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초등학교 입지 읍·면 비율 항목은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기준 달성에 매우 근접해 있거나 이미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초과 달성한 지역이 많았음.
 -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서비스기준에 매우 근접하거나, 이미 달성한 지역(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도 있었음.
 - 복지 부문의 경우, 제주도는 노인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서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지역의 경우 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 읍·면 비율(아동 항목)에서 가장 높은 서비스기준 달성률을 보였음.

- 응급 부문의 경우,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이행지수 평균을 나타냈으며, 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음. 하지만, 제주도, 강원도를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서 응급관련 서비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또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 서비스 여건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안전 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CCTV 항목의 서비스 여건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서비스기준 달성률을 보였으나, 이행지수는 0.46에 지나지 않음. 소방 항목의 경우 제주도는 2013년과 2014년에 서비스기준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도 2014년에 소방 항목 서비스기준을 초과 달성하였음. 그러나 경기도, 경상북도는 소방 항목 서비스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 문화 부문은 제주도와 경기도의 달성률이 비교적 양호하였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다른 부문과 달리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기준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5.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이행지수 변화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2013	2014	'13~'14 비교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0.82	0.82	—
	난방	도시가스 보급률	0.49	0.56	↗
	마을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비율	0.95	0.96	↗
		프로그램 지원 비율	0.46	0.49	↗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0.71	0.76	↗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0.93	0.95	↗
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0.68	0.68	—
	인도	인도설치 도로 비율	0.23	0.23	—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2013	2014	'13~'14 비교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읍·면 비율	0.96	0.96	—
	초·중교	통학수단 제공 초등학교 비율	0.60	0.65	↗
	방과후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1.84	2.00	↗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 설치 읍·면 비율	0.23	0.23	—
보건 의료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내 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	0.98	0.97	↘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0.49	0.49	—
	아동	방과후 돌봄시설 설치 읍·면 비율	0.95	0.94	↘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 읍·면 비율	0.67	0.69	↗
응급	응급 서비스	시·군별 30분내 현장 도착 가능 건 수 비율	0.32	0.33	↗
안전	방법설비	CCTV설치 행정리 비율	0.32	0.35	↗
	소방	시·군별 5분 내 현장 도착 가능 건수 비율	0.69	0.80	↗
문화	독서	도서 대출·열람 가능 읍·면 비율	0.43	0.42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수혜 읍·면 비율	0.38	0.39	↗
정보 통신	초고속망	광대역통합망 구축율	0.94	1.02	↗

주: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정체된 경우 —, 하락한 경우 ↘로 나타냄.

표 3-26. 2013-2014년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비교

부 문	항 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종합지수	0.76	0.75	0.67	0.69	0.67	0.70	0.69	0.72	0.60	0.63	0.62	0.65	0.61	0.65	0.66	0.67	0.87	0.89
1. 주 거	최저주거 기준	1.08	1.08	0.84	0.84	0.88	0.88	0.97	0.97	0.83	0.83	0.88	0.88	0.52	0.52	0.71	0.71	0.89	0.89
	도시가스	1.30	1.34	0.23	0.27	0.54	0.62	0.60	0.66	0.20	0.35	0.32	0.41	0.32	0.36	0.41	0.46	0.00	0.00
	유지 관리비	0.92	0.90	0.93	0.96	0.97	0.99	0.98	1.00	0.91	0.97	0.99	0.97	0.98	0.99	0.96	0.93	1.00	0.98
	프로그램 운영	0.49	0.41	0.58	0.59	0.51	0.60	0.49	0.52	0.16	0.40	0.33	0.36	0.36	0.44	0.66	0.65	0.89	0.90
	상수도 보급	0.93	1.01	0.71	0.73	0.66	0.68	0.50	0.57	0.87	0.89	0.57	0.64	0.68	0.74	0.69	0.72	1.39	1.39
	하수도 보급	1.08	1.13	1.02	1.05	0.99	1.02	0.86	0.88	0.92	0.92	0.85	0.86	0.78	0.82	1.00	1.01	1.24	1.27
2. 교 통	대중교통	0.87	0.87	0.65	0.65	0.65	0.65	0.76	0.77	0.78	0.78	0.65	0.65	0.52	0.53	0.62	0.62	0.78	0.78
	인도설치	0.40	0.41	0.24	0.21	0.24	0.27	0.27	0.34	0.24	0.21	0.17	0.12	0.11	0.16	0.29	0.23	0.23	0.26
3. 교 육	초등학교	0.93	0.90	0.94	0.92	0.97	1.00	0.98	1.00	0.98	0.98	0.95	0.97	0.94	0.94	0.98	0.99	1.00	1.00
	통학수단	0.42	0.46	0.42	0.46	0.83	0.86	0.61	0.67	0.89	0.91	0.58	0.67	0.62	0.70	0.64	0.67	0.13	0.31
	방과후 학교	1.04	0.86	1.21	1.51	2.10	2.27	1.98	2.06	1.90	2.03	1.96	2.23	2.11	2.33	2.14	2.22	2.02	2.59
	평생교육	0.46	0.47	0.26	0.26	0.24	0.24	0.21	0.21	0.14	0.14	0.16	0.16	0.19	0.19	0.18	0.18	0.44	0.44

부 문	항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4.	보건의료	의약품 구입	0.95	0.95	0.95	0.89	1.00	0.99	0.93	0.94	0.99	0.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	복지	노인	0.59	0.55	0.54	0.65	0.50	0.49	0.55	0.53	0.45	0.42	0.43	0.45	0.52	0.41	0.40	0.46	0.58	0.58
		아동	0.94	0.91	0.94	0.87	0.98	0.96	1.00	1.00	0.98	0.97	0.96	0.97	0.86	0.91	1.00	0.94	1.00	1.00
		영유아	0.93	0.94	0.81	0.81	0.69	0.69	0.73	0.78	0.54	0.54	0.62	0.62	0.57	0.58	0.55	0.53	1.00	1.00
6.	응급	응급	0.31	0.31	0.38	0.41	0.27	0.26	0.30	0.31	0.25	0.26	0.34	0.34	0.36	0.38	0.32	0.30	0.55	0.57
7.	안전	CCTV	0.38	0.41	0.36	0.38	0.45	0.42	0.33	0.36	0.29	0.42	0.18	0.21	0.37	0.43	0.23	0.24	0.65	0.46
		소방	0.40	0.44	0.76	0.82	0.86	1.06	0.93	1.13	0.89	1.06	0.82	0.95	0.38	0.49	0.59	0.60	1.17	1.29
8.	문화	도서대출	0.63	0.66	0.40	0.37	0.44	0.43	0.39	0.39	0.35	0.32	0.38	0.36	0.34	0.33	0.46	0.45	0.85	0.84
		문화 프로그램	0.59	0.67	0.39	0.47	0.50	0.47	0.35	0.38	0.33	0.29	0.40	0.36	0.33	0.32	0.19	0.22	1.00	1.00
9.	정보통신	광대역 통합망	1.32	1.36	1.13	1.19	0.71	0.80	1.00	1.09	0.46	0.52	0.73	0.80	0.91	1.02	1.09	1.18	1.28	1.29

4. 소결: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장에서는 20개 항목, 22개 평가 변수를 이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지수를 산출하였음. 이행지수는 각 항목별로 산출하며, 각 항목을 부문별로 다시 종합하여 부문이행지수를 구하며, 부문이행지수를 바탕으로 종합이행 지수를 구하였음.
- 서비스기준 이행지수는 2013년부터 산출 방법을 변경하여 서비스기준별 충족 값을 기준으로 한 선형변환을 이용하여 산출함. 산출된 이행지수 값이 1이면 서비스 기준 충족, 0~1이면 서비스기준 미 충족, 1 이상이면 서비스 기준을 초과 달성함을 의미함.
- 종합이행지수가 높은 곳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 지역들이었음. 종합이행지수 상위 30% 대부분 지역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음. 반면 하위 30%의 지역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과 관련해서 여전히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부문이행지수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주거, 교통, 복지, 안전, 문화지수,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도농복합시의 이행지수가 군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이들 부문은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에 상당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함.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고, 군지역에 비해 도시화로 인해 인프라가 보다 잘 구축되어 있는 도농복합시의 서비스기준 충족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인프라 구축이 미미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의 경우, 위 부문들의 서비스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시·군 수준의 노력으로는 부족할 것임. 이러한 지역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2013년 이행지수와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항목에서 서비스기준 이행지수의 변화 폭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 부분의 인도 항목, 교육 부분의 평생교육 항목은 2013년과 2014년에 모두 낮은 이행지수 값을 나타내 여전히 서비스 과소 충족 지역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응급 부문이행지수는 소폭 상승되었지만 이행지수 값 자체가 2013년도, 2014년도 모두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낮은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에서 서비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특히 농어촌 지역의 낮은 의료 접근성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 응급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냄.
- 문화 부분의 경우 또한 낮은 이행지수 값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큰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어 아직도 문화 관련 서비스가 부족한 시·군이 많으며 동시에 지역 간 차이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 부문 중 도서 대출이 가능한 읍·면의 비율은 도서 대출이 가능한 시설 및 도서가 먼저 갖추어져야 하지만,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서비스 공급 여건을 개선할 경우 서비스 향상이 가능한 사항임. 따라서 기반 시설 설치가 힘든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등으로 개선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서비스기준을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2013년 대비 농어촌서비스 달성 정도는 대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몇몇 부문의 낮은 서비스 이행 실태 및 지역적 격차를 개선시킬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행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20개 서비스기준 항목 중 9개를 제외한 항목¹⁹에서 모두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가 상승하였음.
- 그러나 각 지역별로 종합적인 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분석하면 지역 편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기준의 하위를 차지하는 지역(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이 2013년에도 같은 하위분위를 유지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농어촌서비스기준 하위 지역의 낙후된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및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비교 분석을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인도 항목, 평생교육 항목, 응급서비스 항목 등으로 나타남. 특히 응급서비스 항목은 표준편차가 가장 낮아, 대부분의 시·군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충족되지 않음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농어촌 전체 지역에 대한 정책과 함께, 한정된 자원을 서비스기준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분야에 대해 먼저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19) 주거부문 주택항목, 교통부문 대중교통항목, 교통부문 인도항목, 교육부문 초등학교 입학·면 비율 항목, 교육부문 평생교육 항목, 보건의료부문 의약품구입항목, 복지부문 노인항목, 복지부문 아동항목, 문화부문 독서항목.

제 4 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종합평가 및 개편 방향

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종합평가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의 실태와 성과 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관련 조사를 실시해옴(표 4-1).

표 4-1. 연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문제점 분석 및 조사 내용

연도	주요 내용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 2011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 31개 항목 반영 현황 분석 - 제2기 지자체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반영 현황 분석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시·군의 기획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 및 현장 적합성 조사 - 농어촌 주민 622명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중요도, 향후 서비스 수요 조사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 조사 -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전문가 30명 대상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1.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계획 수용성 평가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기 삶의 질 향상계획에 세부추진과제의 사업내용이나 성과목표 반영 정도는 매우 미약함.
 - 2011년도의 31개 기준항목 중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제로 직접 반영된 것은 5개 항목에 불과.
 - 세부추진과제 내용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14개 기준항목에 그침. 나머지 7개 기준항목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못함.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반영된 정도 또한 매우 미약함.
 - 2011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125개 세부추진과제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31개 기준항목 중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세부추진과제로 직접 반영된 것은 4개 항목에 불과.
 - 세부추진과제 내용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17개 기준항목에 그침. 나머지 5개 기준항목은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못함.

1.1.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 평가²⁰⁾

-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평가점수 8점 이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된 서비스 기준 항목은 주거, 교육, 복지, 보건의료 총 4개 부문 5개 항목으로 나타남(표 4-2).

20) 138개 농어촌 시·군의 기획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항목 별 10점 만점으로 평가·조사.

- 반면,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에서 공통적으로 6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주거, 교통, 응급 총 3개 부문 3개 항목으로 나타남.
- 현장 적합성은 시·도 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임. 제주도의 경우 난방 항목만이 6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전체 제시된 42개 항목 중 절반이 넘는 26개 항목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됨.

표 4-2.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부문	매우 적합(8점 이상)	매우 부적합(6점 미만)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 상수도: 지자체 수질관리 면지역 상수도 보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신재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
교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1일 1회 이상 왕복 운행 도서주민 운임 지원 ▪ 대중교통: 준공공 교통프로그램(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우수고교 육성 ▪ 폐교: 폐교시 주민의견 수렴(시) ▪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시) 	-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서비스 	-
보건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서비스: 1차 진료 가능 ▪ 순회방문: 월 1회 순회방문(시) ▪ 의약품구매: 20분 내 구입(시) 	-
응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주: (시)는 도농복합시에만, (군)은 군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괄호가 없는 항목은 두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을 의미.

자료: 김광선 등, 2012.

1.1.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가능성 평가²¹⁾

- 도농복합시와 군에서 공통적으로 주거부문의 공동시설, 상수도 두 항목만이

21) 138개 농어촌 시·군의 기획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를 제 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료시기인 2014년까지 달성 가능한지 10점 만점으로 평가·조사.

8점 이상으로 달성가능하다고 평가됨. 대부분의 기준항목은 2014년까지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됨(표 4-3).

- 도농복합시와 군 공통으로 6점 미만의 낮은 달성 가능성 평가 결과가 도출된 항목은 여객선, 난방, 도서·벽지 응급, 대중교통 등으로, 이는 현장 적합성 평가 시 낮게 평가된 항목과 거의 일치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에 대한 시·도별 평가 역시 큰 차이를 보여, 제주도의 경우 6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은 기준항목이 전무한 반면, 강원도 내 시·군들의 경우 제시된 42개 세부기준 중 27개 세부기준에 대해 달성 가능성을 6점 미만으로 평가함.

표 4-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

부문	달성 가능(8점 이상)	달성 어려움(6점 미만)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 주택: 최저주거기준(시) ▪ 공동시설: 프로그램운영(시) ▪ 상수도: 지자체 수질관리 면지역 상수도보급(시) ▪ 하수도: 하수도보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신재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
교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 대중교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우수고교 육성(시) ▪ 영유아: 20분 내 보육시설(시) 	-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서비스(시)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월 1회 이상 관람(시) 분기 1회 전문공연(시) 	-
응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주: (시)는 도농복합시에만, (군)은 군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괄호가 없는 항목은 두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을 의미.

자료: 김광선 등, 2012.

1.1.4.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평가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서비스기준 부문 중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주거를 1순위로 꼽은 응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주민의 비중이 18.7% 낮게 나타남.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라 도보 15분 거리 내에서 1일 3회 이상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행정리)의 비중이 90.4%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행횟수 부족이 농어촌주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남.
- 농어촌의 교육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비중은 22.8%에 불과하며 먼 통학거리가 주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됨.
-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해 병원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비중은 18.1%에 그쳤으며 병원 이용 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의료인력의 질, 낙후된 의료시설, 의료기관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집중해야 할 대상으로 노인층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3.6%), 영유아 및 아동이 2순위로 높게 나타남.
- 응급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주민 비중이 25.7%로 나타난 가운데, 구급차의 지연 도착, 응급의료센터의 부재 순으로는 불만응답이 높게 나타남.
- 소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27.7%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불만으로는 마을 내 소화전이나 소화기의 부족, 두 번째는 소방차의 지연 도착으로 나타남.

- 범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 농어촌 주민의 59.3%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조사 대상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지난 1년 간 도난이나 대인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39.7%에 이릅니다.
- 문화·여가 활동 증진부문은 관련 시설이 없거나 너무 멀리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9부문에 대하여 농어촌 주민들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전문가들은 주거, 응급, 보건의료, 교육, 복지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1.1.5.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의한 삶의 질 향상 체감도 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0년도와 2013년을 비교해 기준 항목별 서비스 개선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대중교통’이며, 반대로 가장 악화된 항목은 ‘난방’인 것으로 나타남(표 4-4).
 - 서비스 개선 정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대중교통에 이어 초고속망, 독서, 방과후학교, 인도,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응급서비스, 유치원·초·중학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이 개선 정도 상위 10위에 포함됨.
 - 서비스가 오히려 악화된 항목으로는 난방 외에도 경찰 순찰, 방범설비, 순회방문, 폐교,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경찰 출동, 다문화가족, 인도,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항목이 악화 정도 상위 10위에 포함됨.
- 서비스 수준 체감도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이행직전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농어촌주민의 개선 응답 비중이 악화 보다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개선’ 응답 비중이 50%를 넘는 기준 항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전문가조사 결과 56.7%가 ‘향상된 편이다’, 40.0%가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응답함. ‘매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무하였음.
- 그러나 전문가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상위 10개 기준항목 중 6항목은 주민들이 20위 이하로 저평가하여 기준 항목별 전문가와 농어촌주민의 개선 체감도는 상이하게 나타남.

표 4-4. 농어촌 주민들의 과거 3년 전과 비교한 기준항목별 개선 체감도 평가
단위: %, 순위

부문	항목	악화	비슷	개선	악화 순위	개선 순위
주거	주택	6.6	64.0	29.4	31	19
	난방	18.3	49.6	32.1	1	17
	마을공동시설	8.6	51.4	40.0	21	6
	상수도	8.9	51.7	39.4	16	7
	하수도	8.3	58.7	33.0	23	14
교통	대중교통	9.3	45.6	45.1	15	1
	여객선	8.6	63.4	28.0	20	21
	인도	10.4	49.1	40.4	9	5
교육	유치원·초등학교	8.6	53.3	38.1	22	9
	고등학교	8.1	61.4	30.4	24	18
	폐교	13.3	65.4	21.3	5	31
	방과후학교	6.1	52.6	41.3	32	4
	의견수렴	7.9	62.9	29.3	25	20
	평생교육	8.7	56.7	34.6	18	12
보건의료	진료 서비스	10.1	62.0	27.9	12	22
	순회방문	13.7	67.0	19.3	4	32
	의약품 구입	6.9	60.1	33.0	30	15
복지	노인	7.9	59.7	32.4	26	16
	청소년	9.9	65.0	25.1	14	27
	아동	10.3	64.0	25.7	11	25
	영유아	6.9	59.0	34.1	29	13
	다문화 가족	10.7	62.6	26.7	8	23
응급	응급서비스	7.6	54.1	38.3	27	8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10.4	64.0	25.6	10	26

부문	항목	악화	비슷	개선	악화 순위	개선 순위
안전	경찰 순찰	14.7	61.0	24.3	2	29
	방법설비	14.3	50.3	35.4	3	11
	경찰 출동	11.9	64.9	23.3	7	30
	소방 출동	8.9	66.3	24.9	17	28
문화	독서	8.7	49.6	41.7	19	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10.1	53.0	36.9	13	10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13.1	60.6	26.3	6	24
정보통신	초고속망	7.6	49.4	43.0	28	2

주: '개선'은 3년 전에 비해 '매우 개선되었다'와 '다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합한 응답 비중이며, '악화'는 '매우 악화되었다'와 '다소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합한 응답 비중임.

1.1.6.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농어촌지역주민 정책 수요

- 농어촌 주민들은 주택의 질, 난방비, 위험도로 구간에 인도 설치, 노인 서비스,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순서대로 향후 가장 중요한 기준항목으로 평가하였음(표 4-5).

표 4-5. 농어촌 주민이 꼽은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상위 5개)

구분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군	주택의 질,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도농 복합시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체 농어촌 시·군	주택의 질,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공동 5위)

자료: 김광선 등, 2012.

-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구인·구직서비스'(26.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1.1.7.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전문가 정책 수요

- 전문가 조사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전문가 조사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현재처럼 5년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목표로도 함께 제시하며(이상 중앙정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발전목표나 지역 현실을 감안한 5년 중기목표로 (시·군 삶의 질 향상 계획 등에) 함께 제시하는 3 TRACK 접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현재처럼 5년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목표로도 함께 제시하는 2 TRACK 접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30.0%로 나타남.
- 삶의 질 향상 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부처별로 향후 5년 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각 기준 항목별로 동 기본계획에 담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총리실에) 제출’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익년도 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총리실에) 제출’하는 방안도 36.7%가 채택함.
- 중·장기적으로 지자체들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 현재 지자체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에 관심이 부족한 것은 별도 예

산 지원 없이 권고사항으로만 추진되고 있기 때문임.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방안보다는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지역별 상황은 매우 다르므로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국가적 농어촌서비스 기준 항목은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남(전문가 90.0%가 동의).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실현되는 농어촌 현장인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기획·예산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전문가 조사 결과 53.3% 선택).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체계 평가

1.2.1. 전문가 평가 결과

- 제도운영체계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각 이슈마다 가장 높게 나타난 응답군은 ‘대체로 동의함’으로 나타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의 운영 체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됨(표 4-6).

표 4-6.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

단위: %

주요 이슈	전혀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 겠음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여러 목표치가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3.3	30.0	26.7	40.0	0.0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이 너무 많아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3.3	20.0	26.7	43.3	6.7
관련 중앙 부처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	3.3	10.0	13.3	43.3	30.0
각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	0.0	26.7	10.0	40.0	23.3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과 삶의 질 향상 계획 시행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0.0	13.3	30.0	36.7	20.0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협력이 부족하다.	0.0	3.3	3.3	46.7	46.7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협력이 부족하다.	0.0	3.3	6.7	50.0	40.0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다수 항목이 공식 통계 부재 등으로 이행실태(달성정도) 점검·평가가 곤란하다.	3.3	0.0	26.7	46.7	23.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달성정도) 점검·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다.	3.3	3.3	26.7	53.3	13.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대 국민 또는 농어촌주민 홍보가 부족하다.	3.3	0.0	20.0	50.0	26.7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부재하다.	0.0	6.7	26.7	46.7	20.0

- 70%이상의 부정적 평가 비율이 나타난 이슈들은 ‘관련 중앙 부처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77.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협력이 부족하다(93.4%)’,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협력이 부족하다(90%)’,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다수 항목이 공식 통계 부재 등으로 이행실태(달성정도) 점검·평가가 곤란하다(70%)’,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대 국민 또는 농어촌주민 홍보가 부족하다(76.7%)’로 나타남.

1.2.2. 개선 필요사항

-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이 너무 많아 모든 항목을 달성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국가적 최소 기준으로 제시해야 함.
- 이행실태가 저조한 기준 항목이나 지역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별도의 정책사업이 관계 부처로부터 발굴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임. 농어촌서비스 기준 달성을 위한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다수 항목의 공식통계가 부재하여 이행실태 점검자체가 곤란한 실정임. 또한 점검 결과에 대한 활용도도 낮은 상황임.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임.
 - 조사에 응한 30명의 전문가 중 19명(63.3%)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시행 목적,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10명(33.3%)은 시행 목적과 내용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주민 대상 조사에 응한 700명의 농어촌 주민 중 44.7%는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22.7%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장기 플랜이 부재함. 중·장기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과 삶의 질 향상 계획 시행이 제대로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전문가 의견이 56.7%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계획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 개편 방향

2.1. 개편안 마련의 주요 과정과 방법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계획 수용성, 현장 적합성, 달성 가능성, 주민 만족도, 주민 수요, 전문가 평가 등의 조사 결과('11~'13년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1차 개편안 마련.
- 1차 개편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2차 개편안 도출).
- 제3차 삶의 질 향상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TF 전문가들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개편안 검토 및 의견 수렴(3차 개편안 도출).
 - 이 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 도출에 대한 의견 수렴.
-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 내용 및 기준 운용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4차 개편안 도출).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출안 마련(5차 개편안,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출안).

2.2.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의 주요 방향 설정

2.2.1. 핵심항목과 선택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운용

- 핵심항목은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모든 농어촌 시·군이 적용하는 '국가 최소 기준'으로 운용.

-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국가적인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아울러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2015-19) 동안 달성할 중기 목표도 함께 제시.
- 선택항목은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과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용.
 - 선택항목 예시를 포함한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가이드라인 제공.
- 핵심항목의 수는 대폭 감소시키고, 대신 선택항목을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운용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2.2.2. 삶의 질 향상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농어촌서비스기준 간 부문 구성 매칭.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개 부문 구성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동일 적용.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 계획의 핵심 성과지표로 활용.
 - 관련 사업 및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보완하여 기준 달성 지원.

2.2.3.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기반 제공 및 평가·포상 체계 마련

- 농어촌 시·군의 다양한 현실과 발전 전략을 고려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유도를 위해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 제공.
 -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과 항목·내용 구성, 기준 운용 방식, 조직 운용,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지침 제공.

- 기준 목표달성 정도의 주기적 평가.
 - 관계부처별 관련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목표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발표.
 - 핵심항목 중 일부를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로 활용.
- 기준 목표달성을 위한 시·군의 노력에 대한 보상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시·군 자율편성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2.2.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와 농어촌 지역정책과의 연계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활용한 낙후지역 지원정책 추진.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낙후 농어촌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초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활용한 지역별 맞춤형 기초 공공서비스 확충 지원.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농어촌 시·군별로 특히 취약한 기초 공공서비스분야를 우선 지원.

2.2.5.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활용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분야별 국책연구원, 시·도 발전연구원 간 협력을 통해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및 운용 지원.
 - 각 국책연구원 및 시·도발전연구원과 함께 농어촌 시·군별 선택항목을 설정하고, 핵심항목을 포함한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과 운용 지원.
- 전문지원기관 및 시·도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 이행실태 점검·평가 매뉴얼 개발 및 시·군별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제 5 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및 제도 운영 방안

1.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1.1. 농어촌서비스기준 국가 공통 핵심항목 구성안

1.1.1. 핵심항목 구성안

- 국가 최소 기준으로서 7개 부문 17개 핵심항목 구성.
 - 보건·복지(4):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
 - 교육(2): 초등·중학교, 평생교육
 - 정주생활기반(5):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광대역통합망
 - 경제활동·일자리(1):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 문화·여가(1):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환경·경관(1): 하수도
 - 안전(3): 방범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국가적 목표로서 ‘국가최소기준’인 핵심항목을 제

시하고 제3차 삶의 질 향상계획 기간(2015-19) 내에 달성해야 할 중기 목표를 함께 제시.

표 5-1. 국가 최소 기준으로서 7개 부문 17개 핵심항목 구성안

부문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Base line(%)	'19년 목표(%)
1. 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76.8	80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1.8	97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4.1	80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71.0	80
2. 교육여건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98.1	100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21.1	40
3. 정주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88.3	95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62.9	82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50.8	70
	10)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90.4	100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77.3	90
4.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00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92.0	100
6. 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9.4	85
7. 안전 (생활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32.7	60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0	100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45.4	55

표 5-2.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핵심항목의 이행실태 점검방법

부문	핵심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보건 복지	1) 진료서비스	(일반 병의원, 한방병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i) 전국사업체조사(읍·면단위 제공)	공식통계
			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공식통계
	2) 응급서비스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방재청: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협조자료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물리치료	행정조사
3)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수)}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용현황 포함)	공식통계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행정조사	
4) 영유아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i) 행자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데이터) ii) 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공식통계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협조자료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협조자료
	6) 평생교육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협조자료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통계청 협조자료	협조자료
	8)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현황	공식통계
	9) 난방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현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자료
	10)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공식통계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행정조사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수 / 총 가구 수) × 100	방송통신위원회: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협조자료	
4. 경제 활동·일자리	12)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별 관련 서비스센터 운영 및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행정조사

부문	핵심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협조자료
		(공연프로그램 공연 횟수 + 전시프로그램 전시 일수) / 12 *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협조자료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협조자료
6. 환경·경관	14) 하수도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시·군별 인구 수) × 100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공식통계
7. 안전 (생활안전)	15) 방법설비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경찰청: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협조자료
	16) 경찰 출동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1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경찰청: 시·군별 CODE 1 건별 출동소요시간	협조자료
	17) 소방 출동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방재청: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협조자료

1.1.2. 핵심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의 17개 핵심항목은 내용 상 22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 가능.

- 교육 부문 초·중학교 항목의 경우 ① 운영 중인 초·중학교가 있는 읍·면 수 비율, ② 운영 중인 읍·면지역 학교 중 스쿨버스 등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편을 제공하는 학교 비중의 2가지 세부기준으로 구분.
- 정주생활기반 부문 난방 항목의 경우 ①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②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마을의 비율 등 2가지 세부기준으로 구분.
- 정주생활기반 부문 대중교통 항목의 경우 ① 도보15분거리 이내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 행정리 비율, ②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2가지 세부기준으로 구분.

- 문화·여가 부문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의 경우 ① 자동차로 30분 내 (시·군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시·군 비율, ② 시·군 내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시·군 내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세부기준으로 구분.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의 17개 핵심항목, 22개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25개의 점검통계 구축 필요.
 - 7개의 공식통계, 14개의 관계부처 내부 협조자료, 4개의 행정조사자료.
 -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지자체 자율 선택항목 예시

- 7개 부문에 대해 24개 기준 항목을 선택항목(지자체 관리 항목)으로서 지자체에 예시.
 - 선택항목은 예시일 뿐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현실성과 향후 지역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선택항목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관리.
- 선택항목 제정 시 이행실태의 점검 방법과 구체적인 수단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행실태 점검 가능성).

표 5-3. 농어촌서비스기준 지자체 자율 선택항목 예시

부문	선택항목(예시)	세부 내용(예시)
1. 보건복지	1) 순회방문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의 80% 이상의 마을에서 월 1회 이상 운동·영양·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변화를 돕는 전문팀의 순회방문을 받을 수 있다.
	2) 알코올중독 예방 및 상담	모든 시·군에서 음주문화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며 알코올중독자의 단주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부문	선택항목(예시)	세부 내용(예시)	
	3) 청소년	모든 시·군에 학대 및 성폭력 등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센터 및 그룹홈을 1개소 이상씩 확충 한다. 모든 시·군에 학교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모든 읍·면에 사회복지담당을 2명 이상 배치한다.	
	5) 자살예방	노인 자살시도 발생시 1년 동안 주1회 사례관리를 방문하여 실시한다.	
	6) 정신건강	모든 시·군에 정신보건센터를 1개소 설치·운영한다.	
	2. 교육여건	7)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8) 방과후학교	농어촌 학교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면지역 방과후학교 강사에 교통비를 지급한다.
9) 교사임용		학교·지역단위 임용제를 통한 교원 임용을 확대한다.	
10) 교사배치		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행정 보조인력을 1명씩 배치한다.	
11) 평생교육		(농어촌 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문맹자에게 면단위 문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정주생활 기반		12) 석면 슬레이트	농어촌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전면 개량한다. * '13.12월 기준(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 대비
	13) 공동목욕탕	읍·면별로 공동목욕탕을 운영한다.	
	14) 도서지역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5. 경제활동·일자리	15) 지역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읍·면별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공급 및 매개하는 일자리를 1인 이상 배치·운영한다.
16)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지원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5가지 이상 운영한다.	
17) 귀농·귀촌인 창업 지원 및 구인구직 서비스		시·군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18) 농산어촌 산업 융복합화를 위한 기업인 포럼		시·군 내외의 기업인들끼리 정보 제공 및 융복합화를 시도하는 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포럼을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	
4. 문화·여가	19) 문화향유	전문 문화시설(예: 문예회관, 미술관, 소극장)에서 개최되는 문화 프로그램에 월 1회 이상 참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및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20) 생활체육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1) 영화관람	모든 시·군에서 언제나 최신 개봉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22) 문화여가 인력	모든 읍·면에 문화여가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 주민수요에 맞는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6. 환경·경관	23) 생활쓰레기 수거	모든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진다.	
7. 안전 (생활안전)	24) 경찰순찰	읍·면별로 파출소를 설치·운영하며, 범죄취약마을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방안

2.1. 삶의 질 향상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자체 차원의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일부만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과 사업 예산의 뒷받침 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각 부문별 사업이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의 목표달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 촉진을 위해 핵심항목(중앙정부 관리 항목)을 부문별 성과 지표로 활용하여 지자체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이행실태 점검 결과(전년 대비 향상 정도)를 익년도 지자체 예산에 반영.
 -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평가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 증대 및 관련 예산사업과의 연계 추진 유도.

- *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지자체 관리 항목)의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평가의 가산점으로 활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매년 핵심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 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언론을 통해 발표.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달성 촉진을 위해 향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용.

표 5-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핵심항목과 삶의 질 향상 계획 관련 사업 연계방안
단위: 백만 원

부문	핵심항목	관련사업	사업주체	사업 명(예산년도)	예산(액)	
					직접	간접
1. 보건 복지	1) 진료 서비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14년)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차량 등 기능보강 지원 목적)	59,300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강화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사업('15년)	66,977	-
		분만취약지 지원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15년)	5,525	-
	2) 응급 서비스	응급의료 취약지 서비스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15년)	-	29,393
	3) 노인	농어촌 노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일상생활지원)	보건복지부	독거노인보호강화 사업('14년)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14년)	1,281	- 118,162
4) 영유아				-	-	
2. 교육	5) 초·중학교	농어촌 학교 육성	지방교육청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15년)	-	-
		통학환경 개선	교육부	장애아교육지원 - 통학비 지원('15년)	422	-
6) 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정 및 지원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 행복학습센터 운영('15년)	1,896	-	
3. 생활권 기반	7) 주택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사업 빈집정비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15년)	55,000	-
	8) 상수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환경부	농어촌 포함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15년)	305,200	-
			환경부	음용 지하수 수질 조사('15년)	3,100	-
		농림축산 식품부, 국토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15년)	-	2,000	
	9) 난방	신재생에너지보급	산업통상 자원부	2020년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13년)	-	42,900
		마을 에너지 복지	산업통상 자원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농어촌마을단위 지원사업)('15년)	3,300	-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도시가스공급배관 용자사업('15년)	-	75,000
	10) 대중교통	대중교통 취약지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교통오지 소형공항 건설사업 (울릉도·흑산도)('15년)	3,500	-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발굴 사업('15년)	1,500	-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구축	미래창조 과학부	농어촌 BcN 구축 사업('15년)	6,910	-

부문	핵심항목	관련사업	사업주체	사업 명(예산년도)	예산(액)	
					직접	간접
4. 경제 활동· 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육성사업('15년)	-	9,207
			농림축산 식품부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사업('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15,000	-
			농림축산 식품부	6차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15년)	-	3,325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15년)	-	26,571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15년)	-	1,615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귀농귀촌종합센터운영('15년)	1,000	-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 -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14년)	2,680	-
5.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 그램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15년)	3,850	-
		지역문화지표 조사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실태조사('15년) (*지역 별 문화여건 비교·분석)	60	-
		작은 영화관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농어촌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15년)	3,800	-
6. 환경· 경관	14) 하수도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환경부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 면단위하수도('15년)	74,400	-
			환경부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 농어촌하수도 사업('15년)	273,300	-
		노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환경부	노후 하수관로 정밀 진단 조사 지원('15년)	31,300	-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CCTV 통합관제센터 건축사업	안전행정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15년)	13,299	-
	16) 경찰출동	-	-	-	-	-
	17) 소방출동	소방 헬기 지원 사업	소방방재청	소방 헬기 구매(격납고 신설) * ('16)12개소 조성, 30분 이내 출동체계 구축	23,200	-

2.2.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기반 제공 및 평가·포상체계 마련

2.2.1.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자율항목(선택항목)을 포함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구성과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 구성 방법, 이행 방법, 조직 운용 등에 대해 제시.
 - 지역실정, 주민수요, 지역발전전략 등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구성 및 운용에 있어 지자체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
 - 지자체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전략적 활용 촉구.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관련 정책사업 및 예산의 연계활용 촉구.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진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촉구.
-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되, 지자체의 삶의 질 향상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 첫째,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중앙정부 관리 항목)을 포함한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및 주민 이용 현황.
 - 둘째,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 실태.
 - 셋째, 지자체의 지역발전 비전 및 삶의 질 향상 비전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공급 중기 목표.
 - 넷째,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구성(핵심항목 및 선택항목) 및 중기(5년) 달성목표 설정.

- 다섯째,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관련 정책 사업 연계 추진계획 포함) 및 투융자계획.
- 향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과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발전연구원 간 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 필요.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이 시행되는 2015년에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가칭)‘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이후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에 대한 지자체별(도별) 설명회 실시.

2.2.2.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표준조례(안) 제시

-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을 유도·촉구하는 방안으로서 지자체별 (가칭)‘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것임.
 -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칭)‘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가칭)‘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표준조례(안)으로 제시.

〈00시/군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종합·체계적인 개발촉진으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열악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농간 공공서비스 격차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 따른 읍·면의 지역과 그 밖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13.8.5.>
2. “농어업”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3. “농어업인등”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4.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 2013.9.10.], 그 외의 동 조례에 의거하여 ○○시/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군수의 책무) ① ○○시장/군수는 ○○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군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군수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내용이 해당 시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수립·시행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

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
 2.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복지 수준과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
 5.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 ① ○○시장/군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2.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3.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복지 부문, 교육 부문, 생활권 기반 부문,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문화·여가 부문, 환경·경관 부문, 안전 부문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가 포함되도록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 ②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는 지역실정 및 주민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
- ③ ○○시/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개정할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시/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군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본 조례의 [별표] ‘○○시/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고시한다.

제6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항의 내용과 같다.

1. 농어업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보건·복지 부문)
2. 귀농귀촌, 교육 등 농어촌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교육 부문)
3. 농어업인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업(생활권 기반 부문)
4.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소득창출 사업(경제활동·일자리 부문)
5. 농어촌 유무형 자원 활용, 공동 문화조성 사업(문화·여가 부문)
6. 농어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업(환경·경관 부문)

7.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위험 방지와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안전 부문)
8. 그 밖에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군수는 ○○시/군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은 「000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시/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개정 및 운영지원을 위해 총괄·조정·심의, 목표달성의 점검·평가 등을 위한 협의체로서 ○○시/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의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은 ○○시/군의 각 실·과·소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농어업인·주민 또는 농어업 관련단체의 대표자,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의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이나 간사 운용 등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심의 및 점검·평가한다.

1. 제4조의 실태조사
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용과 관련된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개정안 심의
4.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대한 총괄·조정

5.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 정도의 주기적인 점검·평가 및 결과에 대한 주민 공지
6.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을 위한 시/군 시책 개선 및 추진 등에 대한 권고
7. 그 밖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위원회 행정지원) ① ○○시/군 행정조직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획·예산 부서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시/군 행정조직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부서에 자료요청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시/군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시/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5조 관련)

2.2.3. 정부합동평가인 시·군종합평가의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심 저하 문제 발생.
- 각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시·군종합평가 분야 중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분야의 핵심 평가지표로 관련된 일부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을 활용.

- 핵심 항목 중 10개 내외의 항목을 평가지표에 포함.

2.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와 농어촌 지역정책과의 연계

2.3.1. 낙후지역 삶의 질 향상 촉진제도 도입

-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낙후지역 삶의 질 향상 촉진제도’ 도입.
 - 단기적으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 하위 30%에 속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받아 선정 후 시범사업으로 추진.
 -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추가지원에 그쳤던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체감 증대’를 목표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 촉진 지원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 (가칭)‘낙후지역 삶의 질 향상 촉진제도’를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지역행복생활권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 농어촌 시·군이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 정도가 낮은 분야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을 연계.
 - 2015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낙후 농촌에 기초기반시설(LPG 에너지시설 등), 위생·환경, 안전, 주민 편의·복지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집중 지원.

2.3.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촉진 협약제도 도입

- 농어촌 시·군별로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이행실태도 저조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이행과 이에 대한 정부의 사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정부/지자체 간 (가칭)‘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촉진 협약제도’ 도입.
 - 지자체에서는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선정한 공공서비스 분야(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5개년 개선계획을 해당 시·군 삶의 질 향상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해당 공공서비스 분야 개선계획을 평가 후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와 (가칭)‘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촉진 협약’ 체결.
 - 선정된 농어촌 시·군에서 수립한 해당 공공서비스 분야 개선계획의 달성 정도에 따라 정부에서 관련 비용의 일정 부분을 사후 지원.
- 이 외에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에 대한 개선 정도가 우수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입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기여한 담당 공무원을 표창하는 방안 고려.

2.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활용

- 지자체(농어촌 시·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즉 (가칭)‘삶의 질 향상 정책 점검·평가단’ 활용.
 - 삶의 질 향상위원회 전문지원기관(지원센터), 주요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 발전연구원, 기타 대학교수 및 지역전문가 등 참여.
 - 협력기관 간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과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을 위한 매뉴얼 공동 제작.

- 시·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설명회 및 공청회 추진.
- 지자체(농어촌 시·군)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및 운용조직 구성 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활용.
 - 시·도 및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지원센터)와 시·도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시·도별,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의 공고 및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 (가칭)‘삶의 질 향상 정책 주민 모니터링단’ 운용
 - KREI 리포터와 같은 농어촌 주민 패널을 구축하고, 이들을 활용한 주기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만족도·체감도 조사, 삶의 질 체감도 조사 등 실시.
 - 주민들이 느끼는 기초 공공서비스 분야 및 삶의 질 분야 애로점과 정책 수요 조사.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삶의 질 향상 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및 의견 수렴.

부록 1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방안 및 통계

	부문	항목 / 세부기준	점검 방법 및 통계	
신설 및 보완 기준	교육	유치원/ 초·중학교	세부1	
				- 초등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교육부> : 읍·면별 초등학교 현황
		세부2	-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초등학교 수 / 총 초등학교 수 - <교육부> : 유치원·초·중학교 통학차량 지원 학교 현황	
			폐교	-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폐교 수 / 폐교 수) × 100 * 점검 직전 년도 폐교에 대하여 검토 - <교육부> : 폐교 현황 및 폐교별 주민 의견 수렴 현황, 폐교 활용 현황
	보건 의료	진료 서비스		- 주요 과목 진료 가능 여부 점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군별 내과, 한방, 치과,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 산부인과(분만 가능 여부), 물리치료실 현황
		순회방문		-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이 이루어진 의료 접근성 낮은 행정리 수 / 의료 접근성이 낮은 행정리 × 100 - <지자체 행정조사> :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 현황, 순회 방문을 실시하는 마을 및 방문 빈도
복지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취약계층 수 × 100 * 취약계층: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등급, 등급외, 탈락 합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3), 등급외(A~C), 탈락자 현황, 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현황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지자체 행정조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현황	

	부문	항목 / 세부기준	점검 방법 및 통계	
현행 유지 기준	안전	경찰 순찰	- 범죄취약마을 1일 1회 순찰 여부 확인을 통해 본 기준 이행실태 확인 - <경찰청> : 행정리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 각 지구대 및 경찰서별 일일 순찰계획(행정리 단위)	
		방법 설비	세부1	-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경찰청> : 행정리별, 용도별 CCTV 설치 현황
			세부2	- (CCTV 설치 향포구 수 / 총 향포구 수) × 100 - <해양경찰청> : 전국 해안지역 향포구별 CCTV 설치 현황
	주거	주택	-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 <통계개발원> :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현황	
		난방	세부1	-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 <도시가스협회> :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세부2	- [목재펠릿보일러 및 그린홈100만호사업 대상 가구 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 <산림청>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보급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 그린홈100만호사업 현황
		마을 공동시설	세부1	-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행정리 수 /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한 개소 이상 있는 행정리 수) × 100 - <지자체 행정조사> :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세부2	- (마을회관 및 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수 /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한 개소 이상 있는 행정리 수) × 100 - <지자체 행정조사> :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상설프로그램 지원 현황
		상수도	세부1	-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 인구) × 100 : 광역 및 지방 상수도보급률 - <환경부> : 상수도통계연보
			세부2	- 지자체 먹는 물 수질 관리 법적 의무사항에 따라 매년 수질검사 및 관리를 받은 시설들을 점검. - <환경부> : 소규모수도시설 수질현황

부문	항목 / 세부기준	점검 방법 및 통계
	하수도	- (시·군별 공공하수처리인구 수 / 시·군별 총 인구) × 100 - <환경부> : 하수도통계연보
교통	대중교통	세부1 -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 <통계청> :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세부2 -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 <지자체 행정조사> :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여객선	세부1 - 도서지역과 본도 간 노선별 연간 운항 횟수 / 365 - <해양수산부> : 여객선 운항 노선별 연간 운항 횟수
		세부2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달성한 것으로 간주
	인도	- (일부 구간이라도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있는 도로 수 / 읍·면 소재지로의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수) × 100 - <지자체 행정조사> : 읍·면 소재지로의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별 인도 구분된 도로 현황
교육	고등학교	- 지자체에서 육성하는 우수 고등학교 수 - <지자체 행정조사> : 특성화 교육, 기숙형 고교, 자율형 고교 지원 현황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총 학생 수) × 100 -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 시·군별 학생 및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의견수렴	-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여부 - <지자체 행정조사> :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현황
	평생교육	- (비형식 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주민자치센터 제외 -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 읍·면별 평생교육시설 현황
보건 의료	의약품 구입	- (의약품 구입 가능 시설이 1개 이상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전국사업체조사> : 각 읍·면별 의약품 구입 가능 시설 현황
복지	청소년	- 시·군별 청소년 수련관·수련원·문화의집 운영 여부 점검 - <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부분	항목 / 세부기준		점검 방법 및 통계
	아동		-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 전국 읍·면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현황
	영유아		-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 <안전행정부> :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데이터) <보건복지부> :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다문화가족	세부1	-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여부 점검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세부2	- 다문화가족 대상 방문서비스 제공 여부 점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무에 상관없이 조사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응급	응급서비스		- (도착소요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 <소방방재청> : 각 시·군별 구급차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도서벽지 응급 서비스	세부1	- 해경 및 산림청별로 구축되어 있다면 달성한 것으로 간주 * 항공기 및 선박은 환자 이송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 - <해양경찰청> : 전국 서별 함정 및 항공기 현황 <산림청> : 전국 시도 산림청별 항공기 현황
		세부2	- 소방항공대별 EMS 구급헬기 구축시 달성으로 간주 - <소방방재청> : 소방항공대별 EMS 구급헬기 현황
안전	경찰출동		-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1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 <경찰청> : 시·군별 CODE 1 건별 출동소요시간
	소방서비스		-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 <소방방재청> :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문화	독서	세부1	-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각 읍·면별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

	부문	항목 / 세부기준	점검 방법 및 통계	
		세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도서 대출·반납 대안 서비스 운영 여부 점검 - <지자체 행정조사> : 각 지자체별 대안 서비스 현황 	
		세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세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프로그램 공연 횟수 + 전시프로그램 전시 일수) / 12 *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세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개최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읍·면별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실시 현황 파악 	
	정보통신	초고속망	세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총 가구 수) × 100 - <방송통신위원회>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현황
			세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수 / 총 가구 수) × 100 - <방송통신위원회> :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부록 2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표

※ 모든 조사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주거	마을 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 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 한다. * 동지역 제외	현재 총 마을(행정리) 수	() 개 행정리	()실과 성명 : Tel :	년 월	(252) 개 행정리
			경로당과 마을회관 둘 모두 없 는 행정리	()개 행정리, 모두 없음		년 월	(2)개 행정리, 모두 없음
			유지관리비 지원을 받는 경로 당 또는 마을회관이 속한 행정 리 수	()개 행정리		년 월	(250)개 행정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받는 경 로당 또는 마을회관이 속한 행정리 수	()개 행정리		년 월	(20)개 행정리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 스 정류장에서 노선버 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 통을 하루 3회 이상 이 용할 수 있다. 수요 부 족으로 대중교통 운행 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시·군별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해당 프로그램 명 (예: 지자체 자체 공영 순환버스, 콜택시 비용 지원,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운영 등) *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교부 세사업 제외	()개 프로그램 - - -	()실과 성명 : Tel :	년 월	(5)개 프로그램 - 지자체 자체 공영 버스 - 콜택시 비용 지원 - 미중택시 운영 - 카풀 조직 지원 - 미니버스 운영 등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등
	인도 (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주변마을에서 읍·면소재지로 접근하는 국도, 지방도, 면도, 이도 등 주요 차량통행도로 수	()개 도로	()실과 성명 : Tel :	년 월	(35)개 도로
			위 차량통행도로 중 소재지 밖의 도로에서 부분적이라도 인도가 설치된 도로 수 * 위험지역 등 부분적이라도 인도가 설치된 도로 반영 * 읍·면소재지 시가지 내부 도로 는 제외	()개 도로		년 월	(7)개 도로
교육	고등학교	사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사·군 내 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경우 ()에 해당학교 명시 * 교육부 선정 '농산어촌 우수교교 및 기숙형 고교 150개교' 제외		()실과 성명 : Tel :	년 월	
			1. 기숙사 건립 지원	()고등학교			(조치원)고등학교
			2. 명문고 및 특화고 육성 지원	()고등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3. 자율형 공립고교 육성 지원	()고등학교			(한솔)고등학교
			4. 인재(영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5. 기타()	()고등학교			(000)고등학교
	의견수렴 (교육발전 위원회)	사·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시·군별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 (또는 협의회) 조직 현황	유 / 무 ()	()실과 성명 : Tel :	년	유 (○○군 교육발전회)
			해당 교육발전위원회 개최 횟수 (2013년 기준)	()회		년	(2)회
	평생 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 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 동지역 제외	읍·면 자치센터 중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의 수 ※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평생교육법).	()개 읍·면	()실과 성명 : Tel :	년 월	(10)개 읍·면
보건 의료	진료 서비스	사·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	사·군내 물리치료실 현황	()개소	()실과 성명 :	년 월	(5)개소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과목 의사 진료가능하다.	* 보건(지)소 및 일반 병의원 내 물리치료실 포함(단, 물리치료사 상근하는 곳에 한함)		Tel :		
			사·군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여 / 부		년 월	여
			사·군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수	()개소 분만 가능		년 월	(1)개소 분만 가능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 순회방문이란 보건소 등 의료전문인력이 마을공동시설 등 한 거점에 방문하여 진료하는 것을 뜻함. *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특정 가구에 직접 방문하는 사업 제외 * 동지역 제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행정리) 수 *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1일 3회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고, 의료시설이 없는 마을을 의미함	()개 행정리	()실과 성명 : Tel :	년 월	(9)개 행정리
			위의 의료 접근성 낮은 마을 중 보건소 등 의료전문인력이 순회 방문을 실시하는 마을(행정리) 수	()개 행정리		년 월	(4)개 행정리
			위의 순회방문을 실시하는 마을 중 연간 12회 이상 순회방문을 시행하는 마을(행정리) 수	()개 행정리		년 월	(2)개 행정리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협 등급의 A, B)서비스 현재 수혜자 현황	()명	()살과 성명 : Tel :	년 월	(403)명
안전	방법 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행정리) 수(동지역 제외)	()개 행정리	()살과 성명 : Tel :	년 월	(225)개 행정리
문화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시·군별 이동도서관 운영 등 대안적 도서 대출, 반납 방안 운영 여부 및 프로그램 명 (예: 이동도서관 택배를 이용한 대출·반납 서비스, 도서관 외 읍·면사무소나 복지관 등 공공 시설을 이용한 대출·반납 서비스)	운영 / 미운영 - - - -	()살과 성명 : Tel :	년 월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 -이장 등 대표자를 통한 도서 전달프로그램 -우체국 배달을 통한 대출·반납 시스템 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실시한 읍·면 수 (2013년 기준)	()개 읍·면	()살과 성명 : Tel :	년 월	(2)개 읍·면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정보 통신	초고속망	<p>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 동지역 제외</p>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이용할 수 없는) 마을(행정리) 수	()개 행정리 미구축	()실과 성명 : Tel :	년 월	(1)개 행정리 미구축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되지 않은(이용할 수 없는) 마을(행정리) 수 * 광대역통합망은 50M 이상 속도의 초고속망을 의미함.	()개 행정리 미구축		년 월	(13)개 행정리 미구축

부록 3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계부처 협조자료 목록

부문	관련항목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협조기관
교육	유치원 /초·중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읍·면별 소규모 학교 현황 + 통폐합 현황/계획	교육부
교육	유치원 /초·중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읍·면지역의 학교(초·중·고교)들 중 학생들의 통학지원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 수 현황	교육부
교육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과부 선정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시·군별 1개교 이상	시·군별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현황 (*2012년에 기 선정된 150개 기숙형 고교 제외)	교육부
교육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폐교 시 폐교재산 활용 관련 공청회 개최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시·군별 초중고교 중 폐교된 학교별 주민 의견 수렴 현황	교육부
교육	방과후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학생들의 70% 이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시·군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 (2013년도 기준)	교육부
교육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읍·면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설 1개 이상 운영	각 시·군, 읍·면별 평생교육기관 현황(비형식기관)	교육부
보건 의료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읍·면별 지역아동 정보센터 또는 방과후 학교사업시설(초등돌봄교실) 운영	각 시·군 읍·면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육부
교통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모든 도서지역과 본도에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행	도서지역(시·군)별본도(읍·면)현황및 여객선운항현황	해양수산부

부문	관련항목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협조기관
안전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범죄취약 마을에 1일 1회 이상 순찰 실시	행정리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	경찰청
안전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범죄취약 마을에 1일 1회 이상 순찰 실시	행정리별 일일 순찰계획	경찰청
안전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현장 도착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혹은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경찰청
문화 (문화 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이용	시·군 지방문화원, 미술관, 소극장, 기타 문화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수 (월 별 건)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 (문화 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프로그램 관람	시·군별 문예회관(문화예술회관) 공연프로그램 수(분기별)	문화체육 관광부
보건 의료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시·군내에서 일반 병의원, 한방병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	일반병의원, 한방병원, 치과, 방사선병리검사와 1차 진료 현황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응급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해경 및 산림청 헬기와 선박에 응급의료장비 설치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헬기 현황	산림청
주거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시·군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결과	산림청
주거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시·군별 그린홈100만호 사업(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보급현황)	산업통상 자원부
안전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한다.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에 5분 내 도착 비율을 55% 이상으로 함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혹은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국민안전처
응급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30분 내 응급현장 도착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혹은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소방방재청
응급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EMS 전용헬기 운영	시·도별EMS전용헬기운영현황	소방방재청

부문	관련항목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협조기관
정보통신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이상으로 한다.	초고속망 구축률 100%	시·군별 초고속망 구축 현황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이상으로 한다.	IPTV 시청을 위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80% 이상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주거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시·군별 읍·면지역도시가스보급률	한국도시가스협회
안전	방법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	양식장 등의 어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시·군별포구/항만현황및방법용CCTV 설치현황	해양경찰청
응급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해경 및 산림청 헬기와 선박에 응급의료장비 설치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선박 및 헬기 현황	해양경찰청
주거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원수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	지자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 관리 현황	환경부

부록 4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 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시도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지역 도시 가스 보급률 50% 이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 시설 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소규모 급수 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중공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 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읍·면별 초등학교 유지	초등학교 통학 수단 제공	우수 고등학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 발전회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 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순회방문	읍·면별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 가능							
부산	기장군	89.1	68.2	2.4	100.0	1.2	99.7	100.0	87.5	95.7	1	-	-	100.0	47.4	3	-	91.1	X	40.0	O	-	100.0								
	달성군	90.2	90.2	2.3	100.0	6.3	99.5	84.9	81.6	93.6	0	-	63.6	100.0	36.0	5	-	88.1	X	22.2	O	-	100.0								
인천	강화군	86.6	52.1	2.4	100.0	17.2	44.6	96.0	45.2	91.4	0	100.0	2.8	100.0	82.6	1	-	88.2	X	15.4	O	66.7	100.0								
	옹진군	87.4	-	3.8	98.6	69.6	25.6	100.0	26.3	77.3	1	100.0	-	100.0	53.8	5	-	99.0	O	0.0	O	100.0	100.0								
울산	울주군	91.2	89.2	4.5	30.0	30.0	68.4	98.2	84.8	97.6	0	-	12.1	100.0	20.6	4	100.0	79.9	X	33.3	O	0.0	100.0								
	평택시	92.9	83.9	18.3	93.1	10.8	90.6	41.9	79.4	96.3	1	-	53.3	100.0	33.3	15	-	62.2	X	22.2	O	66.7	100.0								
경기도	남양주시	95.0	81.9	1.7	50.4	44.7	88.7	92.3	95.1	99.4	1	-	66.7	100.0	15.0	17	-	59.1	X	100.0	O	-	100.0								
	용인시	95.1	78.8	14.1	88.7	22.7	91.0	53.6	92.3	95.7	1	-	31.3	100.0	18.2	0	-	67.2	O	100.0	O	-	100.0								
	파주시	94.2	64.7	1.9	100.0	5.7	81.4	46.2	92.8	98.0	1	-	100.0	84.6	41.2	17	-	73.8	O	53.8	O	100.0	76.9								
	이천시	92.6	64.2	2.6	99.7	42.6	74.4	80.7	84.9	94.9	2	-	8.8	100.0	33.3	14	-	61.3	O	50.0	O	-	100.0								
	안성시	90.7	91.5	1.9	100.0	49.3	76.1	88.5	54.4	93.7	2	-	46.2	100.0	75.8	6	-	72.9	O	50.0	O	0.0	100.0								
	김포시	94.3	74.1	2.3	81.7	7.0	90.4	40.0	76.1	99.1	2	-	19.0	100.0	42.1	0	-	74.0	X	33.3	O	-	100.0								
	화성시	94.4	81.3	2.7	82.8	4.6	91.9	100.0	82.0	94.8	1	-	10.4	100.0	13.6	0	100.0	57.7	X	46.2	O	0.0	100.0								
	광주시	92.0	77.8	3.9	100.0	28.4	56.5	100.0	92.0	97.6	1	-	12.5	100.0	27.8	1	-	64.4	O	57.1	O	80.0	100.0								
	양주시	94.6	69.5	2.7	100.0	86.0	84.6	93.1	90.9	97.0	3	-	100.0	100.0	73.3	6	-	57.6	O	40.0	O	-	100.0								
	포천시	90.4	66.6	1.2	100.0	19.3	56.9	100.0	58.8	88.8	2	-	4.8	100.0	50.0	6	-	56.3	O	16.7	O	-	100.0								

단위: %, 개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 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시설 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소규모 급수 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도도 정비시 인도 구분	읍·면별 초등학교 유지	초등학교 통학 수단 제공	우수 고등학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 발전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순회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가능	
충청북도	여주군	91.7	52.1	1.6	100.0	0.0	57.2	90.6	63.3	96.4	1	-	87.5	77.8	66.7	8	-	86.0	O	30.0	O	-	100.0
	연천군	90.0	48.4	1.3	100.0	100.0	88.1	62.5	79.9	96.9	0	-	31.8	70.0	40.0	2	-	69.8	O	10.0	O	-	90.0
	가평군	89.3	28.0	8.4	100.0	100.0	61.5	99.1	72.6	96.8	1	-	21.0	100.0	81.3	4	-	84.6	O	66.7	O	-	100.0
	양평군	88.6	43.3	3.3	100.0	100.0	42.5	99.4	89.6	95.4	1	-	18.0	100.0	73.9	0	-	74.3	O	33.3	O	100.0	100.0
강원도	춘천시	89.5	0.0	24.5	100.0	38.4	59.0	88.9	91.9	86.9	3	-	27.8	90.0	47.4	0	-	58.2	X	30.0	O	0.0	100.0
	원주시	90.8	71.4	15.7	84.5	14.4	21.0	88.0	86.5	93.9	0	-	43.8	100.0	39.1	3	-	63.0	O	22.2	O	-	88.9
	강릉시	86.6	0.0	4.5	100.0	31.9	59.6	100.0	87.8	95.9	0	-	0.0	100.0	27.8	0	-	64.5	X	37.5	O	-	100.0
	삼척시	80.8	0.0	4.4	100.0	100.0	45.7	97.2	83.9	88.1	4	-	14.1	100.0	50.0	10	-	80.3	O	0.0	O	-	100.0
	홍천군	84.6	58.9	1.9	99.5	36.2	41.2	100.0	73.8	86.7	0	-	57.1	100.0	42.4	4	100.0	78.4	O	10.0	O	0.0	100.0
	횡성군	84.2	40.2	3.7	100.0	100.0	43.8	70.0	53.8	88.6	2	-	2.5	100.0	38.1	0	-	79.2	O	33.3	O	0.0	100.0
	영월군	78.6	28.2	1.4	88.7	44.6	50.7	90.4	70.0	96.0	1	-	11.4	100.0	57.9	4	-	77.6	O	11.1	O	-	100.0
	평창군	85.5	0.0	1.6	100.0	95.9	76.5	96.0	67.3	69.1	0	-	21.1	100.0	65.0	3	-	86.5	X	37.5	X	0.0	100.0
	정선군	79.1	0.0	0.6	100.0	100.0	60.4	99.4	77.6	85.6	1	-	18.5	100.0	57.9	2	100.0	80.7	X	11.1	O	0.0	100.0
	철원군	89.9	0.0	2.4	100.0	43.8	65.7	88.6	78.7	92.7	1	-	37.5	54.5	50.0	0	-	73.3	O	18.2	O	-	54.5
	화천군	83.8	0.0	0.9	97.6	14.5	49.9	100.0	37.3	95.1	0	-	0.0	100.0	33.3	2	-	84.6	O	40.0	X	0.0	100.0
	양구군	86.8	0.0	1.0	96.3	96.3	62.6	97.4	83.5	86.8	1	-	27.3	100.0	90.0	3	-	83.5	O	20.0	X	0.0	100.0
	인제군	86.5	0.0	1.2	100.0	75.3	77.0	98.4	82.0	86.9	0	-	12.9	100.0	26.3	2	-	88.8	O	66.7	O	0.0	100.0
고성군	85.2	0.0	1.0	89.7	85.7	83.4	95.7	87.0	93.7	0	-	3.0	100.0	18.8	0	-	97.6	X	33.3	X	0.0	83.3	
충청북도	양양군	86.1	0.0	0.8	100.0	3.3	72.4	90.7	54.9	92.8	1	-	34.4	100.0	41.2	2	-	59.4	O	16.7	X	-	100.0
	충주시	89.9	0.0	16.0	100.0	69.3	39.2	93.7	92.2	93.7	5	-	70.0	100.0	95.5	10	100.0	78.1	O	23.1	O	0.0	100.0
	제천시	88.6	27.2	27.4	100.0	33.5	59.1	100.0	94.5	87.6	0	-	0.0	100.0	90.9	0	-	82.7	O	37.5	O	-	100.0
	청원군	91.0	86.3	3.9	100.0	35.5	47.2	97.4	57.7	97.6	2	-	33.3	100.0	84.4	3	-	93.2	O	30.8	O	-	92.9
보은군	81.2	0.0	2.3	100.0	54.3	19.3	100.0	69.7	83.4	0	-	0.5	100.0	93.8	0	-	94.6	X	9.1	O	0.0	100.0	

단위: %, 개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 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 학교	의견 수렴	평생 교육	진료 서비스	순회 방문	의약품 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지역 도시 가스 보급률 50% 이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 시설 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소규모 급수 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마을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 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읍·면별 초등 학교 유지	초등 학교 통합 수단 제공	우수 고등 학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이상	교육 발전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 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월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가능
충청남도	옥천군	84.3	28.4	2.7	100.0	72.7	62.6	100.0	84.8	89.0	8	-	1.9	100.0	85.7	0	-	83.4	X	11.1	O	-	100.0
	영동군	80.3	19.2	1.8	100.0	85.2	60.9	97.4	68.6	72.2	0	-	35.1	100.0	93.3	0	-	83.4	O	9.1	O	2.9	100.0
	진천군	87.2	42.8	6.0	90.9	0.0	74.5	95.3	70.6	91.4	0	-	61.3	100.0	93.3	2	100.0	87.5	O	14.3	O	-	100.0
	괴산군	81.3	17.9	2.9	100.0	100.0	40.4	91.5	43.1	93.2	2	-	20.0	100.0	93.3	2	100.0	97.2	O	27.3	O	22.2	100.0
	음성군	92.1	43.5	11.3	100.0	100.0	72.9	71.9	51.5	81.1	0	-	41.5	100.0	90.9	3	-	93.7	O	44.4	O	100.0	100.0
	단양군	83.9	13.7	4.2	100.0	37.7	41.4	94.8	70.8	95.3	4	-	27.0	100.0	73.3	2	-	80.2	O	12.5	X	100.0	100.0
	증평군	92.0	62.4	3.6	100.0	72.7	80.1	83.3	90.1	97.0	8	-	1.9	100.0	50.0	0	-	86.8	X	50.0	O	-	100.0
	천안시	90.8	60.6	2.2	100.0	16.1	33.8	0.0	93.0	96.2	0	-	66.7	100.0	54.8	5	-	77.9	O	33.3	O	-	100.0
	공주시	87.5	0.0	5.0	100.0	48.0	40.8	95.7	67.3	90.5	0	-	0.0	100.0	95.0	0	-	92.7	O	30.0	O	13.8	90.9
	보령시	90.5	0.0	3.9	100.0	31.6	39.5	83.6	63.0	93.6	2	-	56.3	100.0	60.0	6	-	89.6	O	9.1	O	-	100.0
	아산시	92.2	76.8	17.5	100.0	21.5	79.4	81.0	67.5	95.7	2	-	68.9	100.0	38.7	3	-	74.3	O	54.5	O	61.5	100.0
	서산시	91.4	53.8	6.6	100.0	29.6	71.8	91.6	64.9	93.5	2	-	6.0	100.0	71.4	4	-	74.9	O	20.0	O	-	100.0
	논산시	86.7	10.5	4.4	100.0	37.0	23.0	98.3	52.4	91.4	3	-	2.4	100.0	55.2	7	-	89.4	O	30.8	O	100.0	100.0
	계룡시	96.5	-	10.1	100.0	100.0	94.9	100.0	94.3	100.0	1	-	100.0	100.0	25.0	1	-	81.4	O	0.0	O	100.0	66.7
	당진시	91.9	68.4	3.5	100.0	100.0	57.3	86.6	60.2	95.0	1	-	3.6	100.0	73.1	8	-	76.0	O	0.0	O	-	100.0
	금산군	78.2	48.0	1.6	100.0	43.3	44.4	99.0	68.9	91.6	2	-	8.8	100.0	76.5	4	-	79.8	O	30.0	O	50.0	100.0
	부여군	87.6	0.0	1.2	100.0	9.5	59.4	92.3	44.9	95.4	3	-	0.9	100.0	80.0	2	-	88.7	O	12.5	O	100.0	100.0
	서천군	87.4	42.1	3.5	99.7	93.0	41.8	98.1	48.8	89.8	1	-	25.8	100.0	94.7	1	-	84.8	O	7.7	O	90.0	100.0
	청양군	85.2	0.0	3.9	100.0	13.7	10.7	98.8	49.5	85.8	1	-	58.8	100.0	83.3	2	-	91.6	O	30.0	X	0.0	100.0
	홍성군	88.9	40.7	5.4	100.0	45.2	50.2	76.4	60.1	88.3	3	-	18.4	100.0	45.8	8	100.0	83.2	O	18.2	O	15.6	100.0
예산군	91.5	40.4	3.8	100.0	100.0	15.8	99.0	54.7	90.8	1	-	11.4	100.0	87.5	7	-	95.1	O	16.7	O	-	100.0	
태안군	89.7	18.1	2.9	100.0	93.0	52.2	83.3	46.4	93.5	1	-	87.5	100.0	65.2	4	100.0	88.4	O	25.0	X	100.0	100.0	

단위: %, 개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 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 학교	의견 수렴	평생 교육	진료 서비스	순회 방문	의약품 구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지역 도시 가스 보급률 50% 이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 시설 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소규모 급수 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 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읍·면별 초등 학교 유지	초등 학교 통합 수단 제공	우수 고등 학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이상	교육 발전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 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위원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가능	
전 라 북 도	군산시	92.7	0.0	4.1	76.0	18.9	62.1	100.0	92.1	94.6	0	-	0.0	100.0	46.2	5	-	62.6	O	18.2	O	-	100.0
	익산시	90.6	0.0	21.1	100.0	0.0	94.3	100.0	86.1	93.0	1	-	6.3	100.0	90.0	0	-	76.7	O	0.0	O	-	100.0
	정읍시	90.6	0.0	3.5	99.7	3.1	86.7	0.0	70.1	95.3	1	-	13.0	100.0	100.0	0	-	83.4	X	6.7	O	-	100.0
	남원시	85.0	0.0	1.8	100.0	19.1	56.0	86.7	79.5	94.0	1	-	0.0	100.0	100.0	4	-	88.3	O	18.8	O	0.0	93.8
	김제시	89.4	0.0	4.8	100.0	62.2	79.5	76.5	57.2	96.3	1	-	3.7	100.0	96.4	2	-	75.0	X	6.7	O	-	100.0
	완주군	84.2	62.6	7.4	100.0	13.6	48.4	89.9	69.5	95.5	1	-	-	100.0	96.7	1	-	87.0	X	30.8	O	59.8	100.0
	진안군	79.6	0.0	3.2	100.0	96.4	40.7	99.0	61.2	91.8	2	-	0.7	90.9	100.0	1	-	96.2	X	18.2	X	-	100.0
	무주군	79.4	30.3	4.8	100.0	100.0	53.7	93.9	67.9	98.7	3	-	21.7	100.0	90.0	4	-	82.6	O	16.7	X	-	100.0
	장수군	79.2	0.0	2.6	100.0	3.5	56.6	93.8	59.3	93.0	1	-	57.1	100.0	88.9	4	-	84.8	X	14.3	X	-	100.0
	임실군	75.3	26.9	1.1	100.0	100.0	67.4	0.0	57.2	93.0	0	-	24.1	100.0	100.0	1	-	92.8	X	33.3	X	-	100.0
	순창군	78.5	28.1	2.1	100.0	0.0	45.4	96.4	45.6	89.1	1	-	17.1	100.0	93.3	0	-	87.1	O	9.1	X	0.0	100.0
고창군	90.4	38.6	3.9	98.0	98.0	97.2	75.0	54.5	94.1	2	-	53.7	100.0	100.0	6	-	87.9	O	7.1	O	0.0	100.0	
부안군	91.4	40.3	3.9	99.8	8.2	97.9	87.5	54.9	84.6	1	100.0	50.0	100.0	78.3	7	-	89.6	X	0.0	O	-	100.0	
전 라 남 도	여수시	90.2	0.0	15.8	96.6	33.7	14.0	98.1	83.8	73.7	1	100.0	0.0	100.0	28.6	15	100.0	73.1	O	14.3	O	63.5	100.0
	순천시	90.5	0.0	2.2	100.0	4.0	70.6	93.9	89.4	96.3	0	-	5.9	100.0	61.1	15	-	76.0	O	9.1	O	0.0	100.0
	나주시	85.3	0.0	2.1	100.0	59.9	50.8	93.4	58.1	95.7	2	-	9.2	100.0	75.0	10	100.0	91.4	O	15.4	O	-	100.0
	광양시	91.5	88.0	4.6	100.0	100.0	54.3	100.0	91.6	96.9	1	-	0.0	100.0	43.8	8	-	85.0	O	28.6	X	0.0	100.0
	담양군	81.7	32.2	2.9	100.0	7.2	61.7	92.4	60.3	98.3	0	-	2.7	100.0	64.3	1	100.0	93.5	O	25.0	O	0.0	100.0
	곡성군	80.2	0.0	1.1	100.0	9.6	65.1	86.1	66.7	88.6	1	-	25.0	72.7	100.0	4	-	87.8	O	18.2	X	0.0	100.0
	구례군	87.7	0.0	0.6	100.0	100.0	36.5	100.0	87.4	96.1	0	-	20.5	100.0	54.5	1	-	86.2	O	12.5	X	-	100.0
고흥군	88.4	0.0	1.1	98.8	0.0	46.8	99.3	43.7	94.4	0	100.0	0.0	100.0	77.3	2	-	82.8	O	6.3	O	0.0	100.0	

단위: %, 개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 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 학교	의견 수렴	평생 교육	진료 서비스	순회 방문	의약품 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지역 도시 가스 보급률 50% 이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 시설 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소규모 급수 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마을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 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읍·면별 초등 학교 유지	초등 학교 통합 수단 제공	우수 고등 학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이상	교육 발전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 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월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가능
시 도 명	보성군	84.9	0.0	1.1	100.0	47.5	27.4	99.3	55.4	94.0	1	-	48.9	100.0	70.0	6	100.0	87.5	O	16.7	X	0.0	100.0
	화순군	83.3	82.3	4.0	100.0	6.2	65.0	90.5	73.3	90.2	1	-	18.8	100.0	77.8	1	100.0	83.0	O	7.7	O	0.0	100.0
	장흥군	81.7	0.0	2.9	100.0	31.0	33.0	97.1	59.6	92.3	0	-	4.8	100.0	80.0	4	-	90.4	X	10.0	O	19.0	100.0
	강진군	87.7	0.0	2.5	100.0	48.5	24.8	100.0	56.0	88.7	0	-	6.5	100.0	71.4	4	-	90.8	X	9.1	O	88.9	100.0
	해남군	86.5	48.6	2.3	100.0	6.2	32.1	92.7	43.3	89.5	0	-	17.3	100.0	75.0	2	100.0	78.6	O	14.3	O	0.0	100.0
	영암군	88.6	50.6	6.1	100.0	11.2	60.1	88.9	66.8	90.9	1	-	0.0	100.0	76.5	6	100.0	85.4	O	27.3	O	-	100.0
	무안군	90.1	58.3	5.9	98.3	23.8	43.7	75.0	48.8	85.5	1	-	0.0	100.0	60.0	4	-	77.9	O	22.2	O	-	100.0
	함평군	84.4	0.0	0.8	100.0	7.5	35.5	86.5	50.6	93.4	1	-	22.0	100.0	90.9	0	-	93.7	O	11.1	X	0.0	100.0
	영광군	88.1	30.3	0.7	92.8	35.3	81.8	100.0	53.2	93.5	0	100.0	4.3	100.0	66.7	3	100.0	87.6	O	18.2	O	-	100.0
	장성군	83.8	40.9	2.1	74.5	76.9	37.0	94.3	58.8	89.7	1	-	28.0	100.0	84.6	3	-	96.9	O	18.2	O	13.9	100.0
	완도군	90.5	0.0	1.7	100.0	43.7	62.5	100.0	49.2	75.2	0	100.0	0.0	100.0	64.0	1	100.0	91.2	O	16.7	O	0.0	100.0
	진도군	86.2	0.0	1.2	100.0	0.0	97.6	45.5	61.4	82.6	1	100.0	27.6	100.0	52.9	2	100.0	86.1	X	14.3	O	0.0	100.0
신안군	82.1	0.0	1.4	100.0	100.0	85.8	81.3	31.6	69.7	1	100.0	3.3	100.0	34.3	0	-	98.0	O	14.3	X	0.0	100.0	
경 상 북 도	포항시	89.2	77.0	9.4	100.0	34.4	65.3	90.7	79.4	88.0	1	-	0.0	100.0	59.4	2	100.0	81.9	O	21.4	O	-	100.0
	경주시	83.7	33.6	3.8	100.0	0.3	63.0	88.5	86.2	89.2	1	-	22.4	100.0	50.0	18	100.0	81.0	O	41.7	O	-	100.0
	김천시	83.3	0.0	6.5	100.0	100.0	40.6	95.8	70.9	90.5	1	-	0.0	100.0	60.0	1	100.0	92.9	O	0.0	O	-	100.0
	안동시	77.7	0.0	1.9	100.0	100.0	56.1	74.8	76.2	88.4	1	-	33.3	100.0	68.2	2	-	85.4	O	21.4	O	-	100.0
	구미시	91.4	47.1	1.4	100.0	35.0	74.5	88.2	97.4	86.3	1	-	18.9	100.0	69.2	5	100.0	84.8	O	12.5	O	0.0	100.0
	영주시	76.7	0.0	1.8	100.0	60.6	34.8	98.1	79.5	80.4	0	-	13.2	100.0	100.0	3	-	89.6	O	10.0	O	11.1	100.0
	영천시	75.3	48.3	3.7	100.0	38.0	74.6	87.3	64.0	92.8	1	-	5.5	100.0	75.0	10	-	85.9	O	27.3	O	50.0	100.0
상주시	76.4	0.0	2.2	100.0	100.0	35.7	99.6	66.9	82.6	0	-	0.2	94.4	68.0	2	100.0	88.3	O	11.1	O	0.0	100.0	

단위: %, 개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 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시설 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소규모 급수 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 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읍·면별 초등학교 유지	초등학교 통학 수단 제공	우수 고등학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 발전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 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순회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가능
경상남도	문경시	80.4	0.0	1.5	100.0	13.9	70.0	94.8	77.6	85.2	1	-	2.0	100.0	71.4	2	-	82.9	O	11.1	O	62.5	100.0
	경산시	86.1	101.9	20.1	94.3	39.6	92.1	69.2	89.5	98.7	1	-	38.9	100.0	36.8	5	-	83.7	O	50.0	O	-	100.0
	군위군	60.9	0.0	0.5	100.0	14.4	49.2	98.1	9.5	77.7	0	-	3.9	87.5	87.5	0	-	99.8	O	12.5	X	-	100.0
	의성군	61.8	0.0	2.1	100.0	15.5	52.8	93.1	39.1	80.0	1	-	7.0	88.9	88.9	5	100.0	88.3	O	5.6	O	-	100.0
	청송군	60.6	0.0	2.0	95.6	19.1	58.9	100.0	18.0	86.0	0	-	0.0	100.0	100.0	0	100.0	91.8	O	12.5	X	-	100.0
	영양군	62.6	0.0	3.1	100.0	11.6	64.6	82.1	49.6	81.6	0	-	24.0	100.0	87.5	3	-	91.4	O	16.7	X	-	100.0
	영덕군	77.2	0.0	0.8	100.0	20.4	83.9	93.5	72.5	77.5	0	-	32.1	88.9	84.6	3	-	88.1	O	22.2	X	0.0	100.0
	청도군	73.8	0.0	1.4	100.0	34.9	37.7	93.7	52.0	87.1	0	-	10.0	100.0	78.6	0	-	91.5	O	11.1	X	100.0	100.0
	고령군	71.2	0.0	8.5	100.0	9.2	82.6	88.6	56.1	89.4	0	-	39.1	100.0	88.9	1	100.0	91.7	O	25.0	X	0.0	100.0
	성주군	71.3	0.0	1.4	100.0	17.0	33.8	99.2	30.2	70.0	1	-	6.3	100.0	43.8	2	-	91.7	O	10.0	X	-	100.0
	칠곡군	88.6	86.6	7.3	100.0	35.8	66.4	95.9	67.7	91.5	2	-	78.9	100.0	27.3	7	-	84.1	O	62.5	O	-	100.0
	예천군	72.8	17.0	1.0	100.0	100.0	52.8	85.2	37.6	87.2	1	-	14.8	75.0	90.9	2	-	86.2	O	8.3	O	0.0	100.0
	봉화군	64.2	0.0	1.4	100.0	100.0	32.6	99.4	60.9	76.3	0	-	14.9	100.0	75.0	4	100.0	94.2	O	10.0	X	-	100.0
	울진군	80.1	0.0	2.1	100.0	25.6	48.1	97.1	60.4	80.6	1	-	1.3	100.0	52.6	3	-	84.8	O	10.0	O	-	100.0
울릉군	81.9	0.0	2.0	88.0	88.0	70.8	100.0	1.3	96.0	1	-	8.0	100.0	40.0	1	-	89.6	O	33.3	X	100.0	100.0	
경상남도	창원시	89.6	82.5	24.4	49.5	49.5	60.7	98.4	94.6	97.4	2	-	27.8	100.0	37.0	6	-	94.9	X	25.0	O	-	100.0
	진주시	85.5	30.8	5.5	100.0	100.0	95.9	73.0	91.5	94.6	2	-	100.0	100.0	0.0	2	-	76.2	O	6.3	O	0.0	100.0
	통영시	87.4	0.0	1.4	80.3	8.1	90.8	96.7	80.2	78.9	3	100.0	19.5	100.0	46.7	1	100.0	84.8	O	14.3	O	95.8	100.0
	사천시	86.5	70.6	12.7	87.9	87.9	89.3	97.8	91.4	82.6	1	-	50.0	100.0	72.7	3	-	80.3	O	37.5	O	-	100.0
	김해시	92.2	71.9	2.9	99.2	99.2	90.6	51.7	94.3	97.3	2	-	43.6	100.0	72.2	5	100.0	73.6	X	37.5	O	0.0	100.0
밀양시	78.7	0.0	7.0	100.0	31.3	34.4	96.6	71.8	82.6	0	-	0.0	100.0	82.4	0	100.0	79.1	X	27.3	O	-	100.0	

단위: %, 개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 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 학교	의견 수렴	평생 교육	진료 서비스	순회 방문	의약품 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지역 도시 가스 보급률 50% 이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 시설 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소규모 급수 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 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읍·면별 초등 학교 유지	초등 학교 통합 수단 제공	우수 고등 학교 1개 이상	폐교시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이상	교육 발전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 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월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가능
	거제시	89.4	-	5.8	100.0	100.0	83.1	95.2	81.3	95.4	1	-	4.6	100.0	55.6	1	-	86.8	X	11.1	O	-	100.0
	양산시	92.9	84.8	25.1	100.0	43.3	60.6	93.5	84.8	95.7	5	-	45.0	100.0	17.6	2	-	77.4	X	40.0	O	-	100.0
	의령군	69.5	0.0	3.3	100.0	100.0	25.0	85.7	56.6	81.1	2	-	3.9	100.0	92.9	2	-	96.7	O	15.4	X	13.5	100.0
	함안군	82.9	0.0	3.7	100.0	4.4	80.6	95.9	39.2	93.1	1	-	0.0	100.0	73.7	0	-	93.7	X	20.0	O	-	100.0
	창녕군	70.3	0.0	2.2	100.0	100.0	87.0	78.9	66.5	85.3	1	-	0.0	100.0	77.8	0	-	77.7	X	21.4	O	-	100.0
	고성군	80.8	13.8	2.3	100.0	100.0	43.7	97.9	47.2	91.2	1	-	0.0	92.9	100.0	3	-	88.1	O	7.1	X	100.0	100.0
	남해군	82.8	0.0	2.8	100.0	100.0	44.5	94.7	65.8	97.7	2	-	20.0	100.0	84.6	0	-	92.9	X	10.0	O	-	100.0
	하동군	83.4	0.0	5.1	99.7	15.7	39.3	98.6	67.3	79.6	2	-	14.3	100.0	57.9	5	-	95.3	O	7.7	X	-	100.0
	산청군	71.9	0.0	2.4	99.7	99.7	36.0	100.0	62.2	80.4	1	-	7.7	100.0	100.0	2	-	92.8	X	27.3	X	100.0	100.0
	함양군	79.5	14.4	1.8	100.0	19.5	18.4	98.2	71.1	87.1	1	-	57.1	100.0	84.6	1	-	88.5	O	9.1	O	-	100.0
	거창군	75.4	24.3	3.6	100.0	100.0	19.3	93.5	79.3	88.0	2	-	4.3	100.0	76.5	6	-	84.7	O	8.3	O	16.0	100.0
합천군	66.3	0.0	1.1	100.0	2.9	24.1	98.5	45.3	79.7	0	-	7.9	100.0	75.0	1	-	96.5	O	5.9	O	-	100.0	
제주도	제주시	86.6	0.0	2.1	96.9	79.2	100.0	100.0	88.7	92.7	6	100.0	13.2	100.0	25.0	0	-	89.1	O	28.6	O	-	100.0
	서귀포시	86.8	0.0	3.0	100.0	100.0	100.0	100.0	90.5	93.4	3	-	37.9	100.0	36.7	0	-	94.5	O	60.0	O	-	100.0

부록 4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계속)

단위: %, 개, 분(分)

구분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1회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청소년 활동시설상 1개이상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중·고등학교 시설 운영	5세 이하 영유아 3명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유무)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향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분)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대안역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연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개최 읍·면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부산	기장군	62.3	4	100.0	100.0	1	O	59.7	35.4	29.4	5.5	45.6	60.0	4	1	0.8	0.0	40.0	100.0
	달성군	73.4	2	100.0	88.9	1	O	77.2	23.1	-	5.4	57.9	77.8	0	1	3.3	16.8	0.0	99.6
인천	강화군	77.6	14	100.0	69.2	1	O	68.7	15.1	9.1	5.1	44.7	23.1	1	2	1.3	30.3	15.4	82.7
	옹진군	49.0	1	71.4	85.7	0	O	71.5	9.3	2.2	3.4	50.0	28.6	1	0	0.0	0.0	0.0	81.3
울산	울주군	85.8	3	100.0	66.7	1	O	70.2	21.6	33.3	6.0	55.9	83.3	1	1	3.8	48.8	83.3	100.0
경기도	평택시	85.7	7	100.0	88.9	1	O	68.0	12.3	0.0	4.7	43.1	55.6	1	4	1.5	140.5	55.6	99.0
	남양주시	73.2	5	100.0	100.0	1	O	72.9	26.7	-	4.9	20.9	100.0	1	1	0.6	0.0	88.9	100.0
	용인시	77.6	12	100.0	100.0	1	O	67.0	16.5	-	4.8	25.3	71.4	1	2	0.7	25.8	0.0	99.3
	파주시	71.5	7	84.6	81.8	1	O	76.3	18.1	-	3.0	33.2	76.9	1	1	6.8	0.0	76.9	95.9
	이천시	75.5	8	100.0	100.0	1	O	66.4	40.0	-	5.5	29.3	50.0	1	2	2.3	76.5	100.0	98.3
	안성시	68.4	2	100.0	91.7	1	O	66.7	21.7	-	5.2	22.5	50.0	1	2	1.9	5.8	83.3	94.4
	김포시	77.1	6	100.0	100.0	1	O	82.9	36.9	66.7	4.4	33.3	66.7	1	1	0.3	11.0	66.7	100.0
	화성시	82.5	5	100.0	100.0	1	O	62.1	84.7	100.0	5.1	17.6	61.5	1	3	1.3	47.5	92.3	99.4
	광주시	79.0	3	100.0	85.7	1	O	70.4	34.7	-	5.8	32.4	57.1	1	2	0.7	43.8	0.0	99.4
	양주시	79.9	5	100.0	100.0	1	O	73.4	100.0	-	4.5	21.3	100.0	1	2	0.4	7.3	100.0	100.0
여주군	포천시	78.7	8	100.0	100.0	1	O	73.8	23.1	-	5.3	24.4	66.7	1	2	3.2	45.0	91.7	99.2
	여주군	84.0	7	80.0	100.0	1	O	71.6	100.0	-	5.5	25.6	88.9	1	1	0.6	26.0	44.4	97.5

단위: %, 개, 분(分)

구분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1회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청소년 진흥사업 1개이상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중·고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5세 이하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 이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유무)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행정리 방법비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분)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대안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개최 읍·면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연천군	72.1	3	70.0	70.0	1	○	84.5	29.2	-	4.8	52.6	60.0	1	2	0.6	14.5	50.0	100.0
	가평군	74.6	13	100.0	100.0	1	○	76.4	16.7	-	6.8	24.6	66.7	1	2	1.6	11.5	100.0	96.0
	양평군	76.0	6	100.0	100.0	1	○	65.4	52.1	-	6.1	21.9	66.7	1	2	3.3	0.0	58.3	93.1
강원도	춘천시	80.0	9	80.0	80.0	1	○	79.1	34.2	-	6.1	61.6	40.0	1	2	3.0	108.3	10.0	84.8
	원주시	73.8	9	100.0	100.0	1	○	73.8	15.0	-	5.0	45.1	66.7	3	3	1.3	100.0	88.9	95.6
	강릉시	90.2	4	100.0	87.5	1	○	76.9	25.3	45.5	6.8	44.6	25.0	2	3	3.7	151.8	0.0	99.3
	삼척시	79.0	3	87.5	62.5	1	○	78.1	18.8	37.5	5.6	73.5	50.0	3	2	1.5	59.5	37.5	79.4
	홍천군	59.1	5	100.0	60.0	1	○	76.9	53.6	-	9.0	42.7	20.0	2	2	5.7	50.0	50.0	84.2
	횡성군	100.0	7	100.0	88.9	1	○	77.6	10.9	-	8.1	32.3	33.3	2	1	1.8	0.0	22.2	72.7
	영월군	100.0	1	100.0	44.4	1	○	75.5	62.6	-	9.6	47.9	22.2	0	2	1.2	29.5	100.0	80.8
	평창군	78.2	7	100.0	100.0	1	○	75.8	15.3	-	10.0	44.2	50.0	2	2	2.3	5.5	25.0	76.1
	정선군	81.1	3	100.0	100.0	1	○	76.6	30.2	-	7.7	60.9	55.6	1	2	2.1	28.3	33.3	84.0
	철원군	62.7	3	54.5	71.4	1	○	73.4	35.4	-	7.6	50.4	27.3	1	2	1.2	7.5	27.3	99.1
	화천군	78.8	4	100.0	100.0	1	○	73.7	47.0	-	9.5	40.8	60.0	2	2	0.8	2.8	80.0	100.0
	양구군	81.2	6	100.0	100.0	1	○	76.2	54.2	-	6.5	40.9	40.0	1	2	1.5	56.5	60.0	100.0
	인제군	86.3	5	100.0	100.0	1	○	72.3	100.0	-	9.8	38.2	50.0	3	2	1.9	13.3	50.0	98.8
	고성군	82.4	6	83.3	100.0	1	○	80.8	23.6	50.0	6.6	39.2	66.7	0	3	0.8	1.3	50.0	100.0
양양군	100.0	1	100.0	66.7	1	○	75.8	32.3	50.0	6.4	36.2	33.3	0	1	1.8	0.0	66.7	88.1	
충청북도	충주시	68.0	4	100.0	84.6	1	○	69.4	29.7	-	4.6	69.1	46.2	1	3	1.5	106.3	23.1	64.0
	제천시	85.3	7	100.0	75.0	1	○	65.8	42.0	-	4.8	77.9	50.0	1	2	0.6	51.3	37.5	69.3
	청원군	74.9	1	100.0	100.0	1	○	69.4	8.5	-	5.1	47.8	69.2	0	1	2.1	0.0	15.4	81.9
	보은군	64.9	9	90.9	36.4	1	○	63.7	13.0	-	5.8	42.3	9.1	1	2	8.3	25.5	63.6	58.6
	옥천군	61.5	3	100.0	33.3	1	○	75.2	29.1	-	5.1	60.3	11.1	2	3	1.3	39.3	22.2	68.0
영동군	73.9	2	100.0	63.6	1	○	75.0	99.1	-	3.8	63.2	54.5	0	2	1.8	12.5	36.4	69.6	

단위: %, 개, 분(分)

구분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1회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청소년 진흥사업 1개이상	읍·면별 아동 센터 또는 초·중·고등학교 운영	5세 이하 영유아 3명 이상 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개 이상	다문화 가족 방문 서비스(유무)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분)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대안 여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연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개최 읍·면	광역통합망 구축률 80%
충청남도	진천군	67.1	1	100.0	100.0	1	○	66.1	5.2	-	4.8	61.7	42.9	1	3	1.4	7.5	42.9	76.2
	피산군	70.2	6	100.0	54.5	1	○	70.9	85.8	-	5.8	33.3	54.5	3	1	1.1	0.0	27.3	54.8
	음성군	81.8	4	100.0	100.0	1	○	69.2	43.4	-	4.0	57.7	66.7	0	2	1.6	44.8	100.0	76.0
	단양군	92.2	6	87.5	62.5	1	○	67.3	41.1	-	4.9	53.3	25.0	1	2	0.9	6.5	50.0	69.6
	증평군	76.3	2	100.0	100.0	1	○	77.8	61.5	-	5.8	70.0	100.0	2	2	1.0	11.0	100.0	79.2
충청남도	천안시	82.0	8	100.0	83.3	1	○	69.1	36.7	-	4.2	79.5	83.3	2	5	1.9	94.0	100.0	91.2
	공주시	100.0	3	100.0	100.0	1	○	68.2	71.8	-	3.8	53.1	10.0	1	2	2.2	87.5	0.0	86.0
	보령시	68.8	3	100.0	72.7	1	○	73.1	34.5	8.0	3.9	56.2	45.5	0	2	1.9	31.5	100.0	86.0
	아산시	83.5	1	100.0	100.0	1	○	73.9	99.0	-	4.0	59.8	90.9	3	1	0.9	54.5	36.4	94.1
	서산시	75.9	4	100.0	100.0	1	○	68.9	30.7	28.6	3.9	53.3	70.0	2	2	5.8	78.3	70.0	85.8
	논산시	64.2	2	100.0	100.0	1	○	73.8	66.5	-	4.7	60.4	30.8	0	2	2.3	70.0	30.8	91.0
	계룡시	65.4	2	100.0	100.0	1	○	73.6	10.7	-	4.7	73.3	33.3	4	1	0.0	32.8	66.7	95.2
	당진시	75.4	6	100.0	81.8	1	○	72.6	25.3	42.9	3.6	54.8	100.0	2	2	1.8	55.0	54.5	82.3
	금산군	69.2	2	100.0	100.0	1	○	74.6	35.8	-	4.5	63.5	50.0	1	2	2.3	32.5	0.0	81.9
	부여군	75.6	4	100.0	62.5	1	○	78.8	0.0	-	4.3	61.8	18.8	0	2	4.7	21.0	12.5	70.8
	서천군	79.7	1	100.0	53.8	1	○	77.9	1.9	42.9	3.0	73.2	38.5	1	2	1.2	30.0	38.5	54.3
	청양군	83.5	2	100.0	60.0	1	○	71.4	57.9	-	4.1	58.8	10.0	1	2	1.6	26.5	10.0	88.0
	홍성군	83.5	2	100.0	72.7	1	○	72.1	29.2	16.7	3.2	67.2	36.4	2	2	1.8	70.0	27.3	73.8
	예산군	69.8	1	100.0	66.7	1	○	73.2	38.9	-	4.3	63.0	16.7	1	2	3.1	62.5	16.7	85.9
태안군	65.9	8	100.0	62.5	1	○	59.5	16.1	19.0	3.9	41.5	37.5	2	2	2.7	32.8	12.5	97.8	
전라북도	군산시	70.1	2	90.9	90.9	1	○	76.8	27.3	27.8	4.3	84.8	45.5	1	2	0.8	191.5	18.2	81.8
	익산시	75.7	5	100.0	66.7	1	○	75.1	24.6	-	4.5	71.2	40.0	2	2	1.6	106.0	13.3	51.3
	정읍시	68.4	4	100.0	60.0	1	○	67.3	100.0	-	4.8	58.0	26.7	3	2	0.6	35.0	20.0	50.5
	남원시	70.6	3	100.0	62.5	1	○	65.5	92.2	-	5.4	71.3	31.3	0	2	0.1	77.3	12.5	43.4
	김제시	64.5	8	100.0	46.7	1	○	75.6	16.2	-	4.2	64.6	40.0	2	2	0.6	27.5	26.7	36.2

단위: %, 개, 분(分)

구분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1회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청소년 진흥사업 1개이상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중·고등학교 운영	5세 이하 영유아 3명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유무)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분)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대안 시스템	문화시설원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연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개최	읍·면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전라남도	완주군	77.9	5	100.0	84.6	1	○	73.3	39.5	-	6.3	51.6	69.2	3	2	0.3	17.3	23.1
진안군	91.1		3	90.9	36.4	1	○	72.7	55.8	-	7.8	35.3	36.4	3	2	0.5	11.0	54.5	56.6	
무주군	62.6		5	100.0	83.3	1	○	61.2	64.7	-	7.6	41.4	50.0	0	2	0.7	13.5	16.7	86.7	
장수군	74.6		3	100.0	42.9	1	○	70.1	40.7	-	6.7	62.9	71.4	1	2	0.1	29.3	28.6	84.9	
임실군	71.2		1	100.0	25.0	1	○	67.6	8.2	-	7.2	46.8	25.0	0	1	0.6	0.0	33.3	57.8	
순창군	65.2		2	100.0	72.7	1	○	66.1	43.0	-	5.5	63.0	9.1	0	2	0.5	0.0	18.2	41.8	
고창군	67.7		4	100.0	64.3	1	○	70.2	11.0	0.0	6.4	52.1	21.4	2	2	2.7	52.5	14.3	29.7	
부안군	54.0		4	100.0	61.5	1	○	68.9	32.0	23.8	5.5	52.3	30.8	2	2	0.7	13.8	100.0	46.9	
전라남도	여수시	68.6	2	100.0	100.0	1	○	73.3	17.9	6.3	5.7	71.1	57.1	1	3	1.5	60.0	42.9	82.8	
	순천시	77.3	5	100.0	81.8	1	○	70.6	45.1	0.0	5.0	59.8	81.8	1	2	0.6	145.0	36.4	75.5	
	나주시	93.9	1	100.0	92.3	1	○	71.8	6.7	-	6.2	59.0	23.1	0	2	0.4	73.8	53.8	40.7	
	광양시	59.7	2	100.0	71.4	1	○	73.2	100.0	0.0	5.3	71.2	14.3	1	2	1.6	9.5	57.1	98.4	
	담양군	79.0	4	100.0	33.3	1	○	70.4	7.9	-	6.5	38.3	58.3	0	2	1.6	5.8	100.0	87.8	
	곡성군	54.0	2	72.7	45.5	1	○	75.5	26.2	-	6.3	48.4	54.5	1	2	0.1	43.0	9.1	63.2	
	구례군	100.0	2	100.0	37.5	0	○	71.2	17.1	-	5.2	40.5	25.0	1	1	0.3	0.0	25.0	78.3	
	고흥군	73.4	2	100.0	75.0	1	○	72.8	2.3	6.2	6.0	62.7	37.5	1	2	0.5	11.8	31.3	42.3	
	보성군	68.3	2	100.0	50.0	1	○	73.3	9.8	0.0	6.5	55.8	66.7	1	1	1.1	0.0	100.0	58.9	
	화순군	68.4	1	100.0	23.1	1	○	74.9	8.2	-	6.2	48.1	38.5	1	2	1.8	58.8	23.1	73.8	
	장흥군	87.7	5	100.0	70.0	1	○	75.5	15.6	6.1	5.6	50.0	70.0	0	2	0.6	19.0	0.0	51.9	
	강진군	68.9	0	100.0	54.5	1	○	73.7	33.6	12.5	4.4	60.0	45.5	1	2	0.7	134.8	18.2	85.6	
	해남군	63.0	3	100.0	64.3	1	○	72.0	4.3	2.0	6.8	47.8	21.4	0	2	1.8	34.5	57.1	71.3	
영암군	59.3	1	100.0	90.9	1	○	73.9	7.0	-	6.5	50.6	27.3	1	2	2.7	3.3	54.5	84.3		
무안군	62.0	1	100.0	88.9	1	○	72.2	6.5	0.0	5.2	48.4	66.7	0	2	0.3	6.5	0.0	77.4		

단위: %, 개, 분(分)

구분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1회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청소년 진흥시설 1개이상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중·고등학교 운영	5세 이하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 이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서비스(유무)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분)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읍·면 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대안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연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개최 읍·면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경상북도	함평군	64.5	1	100.0	100.0	1	O	79.4	7.7	0.0	6.5	56.3	33.3	0	1	1.8	0.0	11.1	61.6
	영광군	76.8	1	90.9	54.5	1	O	78.4	41.1	4.5	5.5	47.0	45.5	1	1	2.4	0.0	9.1	71.6
	장성군	76.0	4	100.0	45.5	1	O	71.8	30.1	-	6.1	38.5	36.4	1	2	0.9	10.3	63.6	70.4
	완도군	85.7	4	100.0	83.3	1	O	74.8	-	3.5	6.1	62.7	33.3	0	2	0.3	21.3	16.7	65.9
	진도군	65.0	2	100.0	85.7	1	O	68.8	7.9	2.8	5.7	50.0	14.3	0	2	0.9	80.5	28.6	77.7
	신안군	59.9	1	100.0	85.7	1	O	72.7	3.8	1.9	5.5	37.7	35.7	1	1	0.3	0.0	14.3	49.9
경상북도	포항시	66.4	5	100.0	71.4	1	O	77.3	10.2	14.8	3.7	51.3	57.1	3	3	2.3	201.0	35.7	81.1
	경주시	63.7	18	100.0	100.0	1	O	72.6	28.2	16.7	4.0	41.6	41.7	1	4	3.3	131.5	0.0	92.8
	김천시	66.0	2	100.0	60.0	1	O	76.8	8.0	-	3.4	29.3	13.3	1	3	1.5	122.8	100.0	82.9
	안동시	68.7	4	100.0	78.6	1	O	74.9	32.7	-	3.7	29.7	14.3	2	3	1.7	111.0	0.0	69.7
	구미시	71.4	3	100.0	62.5	1	O	73.4	36.0	-	3.7	40.9	25.0	2	2	35.3	106.5	12.5	98.2
	영주시	79.7	4	100.0	60.0	1	O	76.8	78.4	-	3.4	48.2	20.0	1	3	0.8	103.0	0.0	72.4
	영천시	74.5	3	90.9	72.7	1	O	68.3	31.9	-	3.2	18.0	45.5	1	2	1.4	44.3	100.0	71.0
	상주시	84.1	2	94.4	50.0	1	O	75.9	93.1	-	3.5	17.9	11.1	2	2	0.8	97.0	5.6	66.3
	문경시	71.2	5	100.0	77.8	1	O	74.1	41.7	-	3.2	22.8	33.3	2	2	4.4	38.3	100.0	76.7
	경산시	68.0	2	100.0	75.0	1	O	74.9	26.1	-	3.9	40.9	50.0	2	2	1.9	64.0	0.0	82.8
	군위군	71.0	1	87.5	37.5	1	O	72.5	69.4	-	4.0	10.0	50.0	1	2	1.4	6.3	0.0	86.8
	의성군	81.6	1	77.8	38.9	1	O	79.7	46.3	-	3.2	24.6	22.2	1	1	1.8	1.0	5.6	65.3
	청송군	76.3	1	100.0	75.0	1	O	73.9	74.3	-	4.2	7.4	37.5	1	1	0.8	9.3	50.0	83.8
	영양군	60.2	1	100.0	66.7	1	O	81.3	43.9	-	4.2	40.9	33.3	1	2	19.3	10.8	0.0	60.5
	영덕군	71.5	4	88.9	44.4	1	O	75.1	30.4	17.2	3.9	40.0	33.3	1	2	0.9	21.3	44.4	74.0
	청도군	74.2	1	88.9	55.6	1	O	73.3	26.9	-	3.4	19.7	33.3	1	1	0.7	0.0	22.2	83.0
고령군	56.7	1	100.0	62.5	1	O	73.8	30.3	-	4.7	30.0	37.5	2	2	2.0	5.8	37.5	88.1	
성주군	61.6	1	90.0	80.0	1	O	74.2	100.0	-	3.2	34.2	70.0	1	2	0.9	16.8	100.0	79.0	
칠곡군	73.4	2	100.0	87.5	1	O	81.0	30.0	-	2.9	35.6	75.0	1	2	1.7	23.5	25.0	99.5	

단위: %, 개, 분(分)

구분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1회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청소년 진흥사업 1개이상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중·고등학교 돌봄실 운영	5세 이하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 이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유무)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분)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대안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연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개최 읍·면	광역통합망 구축률 80%
	예천군	62.4	1	83.3	58.3	1	○	77.5	45.3	-	3.3	22.2	16.7	1	2	0.9	8.3	41.7	76.2
	봉화군	64.8	1	90.0	60.0	1	○	80.5	30.8	-	4.0	35.1	60.0	1	1	1.2	0.0	0.0	96.2
	울진군	89.9	2	100.0	80.0	1	○	78.2	13.3	13.0	3.8	37.3	80.0	1	2	1.1	18.8	20.0	76.5
	울릉군	55.4	2	100.0	33.3	1	○	60.6	60.0	14.3	4.4	33.3	33.3	0	2	0.7	2.5	33.3	100.0
경상남도	창원시	68.5	8	50.0	100.0	2	○	75.9	11.2	-	4.4	71.3	75.0	1	6	1.3	345.0	0.0	98.4
	진주시	68.8	1	100.0	87.5	1	○	66.6	13.6	-	4.1	49.2	37.5	1	2	1.2	140.5	0.0	83.4
	통영시	67.2	3	100.0	42.9	1	○	66.7	12.4	1.8	4.8	47.7	71.4	0	2	0.5	115.0	57.1	63.9
	사천시	76.1	2	100.0	75.0	1	○	72.2	6.1	2.2	4.0	47.1	75.0	1	2	1.7	66.0	0.0	87.2
	김해시	65.1	5	100.0	100.0	1	○	65.8	15.4	-	4.7	35.3	100.0	1	2	1.6	119.5	28.6	100.0
	밀양시	68.0	3	100.0	81.8	1	○	65.6	16.6	-	4.7	41.9	36.4	1	1	0.7	0.0	18.2	81.9
	거제시	87.4	6	100.0	55.6	1	○	61.0	18.1	8.5	6.5	32.2	11.1	2	2	1.0	111.5	33.3	88.3
	양산시	68.5	4	100.0	80.0	1	○	71.1	38.7	-	5.6	32.8	80.0	1	2	1.8	57.8	60.0	100.0
	의령군	70.2	3	100.0	15.4	1	○	75.2	7.6	-	5.0	20.7	38.5	3	2	0.8	0.0	46.2	98.7
	합안군	68.5	1	100.0	70.0	1	○	75.5	14.5	-	4.0	33.7	30.0	0	2	1.3	30.3	10.0	96.0
	창녕군	70.7	3	100.0	50.0	1	○	74.4	15.8	-	5.3	42.7	50.0	0	2	1.1	48.0	7.1	98.9
	고성군	66.3	2	92.9	35.7	1	○	73.6	36.6	4.5	6.0	24.1	21.4	0	1	0.8	14.5	7.1	87.0
	남해군	64.5	6	100.0	60.0	1	○	78.9	9.5	5.4	6.0	26.8	50.0	2	2	5.4	0.0	30.0	86.0
	하동군	72.3	10	100.0	61.5	1	○	66.1	28.2	7.1	6.2	20.4	84.6	2	2	1.3	51.0	38.5	91.8
	산청군	73.5	5	100.0	54.5	1	○	75.7	28.3	-	6.1	24.7	36.4	3	2	3.1	20.8	36.4	81.8
	함양군	94.0	1	100.0	45.5	1	○	73.1	23.3	-	6.2	35.9	45.5	0	2	0.8	62.8	0.0	92.9
거창군	91.8	4	100.0	33.3	1	○	75.2	100.0	-	4.3	39.0	16.7	2	2	6.7	51.5	8.3	88.8	
합천군	63.0	3	100.0	41.2	1	○	76.5	28.7	-	4.6	26.0	41.2	2	2	0.9	6.3	17.6	78.4	
제주도	제주시	82.6	21	100.0	100.0	1	○	83.1	42.7	6.8	3.2	69.8	71.4	2	3	1.2	192.0	100.0	97.9
	서귀포시	74.4	24	100.0	100.0	1	○	82.2	48.7	12.5	3.2	68.0	100.0	1	1	0.6	0.0	100.0	90.8

부록 5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별 이행실태 점검 결과

1. 주거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96.5	60.6	88.3	38/138	27.5	-
난방	읍 도시가스 보급률	100.0	0.0	50.8	36/135	26.6	3(읍無)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시	27.4	0.5	4.5	138/138	100	-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100.0	30.0	96.6	103/138	74.6	-
	프로그램 지원	100.0	0.0	44.2	29/138	21.0	-
상수도	면 상수도 보급률	100.0	10.7	62.9	37/138	26.8	-
	소규모급수시설 수질 관리 의무	100.0	40.0	93.1	24/135	17.8	3 (시설無)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97.3	1.3	79.4	59/138	42.7	-

2. 교통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대중교통	일 3회 대중교통 이용	100.0	69.1	90.4	1/138	0.7	-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	-	-	98/138	71.0	-
여객선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	100.0	100.0	100.0	11/11	100.0	127 (도서 無)
인도	인도 구분 설치	100.0	0.0	12.5	4/135	2.9	3(무응답)

3. 교육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유치원/ 초·중학교	농어촌학교 육성 (읍·면별 초교 유지)	100.0	54.5	98.1	125/138	90.5	-
	초교 통학수단 제공	100.0	0.0	61.8	10/138	7.2	-
고등학교	우수고등학교 육성	-	-	-	111/138	80.4	-
폐교	폐교시설 재활용 의견 수렴	100.0	100.0	100.0	31/31	100.0	107 (폐교 無)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99.7	56.3	77.6	124/138	89.8	-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	-	-	103/138	74.6	-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	100.0	0.0	21.1	2/138	1.4	-

4. 보건의료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진료서비스	모든 중요과목 의사 진료	-	-	-	106/138	76.8	-
순회방문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	100.0	0.0	33.3	13/71	18.3	67 (오자미 없)
의약품구입	자동차 20분 내 일반의약품 구입	100.0	54.5	98.9	129/138	93.5	-

5. 복지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노인	도움이 필요한노인 주1회 이상 재가노인서비스	100.0	49.0	74.1	5/138	3.6	-
청소년	자동차 30분 내 청소년센터	-	-	-	137/138	99.3	-
아동	자동차 20분 내 초등생 방과후돌봄시설	100.0	50.0	96.9	113/138	81.9	-
영유아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어린이집	100.0	15.4	71.0	35/138	25.4	-
다문화가족	자동차 30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136/138	98.6	-
	방문서비스 제공	-	-	-	138/138	100.0	-

6. 응급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응급서비스	구급차 30분 내 도착(100%)	84.5	59.5	71.8	0/138	0.0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소방청 EMS 전용 헬기 운영	-	-	-	-	-	-
	해경 및 산림청 헬기 및 선박에 응급의료장비	-	-	-	-	-	-

주: 도서벽지 응급서비스의 경우 시도 소방서·해양경찰청·산림청별로 이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이행실태 점검이 불가능함.

7. 안전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경찰 순찰	범죄 취약지역 마을별 1일 1회 이상 순찰	-	-	-	-	-	-
방법설비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	100.0	0.0	32.7	7/137	5.1	1(무응답)
	항포구 도난방지 CCTV 설치	100.0	0.0	7.6	1/48	2.1	90 (항포구無)
경찰 출동	112신고 시 출동시간 10분 이내	-	-	-	137/138	99.3	-
소방 출동	5분 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	84.8	7.4	45.4	42/138	30.4	-

8. 문화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대출	100.0	9.1	44.9	6/138	4.3	-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안서비스	-	-	-	110/138	79.7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 30분 내 문화시설	-	-	-	137/138	99.3	-
	월 1회 문화 프로그램 관람 가능	-	-	-	85/137	62.0	1 (문화시설無)
	분기별 1회 전문공연 관람 가능	-	-	-	116/137	84.7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100.0	0.0	37.3	17/138	12.3	-

9. 정보통신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초고속망	초고속망 구축률(100%)	100.0	100.0	100.0	138/138	100.0	-
	광대역통합망 구축률(80%)	100.0	29.8	77.3	83/138	60.1	-

부록 6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별 이행실태의 변화(2013-2014년)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3년 달성률 (%)	2014년 달성률 (%)	향상 여부
1. 주거	주택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90%)	88.3	88.3	*1
	난방	읍 도시가스 보급률(50%)	47.9	50.8	↑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시(여부)	2.9	4.5	↑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100%)	95.0	96.6	↑
		프로그램 지원(100%)	40.4	44.2	↑
	상수도	면 상수도 보급률(75%)	59.0	62.9	↑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관리 의무(여부)	97.2	93.1	↓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71%)	77.6	79.4	↑	
2. 교통	대중교통	일 3회 대중교통 이용(100%)	90.4	90.4	*1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여부)	49.6	71.0	↑
	여객선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100%)	94.4	100.0	↑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여부)	-	-	*3
인도	인도 구분 설치(100%)	11.4	12.5	↑	
3. 교육	유치원/ 초·중학교	농어촌학교 육성(읍·면별 초교 유지)(100%)	98.4	98.1	↓
		초교 통학수단 제공(100%)	62.2	61.8	↓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 육성(유무)	86.2	80.4	*2
	폐교	폐교시설 재활용 의견 수렴(100%)	98.2	100.0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70%)	80.0	77.6	↓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여부)	68.1	74.6	↑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100%)	21.1	21.1	↑	
4. 보건 의료	진료서비스	모든 중요과목 의사 진료(여부)	70.3	76.8	↑
	순회방문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100%)	27.8	33.3	↑
	의약품 구입	자동차 20분 내 일반 의약품 구입(100%)	99.5	98.9	↓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3년 달성률 (%)	2014년 달성률 (%)	향상 여부
5. 복지	노인	취약계층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서비스(100%)	65.9	74.1	↑
	청소년	자동차 30분 내 청소년센터(유무)	92.0	99.3	↑
	아동	자동차 20분 내 초등생 방과후돌봄시설(100%)	97.9	96.9	↓
	영유아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어린이집(100%)	70.3	71.0	↑
	다문화가족	자동차 30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유무)	94.2	98.6	↑
방문서비스 제공(여부)		99.3	100.0	↑	
6. 응급	응급서비스	구급차 30분 내 도착(100%)	73.4	71.8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해경 및 산림청 헬기 및 선박에 응급의료장비	100.0	100.0	-
		소방청 EMS 전용 헬기 운영	100.0	71.4	↓
7. 안전	경찰 순찰	범죄 취약지역 마을별 1일 1회 이상 순찰	100.0	100.0	-
	방범설비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100%)	30.0	32.7	↑
		항포구 도난방지 CCTV 설치(100%)	7.6	7.6	-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 10분 이내(100%)	100.0	99.3	↓
소방서비스	5분 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55%)	42.8	45.4	↑	
8. 문화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대출(100%)	43.6	44.9	↑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안서비스(유무)	47.1	79.7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 30분 내 문화시설(유무)	99.3	99.3	-
		월 1회 문화 프로그램 관람 가능(여부)	31.2	62.0	↑
		분기별 1회 전문 공연 관람 가능(여부)	78.3	84.7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100%)	34.7	37.3	↑	
9. 정보 통신	초고속망	초고속망 구축률(100%)	100.0	100.0	↑
		광대역통합망 구축률(80%)	73.4	77.3	↑

- 주: 1)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정체된 경우 —, 하락한 경우 ↓로 나타냄.
 2) 여객선 운임지원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제외함.
 3) 2013년과 2014년 활용 데이터가 동일하거나(*1), 점검 통계나 방법이 변경된 경우(*2), 법적 의무 사항인 경우(*3)는 이행실태 향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4)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률은 정부에서 이미 모든 지역에 구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더 이상 조사하지 않음.

참고 문헌

- 김광선·노승철·윤병석. 2013.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채종현·윤병석. 2012.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송미령·김용렬·권인혜·윤병석. 2010.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2009. 「2010-2014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 송미령·박대식·김광선·성주인·조미형·심재현·윤병석·정규형·류경선. 2013.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eputy Prime Minister and Secretary of State for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an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2000. Our Countryside: the future: A fair deal for rural England.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https://www.icareinfo.info>>

환경부 <<http://www.me.go.kr>>